

한말 - 일제하 양반 소지주가의 수지변화에 관한 연구

구례 류씨가의 사례

박 석 두 책임연구원
이 두 순 부연구위원



연구 담당자	담당 분야
박 석 두	○ 연구설계 및 총괄 ○ 자료 집계 및 분석 ○ 보고서 작성
이 두 순	○ 연구 설계 ○ 자료 집계 및 분석

머 리 말

이 보고서는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동에 있는 柳氏家에서 1890년대부터 1940년경까지 3대에 걸쳐 작성·보존해 온 고문서 중 농가경제 관련 문서를 집계·분석하여 收支構造의 變化를 살펴본 것이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난 1991년에 류씨가의 고문서를 입수한 이래 1993년부터 연차적으로 이 문서들을 이용한 농업사 연구를 진행해 온 바, 이 보고서는 제2년차 연구의 결실인 셈이다.

그 동안 일제시대의 농업에 관한 연구는 지주제 혹은 지주·소작 관계에 대한 연구, '조선토지조사사업'이나 '산미증식계획' 등 일제의 농업정책에 관한 연구에 치우쳐 왔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시기 농업에 관한 기존연구의 대부분이 조선총독부 혹은 그 산하기관에서 발간한 관찬 사료를 이용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민간에서 작성된 1차사료를 이용한 연구는 특정 지주가의 자료를 이용한 지주제 사례연구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 자료는 주로 토지소유 규모의 변동이나 지주·소작 관계에 관련된 자료에 국한되었으며, 지주가계의 수입과 지출구조의 변화 등에 관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 이 보고서는 일제 전기간에 걸쳐 현금은 물론 현물의 수입과 소비·지출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된 자료를 이용하여 地主家의 收支構造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를 가능하게 해준 류씨가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미진하나마 이 연구가 우리 나라 근대농업사 연구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1995.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 영 일

빈

면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 목적과 의의	1
2. 이용 자료	3
3. 연구 범위와 방법	8

제 2 장 류씨가의 收入構造와 그 변화

1. 家計收入의 收入源과 관리방식	10
2. 연도별·항목별 수입의 변화	12
3. 수입구조 변화의 특징과 그 의미	38

제 3 장 농산물 상품화 및 현금 수입의 변화

1. 농산물 상품화 및 현금 수입의 推移	48
2. 농산물 상품화 및 현금 수입의 변화와 그 의미	56

제 4 장 류씨가의 소비 및 지출구조와 그 변화

1. 소비 및 지출의 관리방식	58
2. 양곡 소비 실태	59
3. 가용 현금 지출구조와 그 변화	66
4. 류씨가의 쇠퇴와 그 원인	76

제 5 장 요약 및 결론	82
---------------------	----

표 목 차

제 1 장

표 1-1 도별 경지소유 면적별 농가호수, 1913	3
------------------------------------	---

제 2 장

표 2- 1 류씨가의 농지 소유 면적 추이, 1898~40	11
표 2- 2 자작답에서의 생산 및 도정 상황, 1902~41	14
표 2- 3 內作畝에서의 자작생산 및 소작료 수입 추이, 1902~41	17
표 2- 4 소작답 3두락에서의 경작비와 收支 사례, 1919	19
표 2- 5 보리·밀·콩의 자작생산 추이, 1907~42	21
표 2- 6 外作 垡田畝에서의 소작료 수입 추이, 1906~41	23
표 2- 7 현금 소작료의 내역, 1907~41	24
표 2- 8 新起田畝에서의 소작료 수입 추이, 1905~33	25
표 2- 9 보리 대여 및 이자 수입 추이, 1908~17	28
표 2-10 벼와 쌀의 대여 및 이자 수입 추이, 1908~22	30
표 2-11 '柒租' 항의 수입과 이자 내역, 1906~20	33
표 2-12 '柒租' 항의 수입과 지출액 추이, 1921~41	34
표 2-13 家用으로 지출한 현금 형태의 기타 수입, 1908~41	36
표 2-14 「當用錄」중 자가소비한 기타 현물 수입, 1908~33	38
표 2-15 류씨가의 쌀 수입 총괄, 1906~41	40

표 2-16 류씨가의 콩 수입 총괄, 1907~41	43
표 2-17 류씨가의 목화와 백목 수입 총괄, 1905~41	44

제 3 장

표 3-1 류씨가의 농산물 판매량 추이, 1905~41	50
표 3-2 판매 농산물의 상품화율 추이, 1906~41	51
표 3-3 류씨가의 현금 수입 총괄, 1908~41	53
표 3-4 류씨가의 현금 수입 항목별 비중 추이, 1908~41	54

제 4 장

표 4- 1 자가소비 미곡의 공급 및 糧米 추이, 1902~41	60
표 4- 2 류씨가의 식량용 미곡 소비 내역, 1902~40	61
표 4- 3 보리의 소비 내역, 1907~42	63
표 4- 4 밀의 소비 내역, 1907~42	64
표 4- 5 콩의 소비 내역, 1907~42	65
표 4- 6 류씨가의 연간 현금 수입과 지출 총액 추이, 1909~41	68
표 4- 7 류씨가의 연간 비목별 현금 지출액 추이, 1910~40	71
표 4- 8 류씨가의 연간 현금 지출 비목별 비중 추이, 1910~40	72
표 4- 9 류씨가의 현금 차용 실태와 사용처, 1921~41	77
표 4-10 류씨가의 토지 매각 사례와 그 이유, 1915~42	78

빈

면

제 1 장

서 론

1. 연구 목적과 의의

이 연구는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동에 있는 류씨가에서 189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약 50년에 걸쳐 작성 보존해 온 고문서를 이용한 실증연구로서 1993년부터 4개년간 계속되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 2년차 연구이다.

- 1년차(1993년): 류씨가의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
- 2년차(1994년): 류씨가의 收支構造 변화에 관한 연구
- 3년차(1995년): 토지소유관계와 지세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 4년차(1996년): 오미동의 사회구조와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후술하는 이용자료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류씨가에서는 매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거의 빠짐 없이 기록하여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 판매를 통해 취득한 현금 수입의 지출 내역에 이르기까지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겼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집계 분석함으로써 류씨가의 매년의 수입과 지출 내역 및 그 변화 실태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점을 구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① 일제 말엽에 올수록 대지주층에 토지가 집중되고 소지주층 이하의 농민층은 몰락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몰락하게 되었는가.

② 조선 후기 이래 농촌에 확산되기 시작한 상품화폐경제는 일제시기에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농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③ 일제 식민지 농정은 농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본질은 무엇인가.

④ 소지주가의 가계 운영 및 소비생활의 특징과 재생산구조

류씨가 농지소유 규모와 사회적 신분, 소장 자료 등에 의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사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① 류씨가 농지 소유 규모는 일제 시기 전기간에 걸쳐 전답 합계 100두락에 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표 1-1>에서 보듯이 전국적인 농지소유 규모별 농가 분포와 대비하면 상위 5%, 전남 지역에서는 상위 1.2% 안에 드는 규모였다. 전농가의 66%가 1정보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였던 당시 실정에 비하면 류씨는 평균 수준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지주로서는 극히 영세한 소지주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1차 사료의 부족으로 부진하기 이를 데 없는 일반 농민층의 농가경제 실태에 근접하는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소작료수납부 등 지주제에 관한 기존의 사례연구에서 이용되었던 사료 외에 노동력 고용 및 노임 실태, 생산 수납한 생산물의 판매 및 이용 실태, 현금 수입의 지출 실태 등에 관한 시계열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 소지주가의 재생산구조와 소비 및 생활 실태를 거의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일제하 농가경제의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로서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③ 농업생산에서 판매, 소비, 지출에 이르기까지 일제 전시기에 걸

표 1-1 도별 경지소유 면적별 농가호수, 1913

단위: 호, %

도 별	0.5정보 미만	0.5~ 1.0	1.0~ 2.0	2.0~ 3.0	3.0~ 5.0	5.0~ 10.0	10.0~ 20.0	20.0~ 50.0	50.0~ 100.0	100.0 이상	합 계
경 기	46,992	33,286	23,349	12,194	8,496	4,697	2,038	914	329	132	132,427
충 북	44,396	15,541	9,001	3,964	2,347	1,673	712	102	19	1	177,758
충 남	54,604	30,971	14,001	6,724	3,984	1,890	878	336	118	24	113,530
전 북	86,206	31,855	8,661	4,361	2,641	1,637	703	407	119	72	136,665
전 남	117,178	64,447	25,210	9,270	4,488	1,595	650	215	122	31	223,206
경 북	113,298	63,378	31,810	10,647	4,584	1,944	849	337	108	31	226,977
경 남	116,950	38,670	15,845	5,007	2,810	1,526	570	235	85	34	181,732
황 해	37,893	32,518	24,835	15,980	10,304	5,654	1,938	723	225	17	130,087
평 북	28,564	26,685	28,969	18,378	12,577	7,226	2,796	692	220	30	126,137
평 남	19,892	21,473	23,578	19,798	13,987	8,514	3,099	809	109	10	111,269
강 원	55,200	30,322	18,869	9,967	5,956	2,183	466	80	7	3	123,033
함 남	29,965	30,184	34,960	26,566	14,604	6,381	1,072	239	39	5	144,015
함 북	5,471	8,108	14,514	16,280	12,110	6,088	488	54	6	3	63,122
합 계	756,601	427,438	273,603	159,136	98,888	51,008	16,239	5,143	1,506	393	1,789,955
비 율	42.27	23.88	15.29	8.89	5.52	2.85	0.91	0.29	0.08	0.02	100.00

주: 경작에 종사하지 않는 지주 포함.

자료: 小早川九郎, 朝鮮農業發達史(發達篇), 朝鮮農會, 1944, p. 64.

쳐 관련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 일제의 농업정책과 경제 여건의 변화가 농업·농촌·농민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제농정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2. 이용 자료

류씨가의 소장 자료 중 이 연구에서 이용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자료는 크게 보아 현물 수입에 관한 자료(소작료수납부, 양미책), 현물 자가소비에 관한 자료(양미책, 당용록, 소작료수납부), 현물 판매

및 기타에 의한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 관련 가계부 자료(당용록), 지출 중 현물 및 현금의 대여에 관한 자료(細音記 및 金穀收支帳, 柒錄冊)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자료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家計簿 자료: 柳瑩業(1886~1944)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私用錄(1899~1921), 當用錄1(1907~12), 當用錄2(1913~17), 家用日錄冊(1918~23), 當用錄4(1924~33), 當用錄5(1934~36), 家用日記(1937~42)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상의 자료 중 私用錄은 가계부와 별도로 작성한 류형업의 개인용돈 지출기록으로서 1899년 11월 21일 柳瑩業이 14세 때 곡성에 吉行을 가면서 1냥 5전을 쓴 것부터 시작하여 1921년까지 기록한 것이다. 1908년까지는 매년 월별로 사용처와 금액을 기록하였으나, 1909년부터는 연도별 기록으로 바뀌었으며, 수입원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지출내용만 기록하였다. 當用錄 혹은 家用日錄, 家用日記 등은 류씨가 家計簿에 해당되는 문서로서 류형업이 가사를 주관하게 된 1907년부터 작고하기 2년 전인 1942년까지 기록되어 있다. 당용록의 기록 항목은 첫해부터 끝까지 별 변화가 없다. 먼저 가격을 계산한 것과 그렇지 않은 수입 및 지출로 구분한 다음 전자를 다시 수입과 지출 부분으로 나누어 항목과 금액 등을 기록하였으며, 현물로 수납하여 현물로 소비한 경우 이는 가격을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따로 기록하였다. 따라서 당용록의 기재부문은 ① 현금 수입, ② 현금 지출, ③ 현물 수입 및 소비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세세하게 기록하였으나 현물 소비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수입 총량과 원천을 총괄 기록하였을 뿐 항목별로 소비상황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 중 쌀·보리·밀 등 양곡의 소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糧米冊」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으나 다른 농산물의 소비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현금 수입과 지출의 경우 지출에 대해서는 매월 합계액을 산출하였으며, 수입은 대략 3~4개월, 어떤 때는 1~2개월마다 기록하였는데, 수입이 있게 되

면 그 전달까지의 지출금을 합계하고 수입액과 상계하여 과부족을 집계하였다. 연말에는 1년간의 총수입과 지출을 대비하여 과부족금을 다음해로 이월하였고,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비한 ‘不計價家用秩’을 정리해두었다. 매년 빠짐없이 家計經濟에 대한 연말 결산을 하였던 것이다.

② 양곡 소비 자료: 糧米冊(1902~42)은 자작답의 생산 상황을 기록한 內作畝打租記, 맥류의 생산 및 소비 상황을 기록한 內作牟麥記, 당전평 내 소작답의 소작료 수납 상황을 기록한 他人分作畝收稅記, 추곡의 도정 시기와 도정량 및 정곡량, 미곡의 소비 시기와 용도별 소비량 등을 기록한 糧米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內作畝打租記(1902~42)에는 매년 자작답 면적과 품종별 벼(租) 생산량, 보관 장소와 일자별 도정 실적이 기입되어 있다. 內作牟麥記에는 1907년부터 전답별로 보리(皮牟 및 米牟)와 밀(麥)로 구분되어 생산 소비 상황이 기록되어 있으며, 연도에 따라서는 봄보리(春牟)와 가을보리(秋牟)로 구분되어 있다. 보리쌀은 보충식량(補糧)으로 사용되었으며, 밀은 주로 누룩 제조에 소비되었다. 他人分作畝收稅記는 류씨가 거주지 앞에 소재하는 塘前坪 소작답의 소작료 수입 기록으로서, 소작인별로 소작지의 면적·위치·소작료가 매년 기재되어 있다. 소작료는 1907년까지는 벼로 받았으나 1908년 이후에는 쌀로 받고 있다. 糧米記에서 한해는 양곡년도를 기준으로 햅쌀이 나오는 음력 8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8월까지로 되어 있다. 쌀의 출처·도정시기·출고량이 기입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품종 등 곡종이 기록되어 있다.

③ 소작료 수납 장부: 秋收冊(1898~1908)과 土稅收捧記(1906~41)의 2종이다. 추수책은 연도별로 작성되었는데, 먼저 자작지에 대하여 그 소재지 坪名·지목·두락·字號·結負數를 기록한 다음 소작지에 대해 소재지 坪名·지목·두락·字號·結負數 외에 소작인 성명과 소작료액 및 소작료 징수 상황을 기록하였다. 논의 소작료는 1두락당 쌀 7두의 定租法이었으나 당해년도에 매년 작성되었던 추수기에

‘監坪記’가 첨부된 예가 있고, 추수책에도 ‘仍留’와 ‘減免’이 부기된 예로 보아 실제로는 年況에 따라 간평을 통해 감액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작료 형태는 논의 경우 쌀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밭의 경우 백목 혹은 면화, 참깨, 콩 등의 발작물로 받아들였다. 토세수봉기에는 1906년의 기록인 ‘丙午秋九月日外作收稅記’에서부터 1941년의 ‘辛巳年外作土稅收捧記’까지 연도별로 매년 소작료 수납상황(토지소재지 面里·坪名·字番號·지목·두락 수·結負數·소작인 성명·소작료액)과 수납소작료의 이용상황(농산물의 종류·양·사용시기·용도 등)이 기록되어 있다. 1921년까지는 매년 ‘土稅收捧記’ 제하에 상단에는 소작료 수납 상황, 하단에는 그 이용상황이 기록되다가, 1921~23년 경에 戶役이 폐지되고 新起項이 移記되면서 1922년부터 작성 양식이 보다 체계화되었다. 즉, 먼저 토지소재지 면별로 소작인별 소작료 수납상황을 기재(土稅收捧記)한 후에 수납소작료의 이용상황을 기록하였으며, 또한 이용상황을 현금형태와 현물형태로 구분하여 먼저 ‘土稅執價記’란 제하에 화폐로 받거나 방매를 통해 현금화한 소작료액을 기재한 다음 ‘外作土稅總計執價及不計價秩’이란 제하에 현물 종류별로 소작료 총량, 그 중 현금화한 현물량, 家用에 소비한 현물량을 기록하였다.

④ 양곡 대출 장부: 「柒錄冊」중의 柒租, 植牟, 代租 등의 항이 여기에 속한다. 柒錄冊은 戶役, 外戶, 新起, 土稅, 柒租, 植(殖)牟, 代(貸)租 등 7가지 항을 기록한 것이므로 칠록이라고 하였다(是故柒錄也). 이 중 柒租項은 ‘丙午冬柒租植本記’라는 제하에 荒租 7석을 捧留하였는데, 그 중 3석 10두는 奴卜乃에게 留置하고, 奴用得과 奴占玉에게 각각 2석 2두와 1석 8두를 “四利計次”로 植利하였다는 기록으로 시작된다. 이어 연도별로 本租와 利租量, 그 중 일부의 소비 및 방매 대금 사용처 등이 기록되어 있다. 대출은 주로 正租로 이루어졌으나, 때로는 백미나 현금으로도 이루어졌다. 예컨대 1911년의 기록에 의하면 1910년말 本利租 합 10석 10두가 이월되었는데, 이 중 4석을 植利條

로 내놓고, 나머지 6석 10두의 방매대금 엽전 130냥을 대출하고 그 이자 50냥을 받아 합계 180냥이 되었다. 여기에 다시 20냥을 대출하고 이자 6냥을 합쳐 26냥을 받았다. 이 대금 합계 206냥으로 백미 3석 8두 2승 7홉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대출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1913년, 1914년에 대출량이 벼 1석 가량으로 줄어들고, 1914년에 방광면 旨郎坪의 논 6두락을 구입하여 그 소작료로 벼 6석을 받아 경비에 지출하였으며, 1915년에는 이 소작료 6석의 방매 대금 78냥과 논 6두락 방매 대금 615냥 등 합계 693냥의 자금을 만들게 되면서 칠조항의 기록 내용이 바뀌게 된다. 1915~20년에는 이 693냥의 지출기록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약간의 소작료 수입이 추가되는 정도이며, 대출 관계 기록은 극히 일부에 국한되고 있다. 그러다가 1921년에는 ‘辛酉秋計’란 제목하에 “土旨良文所在新墾土稅與植本谷(穀)及契條并公私債借用償還條目詳細如左 自此秋計始錄債金條”라는 설명으로 기록이 시작되고 있다. 기재 양식은 먼저 수입을 기록한 다음 지출내역을 기록하되 상단에 금액, 하단에 내역을 기록하였다. 1921년을 예로 들면 수입항목에는 雲川 소작답 土稅租와 그 이자, 代租米價, 破契錢, 婚事 보조금 잔액, 혼사비조 금융조합 차용금, 私債 등이었으며, 지출 항목에는 婚具費, 금융조합 차용금 및 사채상환금, 토종 수말 구입가 등이었다. 차용금 등의 평상외 수입과 그 지출=가용외 지출 항목을 구분하여 따로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의 기록은 1922~27년 會計, 1925년의 ‘乙丑冬債金償還記’, 1928~40년의 각년도 收支記, 1941년의 ‘辛巳春賣土記’ 등이다.

植牟項은 1908~17년까지 매년 남는 보리(餘牟)를 五利의 이율로 利殖한 기록으로서, 연도별로 대출량·대출자 성명·이자량·본리 합계량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代租項은 1909~22년까지 秋穀의 貸出·利殖 상황과 馬山面 소재 면화밭 2두락의 소작료 白木 40尺의 수납 상황 등을 기록한 것이다. 이 기록은 위에서 설명한 ‘柒租’項의 ‘辛酉秋計’란에 흡수되면서 1922년까지로 끝나고 있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3.1. 연구 범위

류씨가의 수입과 지출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2차년도 연구의 연구 범위는 류씨가의 수입원, 현물 및 현금 수입 추이, 농산물 상품화와 판매 수입의 변화 실태, 비목별 현금 지출액 추이 등을 파악하고, 그 변화의 원인과 의미 등을 파악하는 데 한정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 시기는 자료의 작성 연도에 의해 1909년부터 1942년까지로 한정하였다.

이 연구는 류씨가의 가계 경제와 그 순환구조를 파악하는 사례 연구이므로 전국적인 상품화폐경제의 변화 동향,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을 함께 살펴야 사례 연구의 위치와 분석 결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자료 집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전국적인 상황과 연계시켜 파악하지는 못하였으며, 수지 변화의 원인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도에 한하여 이를 살펴보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2. 연구 방법

이용자료에 대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류씨가의 총수입은 현물과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은 자가소비와 현물 지급 및 판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매에 충당되는 현물은 현금화되어 현금 형태의 수입과 함께 현금수입을 구성하게 되는데, 현금 형태의 수입은 다시 여러 비목의 현금 지출에 충당되게 된다. 류씨가의 수입과 지출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제형태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파악하여야 하는데, 류씨가에서 작성해놓은 장부는 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고, 자가소비용 양곡의 수입과 지출, 소작료 수입과 그 판매 및 지출, 현금 수입과 지출 등으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각각의 장부를 집계한 다음, 이를 다시 수입 항목과 지출 항목으로 나누어 재정리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류씨가 총수입을 규정하는 수입원, 즉 소유 토지의 규모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어서 품목별 생산 및 수입의 변화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수입 구조 변화의 특징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품목별 상품화 실태와 현금 수입 推移, 현금 수입 변화와 그 의미 등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물 소비와 현금 지출의 관리 방식, 양곡소비 실태, 현금 지출의 특징과 변화 및 그 의미 등을 살펴본 다음, 류씨가 가계경제가 점점 쇠락해가는 과정 및 그 원인과 의미를 파악하였다. 제5장은 요약 및 결론으로서,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일제시기 양반 소지주가의 수지변화의 특징과 원인 및 의미 등을 정리하였다.

제 2 장

류씨가의 收入構造와 그 변화

1. 家計收入의 收入源과 관리방식

류씨가의 가계 수입은 현물 수입과 현금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물 수입은 자작 생산 농산물 및 소작료로 받은 농산물, 그리고 화목·재목 등의 임산물이 대부분이었으며, 현금 수입은 부의금·화폐 소작료 등이었다. 따라서 류씨가의 상시 收入源은 전·답·대·임야 등의 토지였다. 전답의 경우 자작 및 소작경영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 혹은 소작료로 수납하였으며, 대지의 경우 류씨가에서 직접 거주하는 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대해주고 家垆稅를 받거나 혹은 그 대신 노동력으로서 '戶役'을 제공받았다. 임야의 경우 임야에서 생산된 송추·화목·재목 등을 판매함으로써 중요한 현금수입원이 되었다. 류씨가에서 자작하는 전답은 문전옥답인 당전평의 논과 거주지인 오미동에 있는 밭 일부에 한하였으며, 다른 마을에 있는 垆田畠은 모두 소작을 주었다. 소유 임야의 면적은 일제 전시기에 걸쳐 55정보로서 변동이 없으며, 전답의 면적은 <표 2-1>에서와 같이 변동이 있었다. 논·의 경

표 2-1 류씨가 농지 소유 면적 추이, 1898~40

단위: 두락

		1793 ¹⁾	1868 ²⁾	1898	1908	1915	1920	1930	1940
자작지	논			45.0	24.0	10.0	15.0	13.0	13.5
	밭			5.0	-	4.0	4.0	1.0	-
	합계			50.0	24.0	14.0	19.0	14.0	13.5
소작지	논			79.8	88.8	57.4	55.4	47.4	36.9
	밭			33.5	33.5	15.6	14.6	17.3	39.0
	합계			113.3	122.3	73.0	70.0	64.7	75.9
합계	논	489.5	205.8	124.8	112.8	67.4	70.4	60.4	50.4
	밭	134.0	65.5	38.5	33.5	19.6	18.6	18.3	39.0
	합계	623.5	271.3	163.3	146.3	87.0	89.0	78.7	89.4

1) 1793년 분재 중 장자상속분, 2) 산직토 논 19.8두락, 밭 5두락 제외.

자료: 長子區處記(1793), 次子區處記(1793), 秋收冊(1898~1908), 土稅收捧記(1906~41), 柳瑩業垵田畝分筆合併異動簿(1915).

우 1920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였으며, 밭의 경우 1930년대에 집중적인 개간을 통해 늘어나게 되었다. 이리하여 대·전·답·임야 등 류씨의 수입원은 일제 말엽에 올수록 줄어드는 추세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류씨의 총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류씨가에서는 연간 총수입과 지출을 가능한 짜임새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정해 놓고 이에 따라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였다(이용 자료 해설 참조).

① 현물 수입의 경우 자가소비용 수입원과 판매용 수입원의 계정을 구분하여 따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즉, 류씨의 문전옥답인 당전평의 논 33~35두락은 일부는 자작경영하고 일부는 소작을 주었는데, 이 논에서의 소작료 미곡과 자작 생산한 벼는 아예 자가식량용으로 책정해 놓고, 그 생산·수입 및 소비에 대해서는 「糧米冊」에 기록하여 관리하였다. 또한 자작생산한 보리와 밀의 수납과 지출에 대해서

도 양미책에 기록하여 관리하였다. 반면 그 외 현물 소작료의 수납과 지출 및 소비에 대해서는 土稅收捧記에 기록하여 관리하였다.

② 농산물 판매 수입과 화폐 소작료 등 화폐 형태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當用錄」에 기록하여 관리하였다.

③ 부의금, 토지매도 대금 등 일시적인 수입금은 일단 「柒錄冊」에 기록하고 별도 관리하면서 통상적인 가계수입이 가계지출에 크게 부족하게 될 때에 한하여 이를 끌어쓰고 각 계정에 수입과 지출로 기록하였다.

④ 戶役 및 家垆稅에 대해서는 「柒錄冊」 중의 ‘戶役記’ 항에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였다.

⑤ 營農·山役·家役 등에 사용한 일고 노동력의 노임과 노역 상황에 대해서는 「田家日記」 혹은 「農家日記」 등에 기록하였다.

⑥ 영농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음은 물론 영농의 수익성이나 비용 등에 대해서 계산한 적도 없었으며, 다만 연간 생산량 동향이나 작황에 대해서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을 뿐이었다.

⑦ 류씨가에서 수입 증대를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영농보다는 식목과 임산물 수입이었다.

⑧ 이상을 보면 류씨가의 가계 수입과 지출의 관리방식은 지극히 치밀하고 체계적이었던 반면 농업생산과 영농비 등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 연도별·항목별 수입의 변화

2.1. 내작답에서의 자작생산과 소작료 수입

앞에서 보았듯이 류씨가에서는 논에서의 수입을 처음부터 두 가지 용도로 나누어 관리하였다. 문전옥답인 당전평의 논 33~35두락에서의

수입은 자작생산물이든 소작료로 받은 수입이든 모두 자가소비용 양곡으로 책정하였으며, 그 외 논은 모두 소작을 주고 여기서 받은 소작료는 모두 판매한다는 방침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당전평 논에서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糧米冊」에 기록하였으며, 그외 소작답에서 받은 소작료의 수납과 판매 및 지출에 대해서는 토세수봉기에 기록하였다. 또한 류씨가에서는 당전평의 논 33~35두락과 瓦坪의 棉太田 4두지를 자작농지로 설정하였던 듯 이를 ‘家作’ 혹은 ‘內作’으로 칭하고, 그 외의 소작지에 대해서는 ‘外作’이라고 하였으며, 당전평 내 소작답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內分作’이라고 부르다가 1908년부터는 당전평 내 소작답 5두지에 대해 “5두지는 금년부터 비로소 외작이 되었으므로 이름을 소작이라고 칭한다(五斗只始自今年爲外作故名稱小作也)”고 하였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먼저 당전평 소재 내작답에서의 생산 및 소작료 수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류씨가에서 내작답으로 불렸던 당전평 소재 논은 류씨의 입향조 류이주 이래 대대로 소유해오던 流來土地로서, 원래는 33두락이었으나 1905년에 2두락을 신간하여 1915년 가을부터 소작료를 수납하게 됨으로써(「糧米冊」, 1915년조) 35두락이 되었다. 이 논은 자작과 소작에 의해 경작되었는데, 먼저 자작답의 면적과 생산의 추이를 살펴본 다음 소작 실태를 검토하기로 하겠다.

류씨가에서 자작하는 논은 당전평 소재 논에 한정되었다. 먼저 자작답의 면적 변화를 보면 <표 2-2>에서 보듯이 1902~07년에는 33두락 중 31두락을 자작하였으나 이후 점점 축소되기 시작하여 1915년에는 10두락으로 줄었다가 1916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여 1918년에는 22두락을 자작하였다. 그 후 1919~28년에는 12~21두락 수준에서 매년 자작면적이 증감되었으나 1929~40년 기간에는 13두락 수준을 유지하였다. 1941년에는 3두락을 묘위답으로, 4두락은 매도하여 당전평 내작답 면적이 28두락으로 줄어들었으며, 자작답 면적도 5두락으로 줄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류씨의 자작답 면적은 매년 증감을

표 2-2 자작답에서의 생산 및 도정 상황, 1902~41

연 도	두락수	생산량 (석)	도정량 (두)	미 량 (두)	정곡환 산율(%)	정곡환산 량 ¹⁾ (석)	단보당 정곡 생산량(석)		
							류씨가 ²⁾ (a)	전국평균(b)	a/b
1902	31	42	740	207.00	27.97	11.749	0.529		
1903	31	69	1,220	370.75	30.39	20.969	0.944		
1904	31	60	1,015	296.25	29.19	17.512	0.788		
1905	31	34	560	189.75	33.88	11.521	0.519		
1906	31	55	1,060	349.00	32.92	18.108	0.815		
1907	31	60	1,140	429.25	37.65	22.592	1.017	0.729	1.40
1908	24	51.5	980	357.50	36.48	18.787	1.092		
1909	22	55.4	998	349.00	34.97	19.373	1.229	1.047	1.17
1910	21.5	52	910	352.75	38.76	20.157	1.308	0.769	1.70
1911	19.5	48	908	332.50	36.62	17.577	1.258	0.827	1.52
1912	19.5	42	760	282.00	37.11	15.584	1.115	0.767	1.45
1913	19.5	44	842	325.50	38.66	17.010	1.217	0.831	1.46
1914	17	43	710	291.25	41.02	17.639	1.448	0.952	1.52
1915	10	30	540	202.00	37.41	11.222	1.566	0.858	1.83
1916	12	28.5	560	213.75	38.17	10.878	1.265	0.917	1.38
1917	18.5 ³⁾	47 ³⁾	895	376.00	42.01	19.745	1.489	0.895	1.66
1918	22	50	950	453.00	47.68	23.842	1.512	0.988	1.53
1919	21	44.5	870	402.75	46.29	20.600	1.369	0.826	1.66
1920	15	35.5	710	302.00	42.54	15.100	1.405	0.957	1.47
1921	18	36.5	720	324.50	45.07	16.450	1.275	0.935	1.36
1922	15	35	680	308.00	45.29	15.853	1.475	0.964	1.53
1923	15	38.5	606	288.50	47.61	18.329	1.705	0.979	1.74
1924	16	7.25	645	289.75	44.92	16.734	1.459	0.839	1.74
1925	14	34	580	237.25	40.91	13.908	1.386	0.932	1.49
1926	17	45.5	680	258.50	38.01	17.297	1.420	0.964	1.47
1927	12	33	640	289.50	45.23	14.927	1.736	1.080	1.61
1928	12	33.5	640	307.50	48.05	16.096	1.872	0.890	2.10
1929	13	35.5	700	346.50	49.50	17.573	1.886	0.840	2.25
1930	13	35	690	334.00	48.41	16.940	1.818	1.154	1.58
1931	13	30.5	595	296.50	49.83	15.199	1.631	0.948	1.72
1932	15	44.5	870	410.00	47.13	20.971	1.951	0.995	1.96
1933	16	42	575	260.00	45.22	18.991	1.656	1.072	1.54
1934	12	34	550	279.00	50.73	17.247	2.005	0.977	2.05
1935	13	40	790	387.50	49.05	19.620	2.106	1.055	2.00
1936	13	34	680	297.50	43.75	14.875	1.597	1.212	1.32
1937	13	38.5	760	376.00	49.47	19.047	2.044	1.635	1.25
1938	13	30	490	257.00	52.45	15.735	1.689	1.454	1.16
1939	13	26	509	248.00	48.72	12.668	1.360	1.163	1.17
1940	13	32	520	245.50	47.21	15.108	1.622	1.311	1.24
1941	5	15	300	135.00	45.00	6.750	1.884		
합계 평균	712 17.8	1,621.65 40.5	29,588 739.7	12,258.00 306.45	41.43	16,780	1.315	0.993	1.32

1) 정곡 환산량은 생산량에 정곡 환산율을 적용.

2) 당전평 답 35두락의 평수 7,531평에서 1두락은 215평에 해당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류씨가의 단보당 미곡 생산량을 계산.

3) 환동 답 1.5두지의 소출 3석 포함, 내작답 17두지의 소출은 44석.

4) 1석은 20두, 1두는 舊升 4승 新升 5승이나 류씨가는 구승으로 기입하였음.

자료: 각년도 양미책, 전국 평균단수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거듭하긴 하였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1930년대 이후 축소되는 경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류씨가의 자작답에서의 생산량 추이를 보면 <표 2-2>와 같았다. 여기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매년 생산량이 변동하고 있으나 류씨가의 단보당 미곡 생산량이 전국 평균 단수를 시종일관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표에서 보듯이 류씨가의 단보당 미곡 생산량은 전국 평균 단수의 1.17배에서 많을 때는 2.25배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류씨가의 미곡 단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던 것은 우선 당전평이 위치하는 “앞 들의 水源은 전국에서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전평 앞 들판은 多水畝(기어, 1909. 5. 19)”이라고 자평한 류씨가의 말처럼 류씨가의 자작답은 수리안전답이었으며, 신품종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¹⁾.

둘째로는 정곡 환산율이 매년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農形에 三不出이 있으니 禾不出, 穀不出, 米不出이 그것이다(양미책, 1925년)”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삭이 패는 정도, 곡식이 결실하는 정도, 미곡의 산출 정도가 매년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정도는 매년의 기후조건과 식부한 수도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시기별로 보면 荒租가 주종이었던 1906년까지는 정곡 환산율이 낮았으며, 1907~12년에는 日米租·四石租·黃租 등의 재래품종으로 대체되면서 정곡 환산율은 35%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 후 1913년부터 신품종인 早神力이 도입됨으로써 정곡 환산율은 38% 이상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1918년 이후로는 거의 매년 40% 이상을 상회하게 되어 1938년에는 52.45%의 정곡 환산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당전평에 소재하는 류씨가의 내작답 중 소작지의 운용 실태를 보면

1) 작부체계, 작물별 생산동향, 수도 신품종의 도입, 시비와 병충해 방제, 노동력 조달 등 류씨가의 전반적인 농업경영에 대해서는 이두순·박석두, 1993 참조.

〈표 2-3〉과 같다. 소작지 면적은 1902~07년까지는 2두락이었으나 1908년부터 매년 증가하여 1915년에는 24두락에 달했으며, 1916~21년에는 13~19두락 수준이었다가 1922년 이후로는 18~23두락을 유지하였다. 전반적으로 보아 1920년대 이후 소작지가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전평 소작답의 소작료는 정조법으로서 1934년까지는 두락당 미 7두로 정해져 있었으나 1935년부터는 두락당 미 8두로 인상하였다. 이에 대해 류형업은 “다른 지주들은 1두락당 정조 180근씩 받는데, 이를 쌀로 하면 미 11두에 해당된다고 한다(양미책, 1935년 조)”고 하거나 “이른바 재산가의 토지에 대한 소작료로 1두락에 보통 정조 182근씩 납부하는 외에 지세금으로 매두락당 정조 3두 내지 4~5두까지 내야 하니 이렇다면 이른바 소작인은 지주에게 무상으로 고용된 사람일 뿐인데, 포악한 지주로 지목된 사람의 경우 加賭稅가 또 있다고 하니 소작인은 보리나 갈아먹어야 할 판이다(기어, 1935. 10.23)”라고 하였다. 류씨가에서 받는 소작료가 타지주에 비해 훨씬 저렴하였다는 것인데, 류씨가에서는 그 대신 소작농들에게 자작지 경영 및 가역에 필요한 노동력을 우선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1940년의 경우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은 소작인에 대해서는 약정 소작료인 두락당 미 8두 대신 다른 지주와 마찬가지로 미 10두를 받았던 데서 류씨의 소작료와 자작지 경영 및 가사에 필요한 노동력의 대체 관계를 알 수 있다.

당전평 소작답의 소작료 형태는 미곡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1908년, 1910년, 1941년에는 일부 소작지에서 조곡으로 납부하기도 하였다. 조곡으로 납부한 소작료에 대해 당해년도의 정곡환산율을 적용하여 미곡으로 환산하면 1908년의 경우 조곡 140두는 정곡 51두로서 7두락의 원소작료 49두보다 2두가 많고, 1910년의 경우 조곡 40두는 정곡 15.5두로서 2두락의 소작료 14두에 비해 1.5두가 많으며, 1941년의 경우 조곡 146두는 정곡 65.7두로서 69두에 비해 3.3두가 모자랐다. 조곡으로 받는 경우 류씨가에서는 이를 도정해야 했으며, 그에 따라

표 2-3 內作畝에서의 자작생산 및 소작료 수입 추이, 1902~41

연도	소 작					자 작			합 계		
	두락	소작료(두)				두락	미곡 수입량(두)		두락	미곡 수입량(두)	
		미곡	벼	합계(미곡)	두락당		수입량	두락당		수입량	두락당
1902	2	14		14	7	31	234.98	7.58	33	248.98	7.54
1903	2	14		14	7	31	419.38	13.53	33	433.38	13.13
1904	2	14		14	7	31	350.24	11.30	33	364.24	11.04
1905	2	14		14	7	31	230.42	7.43	33	244.42	7.41
1906	2	14		14	7	31	362.16	11.68	33	376.16	11.40
1907	2	14		14	7	31	451.84	14.58	33	465.84	14.12
1908	9	14	140	65	7.9	24	375.74	15.66	33	440.74	13.36
1909	11	75.5		75.5	6.9	22	387.46	17.61	33	462.96	14.03
1910	11.5	66.5	40	82	7	21.5	403.14	18.75	33	485.14	14.70
1911	13.5	94.5		94.5	7	19.5	351.54	18.03	33	446.04	13.52
1912	13.5	94.5		94.5	7	19.5	311.68	15.98	33	406.18	12.31
1913	13.5	94.25		94.25	7	19.5	340.20	17.45	33	434.45	13.17
1914	16	111.5		111.5	7	17	352.78	20.75	33	464.28	14.07
1915	24	172		172	7.2	10	224.44	22.44	34	396.44	11.66
1916	23	159		159	6.9	12	217.56	18.13	35	376.56	10.76
1917	18	129		129	7.2	18.5 ²⁾	394.90	21.35	36.5 ²⁾	523.90	14.35
1918	13	91		91	7	22	476.84	21.67	35	567.84	16.22
1919	14	98		98	7	21	412.00	19.62	35	510.00	14.57
1920	19	97 ¹⁾		97	6.9	15	302.00	20.13	35	399.00	11.40
1921	17	118		118	6.9	18	329.00	18.28	35	447.00	12.77
1922	20	140		140	7	15	317.06	21.14	35	457.06	13.06
1923	20	140		140	7	15	366.58	24.44	35	506.58	14.47
1924	19	132		132	6.9	16	334.68	20.92	35	466.68	13.33
1925	21	147		147	7	14	278.16	19.87	35	425.16	12.15
1926	18	125		125	6.9	17	345.94	20.35	35	470.94	13.46
1927	23	161		161	7	12	298.54	24.88	35	459.54	13.13
1928	23	161		161	7	12	321.92	26.83	35	482.92	13.80
1929	22	154		154	7	13	351.46	27.04	35	505.46	14.44
1930	22	154		154	7	13	360.14	27.70	35	514.14	14.69
1931	22	153		153	7	13	303.98	23.38	35	456.98	13.06
1932	20	140		140	7	15	419.42	27.96	35	559.42	15.98
1933	19	132		132	6.9	16	379.82	23.74	35	511.82	14.62
1934	23	161		161	7	12	344.94	28.75	35	505.94	14.46
1935	22	175		175	8.0	13	392.40	30.18	35	567.40	16.21
1936	22	162		162	7.4	13	297.50	22.88	35	459.50	13.13
1937	22	174		174	7.9	13	380.94	29.30	35	554.94	15.86
1938	22	174		174	7.9	13	314.70	24.21	35	488.70	13.96
1939	22	183		183	8.3	13	253.36	19.49	35	436.36	12.47
1940	20	168		168	8.4	13	302.16	23.24	33	470.16	14.25
1941	21	95	146	160.7	8	5	135.00	27.00	26 ³⁾	295.70	11.37

1) 132두인데 류형업의 숙부 소작료 35두 불납.

2) 환동답 1.5두지 포함.

3) 3두락은 묘위답, 4두락은 매도하여 면적 감소.

자료: 각년도 양미책.

방아삭과 노임을 필요로 하므로 미곡 소작료 수납량보다 그만큼 많은 게 당연하였다. 반면 1941년의 경우 “租로 받은 것은 금년부터 공출에 넣어야 하기 때문(양미책, 1941년)”이었으며, 정곡 환산율을 50%로 가정한 양의 조곡을 수납하였는데, 실제 정곡 환산율은 45%에 머물렀기 때문에 미곡으로 수납한 것보다 적게 되었다. 1940년부터 양곡공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작료는 전량 양곡수집소에 납부하게 되었으나 류씨가에서는 당전평 소작료의 절반 이상을 공출에 의하지 않고 직접 미곡으로 수납하였던 것이다.

당전평 자작답의 두락당 생산량과 소작지의 두락당 소작료를 비교하면, 1두락당 소작료 미곡 7두는 1906년까지는 자작답 생산량의 51~94%에 달하였으나, 이후 자작답의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이 소작료는 1913년까지는 자작답 생산량의 40% 내외로 낮아졌으며, 1914~26년은 자작답 생산량의 1/3 수준, 1927~35년은 30% 미만이었다가 1936년 이후로는 생산량의 기복이 심해지면서 27~41%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요컨대 류씨가의 소작료는 1914년 이후로는 자작답 생산량의 1/3 수준 내외로서 타지주에 비해 월등히 낮은 소작료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정도의 소작료 수준이라면 류씨가에서는 소작을 주기보다는 자작생산을 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류씨가의 자료 중 1919년도 수도작의 생산비와 수익성에 관한 기록이 들어 있는 雇價會計日記를 정리한 <표 2-4>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1919년 당시 소작답 3두락에서의 소출은 쌀 39.5두(금액으로는 395냥)였는데, 이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 비용은 66.5냥으로서 미가로 환산한 생산량의 16.8%였으며, 방아를 찧고 난 후 소작인이 취득한 미량은 18두로서 생산량의 45.6%였다. 이를 당전평 자작답에 적용하여 류씨가에서 자작 생산한 미곡량의 17% 정도를 경작비로 제외한다면 지주의 입장에서는 소작보다는 자작으로 생산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씨가의 자작답 면적은 1918년을 경계로 하여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류씨가의 자작지

표 2-4 소작당 3두락에서의 경작비와 收支 사례, 1919

경 작 비				순 수 입			
비 목	투입량	단가(냥)	비용(냥)	항 목	미곡(두)	금액(냥)	비 고
비료(時草)	3負	3	9	砵米(미곡)	39.5	395	所出 租4석5두
種租	3斗	5	15	소작료	21	210	
耕役(논갈이)	1명	2	2	방아세	0.5	5	소출의 45.6% 소출의 16.8%
비료운반	1명	2	2	소작인취득	18	180	
諸役(논두렁)	1명	2	2	경작비용		66.5	
移秧(모내기)	4명	2	8	순수입		113.5	
耘草(김매기)	8명	1.5	12				
刈禾(벼베기)	5명	2.5	12.5				
打租(탈곡)	5명	0.5	2.5				
토세미 운반	0.5명	3	1.5				
합 계			66.5				

자료: 1919년 田家日記중 雇價會計日記.

경영 및 가사 노동력의 주요 원천이었던 협호와 머슴의 부족 및 노임 상승, 오미동 내 류씨 일족의 토지 부족에 의한 소작지 수요 증가, 정액소작료에 의한 수입의 안정적 확보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²⁾.

당전평 내작당에서의 자작생산과 소작료 수입을 합한 총수입의 추이는 <표 2-3>과 같았다. 당전평 내작당에서의 두락당 총수입은 미곡 7.5두 수준이었던 1902년과 1905년을 제외하고는 전시기에 걸쳐 미곡 10.8~16.2두 사이에서 증감하였으며, 총미곡수입량은 364.2~567.8두 정도였다. 후술하듯이 류씨가 연간 미곡 소비량은 당전평 내작당에서의 미곡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정도였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여 20두 내외의 미곡을 구매하여 식량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1933년 이후에는 식량용으로 책정하여 두었던 당전평 내작당에서의 수입 중 일부를 방매하여 가용 현금 지출에 쓰기도 하였다. 당전평 내작당 중 4두락을 매각하고 3두락을 묘위답으로 전환하여 그 수입이

2) 이두순, 박석두, 1993.

줄었던 1941년을 제외하고는 1910년 이후 류씨가의 내작답 수입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풍흉에 따라 자작답 생산량이 변하였음에 반해 1922년 이후에는 정액제 소작료에 의해 고정 수입을 보장하는 소작답 면적이 20두락 이상을 차지하여 그 변동 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 보리·밀·콩 등의 자작생산

류씨가에서는 당전평의 논을 자작하는 외에 보리·밀·콩 등을 자작 생산하였다. 보리와 밀은 오미동 소재 밭과 당전평의 논에서 답리작으로 생산하였으며, 콩은 1908~10년에는 자작생산하지 않았으나 1911~24년에는 2두지, 1925~29년에는 1두지, 1930년, 1931년에는 밭 1두지와 답 10여두락의 논두렁, 1932~34년에는 논두렁에서 자작생산하였으나 1935년 이후에는 자작생산을 폐지하였다.

보리·밀·콩의 자작생산 추이는 <표 2-5>와 같다. 보리의 자작면적은 1914년까지는 전답 함께 16두락 정도였으나 1915~17년에는 7~8두락으로 감축되었다가 1918~24년에는 10~13두락, 1925~29년에는 8~9두락, 1930년 이후로는 10~13두락 정도였다. 밭보리 재배면적이 1~4두락이었던 데 반해 답리작 논보리 재배 면적은 5~12두락으로서 매년 논보리 재배면적이 많았다. 1907~42년 기간 동안 재배면적의 변화가 크지 않은 데 반해 생산량은 매년 큰 변화를 나타냈다. 예컨대 1929년에는 8두락에서 180두(9석)가 생산되었는데, 1923년에는 12두락에서 120두가 생산되었던 것이다. 이로 보면 매년의 보리 생산량은 재배면적보다는 단수에 좌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38년 이후에는 20~190두의 보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후술하듯이 쌀의 자급량 감축과 적자가계에 기인하여 보조식량인 보리 소비량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밀의 자작면적은 1921년까지 6두락, 1922~25년에 5두락, 1926~29년에 3두락으로 감축되었다가 1930년에 1두락으로 줄었으며, 1931

표 2-5 보리·밀·콩의 자작생산 추이, 1907~42

단위: 두락,斗

연도	보리							밀		콩			
	논	밭	계	생산량	외작	구입	공급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07	20	2	22	121	124.5		245.50		40.0	2	20.00		
1908				145	20.0		165.00		40.0	2	17.75		
1909				125	83.5		208.50		42.5				
1910				169	15.0		184.00		66.0				
1911				280			280.00		65.0	2	20.00		
1912				174			174.00		66.0	2	35.00		
1913				160			160.00		56.0	2	27.00		
1914				12	4		16	200		6	59.0	2	27.00
1915				7	4		11	160		6	70.0	4	37.00
1916				5	2		7	100		6	60.0	2	28.50
1917	6	2	8	140		6	140.00	6	45.0	2	39.00		
1918	8	4	12	200		6	200.00	6	64.0	2	42.00		
1919	9	4	13	188		6	188.00	6	55.0	2	35.00		
1920	9	4	13	180		6	180.00	6	68.0	2	27.00		
1921	9	4	13	200		6	156.00	6	75.0	2	27.00		
1922	8	2	10	140		5	140.00	5	56.0	2	27.00		
1923	10	2	12	120		5	120.00	5	67.0	2	26.00		
1924	8	2	10	180		5	180.00	5	76.0	2	23.00		
1925			9	160		5	160.00	5	80.0	1	15.00		
1926			9	120		3	120.00	3	31.0	1	17.00		
1927			8	120		3	120.00	3	40.0	1	18.00		
1928			8	155		3	155.00	3	40.0	1	17.00		
1929			8	180		3	180.00	3	35.0	1	10.00		
1930			11	210		1	210.00	1	11.0	1	19.00		
1931			10	170		42.50	212.50	2	15.0	1	13.00		
1932			13	260			폐경	260.00		논두렁	8.00		
1933	11	1	12	280			1	280.00	1	15.0	6.00		
1934	11	1	12	200			1	200.00	1	11.0	9.00		
1935	10.5		10	190			190.00				9.50		
1936			11	150			150.00				6.25		
1937			10	180			180.00	1	16.0		11.25		
1938			11	130		20.00	150.00	1	10.0		7.50		
1939			11	110		36.75	146.75	1	8.0		6.25		
1940				12	180			180.00		5.0			
1941					180		49.75	229.75		30.0			
1942					100		190.00	290.00		5.0			

1) 구입한 보리는 류씨가 수입과 지출 면에서 보면 수입이 아니라 현금 지출에 해당됨.

2) 콩은 1930년부터 10여두락의 논두렁에 재배하였음.

자료: 각년도 양미책.

년에는 2두락으로 늘었으나 1932년에는 밀 경작을 폐지하였다가 1933년 이후로는 1두락 정도를 자작하는 데 그쳤다. 류씨가에서는 주로 누룩을 만들기 위해 밀을 재배하였는데, 1929년의 개정 주세령에 의해 가내에서 사사로이 누룩 및 탁주를 제조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1930년 이후 밀의 재배면적을 감축하였던 것이다.

류씨가에서는 1924년까지는 와평의 면태전 4두지 중 2~3두락의 밭에 콩을 재배하였으나 1925~29년에는 1두락으로 감축하였으며, 1930년 이후로는 주로 논두락에 콩을 심었다. 이에 따라 연간 콩 생산량도 1924년까지는 20두~42두 정도였으나 1925~31년에는 10~19두로 줄었으며, 1932~39년에는 연간 10두 정도였다가 1940년 이후로는 폐경하였다. 콩의 경우 1925년 이후 생산이 감축되는 추세였음을 알 수 있다.

2.3. 外作 垆田畚 및 新墾田畚에서의 소작료 수입

류씨가에서는 이상의 자작 전답 이외에 토지면 내의 他洞과 문척면·마산면·간전면 등 他面 소재 垆田畚에서 <표 2-6>과 같이 소작료를 수납하였다. 이 표에 정리한 소작료 내역은 류씨가에서 원래 수납하였던 형태별로 정리한 것으로서 현금으로 받은 소작료는 모두 정해진 현물 대신 수납한 것이다. 따라서 류씨의 총수입 내역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받은 소작료를 가능한 현물량으로 환원하여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작성한 것이 <표 2-7>로서 류씨가에서 현물 대신 현금으로 수납한 소작료의 현물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표 2-7>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현금으로 소작료를 수납한 것은 특정 소작인의 특정 소작지에 한정되었으며, 기존의 소작지에서는 여전히 현물소작료가 지배적이었으나 1932년 이후 신기전에서는 현금 소작료가 일반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보아 1930년대 이후 주로 신간전을 중심으로 현금 소작료가 점차 일반화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표 2-6 外作 垡田畝에서의 소작료 수입 추이, 1906~41

연도	쌀 (두)	현금 (냥)	벼 (두)	콩. 팔 (승)	백목 (자)	목화 (근)	담배 (把)	무우 (畝)	참깨 (승)	고추 (근)	감 (접)	빛자루 (자루)	보리 (두)	감자 (두)	메밀 (승)
1906	92.5		57				70	9							
1907	92	18.90		18			70	9							
1908	100.5	3.50		17	80		70	9							
1909	88.25			18	80		70	9	4						
1910	74.25	7.00	20	18	80		70	9	4						
1911	88.25	15.86		18	80		70	9	4						
1912	83.5	16.60		18	80			9	4						
1913	74.25	7.00	50	18	80		70	9	3						
1914	114	7.55	3	21	80		95	9	4						
1915	102.5	8.30		18	80		95	9	4						
1916	114	3.00		18	80		53	9	4						
1917	98.5	55.80		18	80		31	9	4						
1918	112	7.50		18	80		11	9	4						
1919	112		3	18	80		25	9	4*		1				
1920	102		3	28	80		80	9	4	4	5	12			
1921	88			28	80		45	9	4	4	3	10	4		
1922	103.5	100.00	22	29	120	60	45	9	15	3	10		4		
1923	128		23.5	71	40	120	13	9	12	2	3		4		
1924	117	4.00	23.25	76	40	110	5	9	14	2	20				
1925	114.5	125.20	23.25	65		150	5	9	13	1	10				
1926	114.5	61.20	15.5	46	50	100	2	9	12		5				
1927	90	112.95	20.25	63	45	92	8	9	12.5	2	2				
1928	87	82.90	14.25	60	95	90		9	10	1	5				
1929	89	76.65	14	60	50	120		9	12		5				
1930	89	44.50	19	75	50	120		9	12		20				
1931	89	50.00	25.5	75	40	88		9	13		20				
1932	59	27.00	25.5	75	45	90		9	12						
1933	56	146.00	31	84	40	75		9	12						
1934	39	121.00	16.25	80		130		9	13						
1935	43	92.95		104		150		9	13		4				
1936	55	140.55	0.5승	107		80		13점	11.5	0.5승	5			2	
1937	38	263.75		144		150		9	14		2			3	
1938	38	467.05		114		150		9	21	5.5	6				2
1939	36.5	205.70		105		134		9	19	5.5					
1940	41	544.15		133.5		165		9	18	7.5	5				
1941	37	622.40		116.5		168		9	12	13.3					

* 들깨.

자료: 「칠록책」중 「외작토세수봉기」 각년도.

표 2-7 현금 소작료의 내역, 1907~41

연도	현금액	미곡 (두)	벼 (두)	보리 (두)	콩, 팥 (승)	목화 (근)	참깨 (승)	감 (집)	메밀 (승)	미상(양)	
										신기전	신간답
1906											
1907	18.90		30.00								
1908	3.50	2.25									
1909											
1910	7.00		10.00								
1911	15.86*		13.00								
1912	16.60	2.50	5.00								
1913	7.00	5.00									
1914	7.55	2.00									
1915	8.30	2.00	3.00								
1916	3.00		3.00								
1917	57.80	10.50	3.00								
1918	7.50		3.00								
1919											
1920											
1921											
1922	100.00	14.00									
1923											
1924	4.00			4.00							
1925	125.20				35.00	90	4				
1926	61.20					90	4				
1927	112.95					90	4				
1928	82.90					90	4	5			
1929	76.65					90	4				
1930	44.50					90	4				
1931	50.00					90	4				
1932	27.00					90	4	10		40.00	
1933	146.00	3.00			8.00					47.50	
1934	121.00		11.00		8.00			5.5냥		78.00	
1935	92.95		11.00		13.00					48.25	
1936	140.55									55.50	27.75
1937	263.75		45.00		5.00					83.25	
1938	467.05		62.00		5.00					147.55	
1939	205.70		2.00		10.00			55냥	20	67.60	
1940	544.15		44.00							235.50	67.90
1941	622.40		56.00					6.5		263.15	36.25

* 「당용록」 1912년조에는 3냥 3전 6푼이 제외된 12냥 5전을 가용한 것으로 되어 있음.
자료: 「칠록책」중 '외작토세수봉기.' 각년도.

그러나 신간 소작전의 경우 현금 소작료를 수납함으로써 지주와 소작인의 어느 쪽이 유리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일정 소작지에서의 현금소작료액이 매년 달랐던 것으로 보아 정액소작료적 성격이 미약하였으며, 따라서 현금 형태의 소작료가 소작인에게 유리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류씨가에서는 새로 개간한 신간전답에서의 소작료 수입에 대해

표 2-8 新起田畝에서의 소작료 수입 추이, 1905~33

연도	목화 (근)	콩 (승)	참깨 (승)	백목 (자)	무우 (속)	쌀 (두)	벼 (두)	담배 (把)	삼겹질 (단)	삼씨 (승)	고추 (두)	비 고
1905	3	10			수속							
1906	3	12										
1907		1	4	10	3							
1908		4	4	9								
1909		2	4	7								
1910	1	11										
1911		10	4	10								
1912		12	4	10								
1913		2	1	5								
1914		10	5	7								
1915		15	5	10		1						
1916	3	34						40				
1917	3	1	5			6		40	1	4		
1918		0.5	5			1	11.5	30	2			
1919		0.5	5	10		5.5		30				
1920		1	6			6.5		30				
1921		1	3			6		30			1	
1922		1	8			6.5		30				
1923		13	7			6.5						
1924		21	8			6.5						
1925		21	8			7						
1926		21	7			7						
1927		21	8			7						
1928		12	5			5					1	
1929		12	7			7						
1930		21	7			7						
1931		17	8			7						
1932		17	8			7						
1933		25	8			7	4.125					

자료: 「칠록책」중 '신기전답조사수세기,' 각년도.

서는 「칠록책」의 「新起田畚調査收稅記」에 따로 기록하였다. 「신기전답조사수세기」에 기록된 소작료 수입 중 일부는 판매하여 가용 현금지출에 충당하기도 하였는데, 그 경우 당용록의 수입란에도 이를 기록하였다. 판매하여 가용 현금수입에 포함시킨 것까지 포함하여 「신기전답조사수세기」에 기록된 수입을 정리한 것이 <표 2-8>이다. 1916년까지의 신간전답 소작료 중 콩은 1905~16년에 총 123승을 수납하였는데, 이 중 37승은 자가소비하고(當用錄의 「不計價家用秩」에는 1907년 1승, 1908년 4승, 1909년 2승, 1910년 11승 등 18승만 기록되고, 19승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음) 86승은 30냥에 판매하였으며, 1915년에 수납한 미곡 1두는 3.5냥에 판매하였고, 1916년에 수납한 담배 40파는 10냥에 판매하여 합계 43냥 5전을 1916년 겨울 가용에 산입하였다. 이후 담배는 1917년부터 당용록의 「生財條」에 포함시켰으며, 미곡은 1917~21년에는 「柒錄冊」의 「代(貸)租」항에 「植(殖)本」으로 기록하였고, 또한 피마와 삼씨는 「칠록책」의 「칠조」에 편입시켰으며, 그 외 자가소비한 품목은 당용록의 「不計價家用」란에 기록하였다. 그러나 1922년부터는 「신기전답조사수세기」의 모든 수입 내역이 「외작토세수봉기」와 「당용록」의 「生財條」에 기록되었다. 따라서 「신기전답조사수세기」에만 기록되고 다른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수입은 1921년까지의 기록 중 「당용록」의 「불계가가용질」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소비분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2.4. 利殖과 借用

류씨가에서는 보리·벼·쌀·현금 등을 대여해주고 그 이자를 받거나 금융조합 및 개인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였다. 즉, 보리의 利殖에 대해서는 「칠록책」의 「植(殖)牟」항에 기록하였으며, 벼의 利殖에 대해서는 「代(貸)租」항에, 그리고 벼의 이식 및 차입과 상환 등에 대해서는 「柒租」항에 기록하였던 것이다.

보리를 대여해주고 그 이자를 받아 지출한 내역을 기록한 「칠록책」의 ‘植牟’ 항은 1908~17년까지의 기록으로서, 이를 정리한 것이 <표 2-9>이다. 보리 대여시 최초 원본은 자작 생산한 보리의 일부였으며, 1908년에 대여용 보리에 추가된 것도 자작생산 보리 중 자가소비하고 남은 것이었다. 이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자작생산 보리로서 류씨가 수입에 포함된 것이므로 별도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1910년에 추가 대여된 보리는 1909년 여름에 구입하였던 보리 중 남은 것이므로 별도의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 <표 2-9>에서 1911년에 ‘무이자’로 대여한 것은 류형업의 중부에게 가을 보리 종자로 빌려주었다가 이자 없이 받은 것, 류씨가에서 양식으로 이용한 것과 방매하여 얻은 현금을 가용으로 지출한 것을 장부상으로 다시 채워넣은 것 등이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류씨가에서는 양식용 보리에 대해서는 「양미책」에 기록하고, 대여용 보리에 대해서는 「칠록책」의 ‘식모’ 항에 별도로 기록하였으며, 현금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당용록」에 기록하였는데, 각 계정을 분리하여 목적 외의 지출에 대해서는 계정간 이체의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예컨대 1911년에 ‘식모’ 항에서 150승의 보리를 끌어다 식량에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양미책」에서는 ‘식모’ 항에서 ‘인래’ 하였다고 기록하고 곧바로 양식용 보리 중에서 다시 끌어쓴 양만큼을 ‘식모’ 항에 갚는 형식을 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12년 이후로는 ‘식모’ 항에서 종자용과 식량용으로 끌어쓰고도 이를 다시 채워넣거나 하지 않았으며, 1918년 이후로는 아예 ‘식모’ 항을 폐지하였다. 자작생산 보리를 모두 식량용으로 소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도별로 ‘식모’ 항의 이식 상황을 살펴보면 1908년에 보리 170승을 50%의 이자율로 대여하여 원리 합계 255승이 되었는데, 여기에 25승의 자작생산 보리를 추가하여 1909년에는 280승의 보리를 대여하여 원리 합계 420승이 되었다. 1910년에는 이를 대여하여 원리 합계 630승이 되었고, 여기에 90승을 추가하여 연말에는 720승으로 늘어났다. 1911년에는 이 중에서 350승을 50%의 이자율로 대여하여 원리

표 2-9 보리 대여 및 이자 수입 추이, 1908~17

단위: 승, 냥

연 도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전년 이월	현물	170.0	280.0	420.0	720.0	788.0	861.5	520.0	144.0	176.0	120.0
	현금					15.0	65.0	84.5			
대여	현물	170.0	280.0	420.0	350.0	703.0	440.0	180.0	144.0	176.0	120.0
	현금					15.0	65.0				
이자	현물	85.0	140.0	210.0	175.0	281.2	220.0	79.0	72.0	88.0	60.0
	현금					5.0	19.5				
이자율(%)	현물	50.0	50.0	50.0	50.0	40.0	50.0	50.0	50.0	50.0	50.0
	현금					30.0	30.0				
무이자	현물				330.0 ¹⁾						
	현금										
소비	현물				40.0 ²⁾	79.0 ⁴⁾	544.5 ⁵⁾	430.0 ⁶⁾	40.0 ⁹⁾	144.0 ¹⁰⁾	90.0 ¹¹⁾
	현금							84.5 ⁷⁾			
원금 미수	현물							22.0 ⁸⁾			
감액·결측	현물				7.0	8.7	17.0	3.0			
상환	현물	255.0	420.0	630.0	458.0	861.5	660.0	237.0	216.0	264.0	180.0
	현금				15.0 ³⁾	65.0	84.5				
추가	현물	25.0		90.0							
연말 잔액	현물	280.0	420.0	720.0	788.0	861.5	520.0	144.0	176.0	120.0	90.0
	현금				15.0	65.0	84.5				

1)1910년가을 종자용 60승 중부에게 대여, 1911년 봄 식량 150승, 120승 방매 30냥 가용. 2)숙부에게 40승 지급. 3)15두 대신 15냥. 4)1912년봄 식량 64승, 중부에게 15승 지급. 5)1912년 가을 중부에게 40승 지급, 가을 보리종자 40승, 1912년 가을~13년 봄 하인 2인에게 140승 지급, 184.5승 1913년 봄 식량. 6)40승 종자용, 10승 엇기름용, 40승 숙부 지급, 340승 140.25냥에 방매하여 답 6두락 매입에 사용. 7)답 6두락 매입에 사용. 8)1914년 봄 借去人 2인 도주. 9)1914년 겨울 중부대 종자용. 10)144승 1916년 7월 이후 식량용. 11)1917년 8월 식량용.

자료: 「칠록책」중 '植牟.' 각년도.

합계는 525승인데, 여기서 60승은 현금 15냥으로 수납하고 7승은 감액하여 현물 보리는 458승이 되었다. 또한 나머지 370승 중 330승은 종자·양식·방매가용 등으로 인출하였다가 다시 그 양만큼 인입시키

고, 40승은 류형업의 숙부에게 지급한 결과 연말에는 보리 788승과 현금 15냥이 되었다. 이후 일부는 이자를 받고 대여하는 한편 일부는 식량·종자 등으로 소비하는 과정을 거쳐 1916년말에는 보리 120승이 남았으며, 1917년에는 이를 대여하여 원리 합계 180승이 되었는데, 90승을 식량으로 소비하여 90승이 남았으나 이 또한 소비한 듯 1918년부터는 '식모' 항의 기록이 중단되었다. 요컨대 1908~10년에 원본 170승과 대여 추가분 115승을 합하여 285승의 보리를 50%의 이자율로 대여함으로써 10년말에는 720승으로 증식되었는데, 1911~17년 사이에 일부를 대여하여 증식시키는 한편 그보다 많은 양을 소비하게 됨으로써 결국 17년말에 소진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908~17년에 류씨가에서 보리를 대여하여 얻은 실제 수입은 <표 2-9>의 소비란 합계 1,367.5승의 보리와 84냥 5전의 현금에서 1908년의 원본 보리 170승과 추가 대여분 115승 중 90승을 합한 195승을 제한 보리 1,172.5승과 84냥 5전의 현금이었던 셈이다.

류씨가에서는 벼와 쌀의 대여 및 이식에 대해 「칠록책」의 '代(貸)租' 항에 기록하였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 <표 2-10>이다. 1909년에 그 전해에 빌려주었던 5냥 대신 받은 벼 18두에 자작생산 벼 2두를 합한 벼 20두를 연리 40%의 이자율로 대여하여 원리 합계 벼 28두가 되었다. 1910년에는 이를 다시 41%의 이자율로 대여해주고 원리 합계 벼 39.5두 대신 백미 14두를 받았다. 1911년에는 백미 14두의 원리 합계 19.6두에 1승 6홑을 추가하여 쌀 20두로 만들고, 1912년에는 그 원리 합계가 28두로 되었으며, 1913년에는 원본 2.75두를 받지 못하고 0.35두의 결측분이 생겨 원리 합계는 35두가 되었는데, 이를 모두 판매하여 대금 133냥을 논 6두락 구입대금으로 지출하였다. 1909~13년에 원본 벼 20두와 추가분 쌀 0.4두를 대여해주고 쌀 3.1두가 결측 및 미수됨으로써 13년말에 쌀 35두(=133냥)가 되었던 것이다. 이 기간에 이자에 의해 늘어난 수입은 쌀 27.6두 가량이었던 셈이다.

그 외 1913년 3월에는 20원을 빌려주면서 가랑리 면전 2두지를 典

표 2-10 벼와 쌀의 대여 및 이자 수입 추이, 1908~22

단위: 두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전년 이월	벼 쌀	20.0 ¹⁾	28.0				-	28.0	67.2	126.0	194.0	292.6	308.6	100.0
				14.0	20.0	28.00	-							
대여	벼 쌀	20.0	28.0				20.0	48.0 ⁶⁾	42.0 ⁷⁾	126.0	194.0			
				14.0	20.0	25.25								
이자	벼 쌀	8.0	11.5				8.0	19.2	16.8	50.4	77.6			
				5.6	8.0	10.10								
이자율 (%)	벼 쌀	40.0	41.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0								
소비	벼 쌀												208.6 ¹³⁾	100.0 ¹⁶⁾
						35.00 ³⁾							8.5 ¹⁴⁾	13.0 ¹⁷⁾
원금 미수	벼 쌀						2.75							
						0.35								
결측	벼 쌀									0.4 ⁹⁾				
상환	벼 쌀	28.0	39.5 ²⁾				28.0	67.2	58.8	176.4	271.6			
				19.6	28.0	35.35								
추가	벼 쌀						20.4 ⁴⁾	20.0 ⁶⁾	42.0 ⁸⁾	18.0 ¹⁰⁾	21.0 ¹¹⁾	16.0 ¹²⁾		
				0.4									8.5 ¹⁵⁾	13.0 ¹⁸⁾
연말 잔액	벼 쌀	28.0	39.5				28.0	67.2	126.0	194.0	292.6	308.6	100.0	
				20.0	28.0	0.00								

1) 18두는 1908년 김완석 차용금 5냥 대신, 2두는 가작 여조. 2) 백미 14두로 대납. 3) 35두 방매가 133냥은 지랑평 답 6두지 매입가에 산입. 4) 가랑리 면전 토세조 1석 대신. 5) 전년이월 28두와 토세조 1석. 6) 가랑리 면전 토세조 1석. 7) 추가분 42두임. 8) '칠조' 향 14년조에서 끌어온 것임. 9) 가랑리 면전 세목 불납 허급. 10) 가랑리면전 작답 중 백미 5두 대신 조 15두, 입암곡 직토세미 1두 대신 조 3두. 11) 춘전동 신답 3승지 내작소출, 입암곡 신기답 8승지 내작 소출. 12) 춘전 신답 토세미 2두 및 뒷산 직토와 신답 합병 1두지 세미 3.5두 대신. 13) 칠조 향에 이기. 14) 칠조 1921년 가을조에 인계. 15) 양로계 파계 계미 2두, 춘전 신답 세미 2두, 입암곡 직토 신답 세미 4.5두. 16) 칠조 1921년 겨울조에 인계. 17) 칠조에 인계. 18) 춘전 신답 세미 2두, 입암곡 신구답 세미 4두, 화식계 9인 분담 계조 22.5두 18) 1919년부터 무이자. 가랑리 면전세 1916년에 백목 40자로 정하였는데, 1917년 불납, 1918년 이후 당용록 생채질에 기록.

자료: 「칠록책」중 '代租' 향, 각년도.

執하고 그 해의 소작료로 벼 1석 대신 27냥을 받아 이를 논 6두락 매 입대금 중에 넣었다. 1913년의 수입은 따라서 160냥이었던 셈이다. 1914년에는 典執한 가랑리의 면전 2두지의 소작료로 받은 벼 20두를 40%의 이자율로 대여하여 원리 합계 28두가 되었으며, 1915년에는 소작료 벼 20두를 추가하여 448두를 대여한 결과 원리 합계 67.2두가 되었다. 1916년에는 여기에 '칠조' 향 14년조에서 끌어온 벼 42두(새로 매입한 논 6두락의 소작료 120두 중 나머지 30두와 그 이자 합계)를 대여하여 생긴 원리 합계 58.8두를 합해 126두가 되었다. 1917년에는 126두의 원리 합계 176.4두에 18두를 추가하고 여기서 0.4두가 수납시 결측되어 194두가 되었다. 1918년에는 194두의 원리 합계 271.6두에 21두를 추가하여 292.6두가 되었으며, 1917년에는 대여하지 않고 소작료 16두를 추가하여 308.6두가 되었다. 이는 1920년과 1921년에 모두 「칠록책」의 '칠조' 향에 인계되었다. 또한 1920년의 소작료 수입과 계금 분배분 쌀 2두를 합한 쌀 8.5두의 방매 대금 42냥 5전을 '칠조' 향에 인계하였으며, 1921년에도 소작료 쌀 6두와 계금 분배분 쌀 7두 등 13두의 수입을 '칠조' 향에 인계하였다. 이후 '대조' 향의 기록은 폐지되었다. 1914~21년에 '칠조' 향에 인계된 총액은 벼 15석, 쌀 13두, 쌀 8.5두의 방매대금 42냥 5전(=8원 50전)이었다.

'대조'의 수입 항목 중 추가 대여된 수입 항목으로는 1913년에 전집한 면전 2두지의 소작료와 1913년에 매입한 논 6두락의 소작료, '신기전답조사수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신간답의 소작료, 1919년에 養老契를 파계하고 받은 분배금 등이었다. 면전 2두지의 소작료 벼 1석은 1913년에는 논 6두락 매입대금으로 쓰였으며, 1914년과 1915년에는 '대조' 향에 편입되었고, 1916년부터는 백목 40자와 함께 1승으로 변경되어 당용록에 기록되다가 1922년부터는 '외작토세수봉기'에도 기록되게 되었다. 논 6두락의 소작료 벼 6석은 1915년에는 '칠조' 향에 기록되었다가 1915년 10월에 매각과 함께 소멸되었다.

계정을 달리한 또 다른 수입 기록으로 「칠록책」의 '칠조' 향이 있는

데, 이를 정리한 것이 <표 2-11>이다. ‘칠조’ 항은 1906년 奴 복내·용득·점옥 등 3인에게 7석의 벼를 40%의 이자율로 대여한 기록으로 시작된다. 이후 1914년까지는 벼를 쌀이나 현금으로 바꾸어 殖利하면서 가용 양미 혹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토지와 농우의 매입 대금 등으로 인출하였으며, 1915년부터 식리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별도의 수입과 지출 기록으로 바뀌었다. 1920년까지는 벼와 쌀의 대여·이식 장부로서 ‘대조’ 항과 별 차이가 없으나 1921년 이후 화폐 단위가 ‘양전푼’ 대신 ‘원전리’로 바뀌는 한편 기록 내용도 금융조합·개인·종중·계 등으로부터의 차입과 상환, 토지매각 등 현대적인 회계 개념으로 보면 자본 계정과 금융계정에 해당되는 장부로 바뀌었다. 류씨가에서는 1921~40년 사이에 금융조합으로부터 2,650원을 차용하고 3,129.13원을 상환하여 18.08%의 이자를 부담한 셈이었으며, 사채는 1921~31년에 1,397.51원을 차입하고 1,811.48원을 상환하여 이자율은 29.6%였다. 1921~41년에 금융조합과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차입금은 4,047.51원으로서 ‘칠조’의 총수입 10,394.532원의 38.94%를 차지하였으며, 토지매각 대금은 4,405원으로서 총수입의 42.38%를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 ‘칠조’의 지출 총액은 8,997.918원이었는데,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4,940.61원으로서 지출 총액의 54.91%였으며, 대지와 농우 구입비가 4.15%였다. 금융 및 자본 계정에 해당되는 수입과 지출이 대종을 이루었던 것이다.

‘칠조’ 항에 기록된 수입 항목 중 ‘신기전답조사수세기’에서 인계된 것으로서 1917년의 삼씨 4승대 6냥과 18년의 피마 2단 대금 25냥, ‘대조’ 항에서 인계된 것으로서 1920년의 벼 10석 방매가 375냥과 1921년의 미 8.5두 방매가 8원 50전 및 벼 5석 방매가 52원, 1922년의 미 13두 방매가 19원 50전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입이 다른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수입이었다. 따라서 류씨가의 수입을 총괄적으로 파악함에 있어 ‘칠조’ 항의 수입은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이다. 어쨌든 1906~41년 ‘칠조’ 항의 수입액 및 지출액의 추이는

표 2-11 '柒租' 향의 수입과 이자 내역, 1906~20

단위: 두, 냥

연도	품목	전년 이월	대 여			방 매		소비 지출	미수	결측	추가	잔액
			원본	이자	합계	양	가격					
1907	황조	140.0 ¹⁾	140.0	56.0	196.0			40.0 ²⁾			28.0	184.0
1908	벼	184.0	184.0	73.6	257.6				57.0 ³⁾	7.6		193.0
1909	벼	193.0	193.0	77.5	270.5				28.0	2.5		240.0
1910	벼	240.0	240.0	96.0	336.0			60.0	60.0 ⁴⁾	6.0		210.0
1911	벼	210.0	80.0	32.0	112.0	130.0	130.0	14.5 ⁵⁾		0.5		97.0
	엽전		150.0 ⁶⁾	56.0	206.0			206.0 ⁷⁾			20.0 ⁸⁾	-
	미곡									0.675	73.675 ⁹⁾	73.0
1912	벼	97.0	77.0	30.8	107.8			20.0 ¹⁰⁾				107.8
	미곡	73.0	16.25	6.5	22.75	56.75	218.1	12.5 ¹¹⁾				10.25
	엽전							304.2 ¹²⁾			86.1 ¹³⁾	-
1913	벼	107.8	107.8	43.12	150.92			14.0		0.92		136.0
	미곡	10.25	10.25	4.1	14.35			52.89		0.10		14.25
	엽전	-									152.89	100.0
1914	벼	136.0	30.0	12.0	42.0	136.0	183.1	132.0 ¹⁴⁾			120.0 ¹⁵⁾	-
	미곡	14.25				14.25	54.15					-
	엽전	100.0						337.25				-
1915	벼	-										
	엽전	-						26.96			693.0	666.04
1916	엽전	666.04						536.95			137.5	266.59
1917	엽전	266.59	25.0					130.0	25.0		106.0	217.59
1918	엽전	217.59						31.04			75.0	261.55
1919	엽전	261.55						55.0				206.55
1920	엽전	206.55				300.0	375.0				420.0	626.55

1) 奴 복내 · 용득 · 점옥이 빌려간 것. 2) 1907년 간전택 수동의 혼사비. 3) 황조 57두 방매하고 대금 32냥 이명국에 대여. 4) 황조 60두 대신 미 20두 방매하려다 사기당하여 나중에 수납. 5) 황조 14.5두를 作米 5두. 6) 조 130두 방매대 130냥과 이명국 대여 32냥 중 20냥 수납분 합계. 7) 206냥으로 미 68.675두 구입. 8) 이명국 수납분. 9) 구입 미 68.675두와 作米 5두 합계. 10) 원기 임준상에게 지급. 11) 1913.8.11 이후 양미로 사용. 12) 미곡 방매 대금 218.1냥과 이명국 수납분 86.1냥(136.7냥은 당용록에 인계). 13) 이명국 수납분(총계 106.1냥). 14) 60두는 담매입가 부족분 차용 조 40두와 이자 20두, 30두는 동네 방앗간 값 차용금 30냥 대, 42두는 칠록의 대조 향에 인계. 15) 지랑평 답 6두락 토세조 6석.

자료: 「칠록책」중 '칠조' 향 각년도.

표 2-12 '柒租' 항의 수입과 지출액 추이, 1921~41

단위: 圓

연도	전년 이월	소작 료	대조 인래	상환	토지 매도	차 용			목재 판매	농우 판매	기타	수입 합계
						조합	사채	소계				
1921	0	25.0	60.5		220.0	350.0	360.71	710.71			1.104	1017.314
1922	18.034	6.0	19.5	102.39	77.0	1100.0		1100.0				1322.924
1923	21.696						100.00	100.00			336.718	458.41
1924	100.00					120.0	138.00	258.00			8.78	366.78
1925	0						100.00	100.00			97.65	197.65
1926	100.00										148.24	248.24
1927	100.00				750.0		176.00	176.00				1026.00
1928	0						60.00	60.00	295.8			355.80
1929	0						42.80	42.80			13.97 ¹⁾	56.77
1930	19.57						380.00	380.00				399.57
1931	0					90.0	40.00	130.00				130.00
1932	0				330.0							330.00
1933	0	8.0			300.0	200.0		200.00			213.77 ²⁾	721.77
1934	-4.00				28.0							24.00
1935	-39.65				250.0							213.35
1936	10.00					140.0		140.00		17.0	36.90 ³⁾	203.90
1937												
1938	-153.73			11.70		100.0		100.00		59.0		19.97
1939	-48.31					150.0		150.00				101.69
1940	98.69					400.0		400.00	480.0			978.69
1941	0				2450.0							2450.00

1) 금융조합 출자금 10.7원과 저축금 3.27원.

2) 면직원 공금 포탈 건으로 인한 수입.

3) 私蓄米 28두 방매대금

자료: 「칠록책」중 '柒租' 항 각년도.

한마디로 1906~14년의 대여 단계에서 1915~19년의 수지균형 단계를 거쳐 1920년 이후 차용 단계로 전락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5. 기타 수입

류씨가 수입에 관한 또다른 기록으로는 「당용록」의 기록이 있다. 이 장부는 가계부에 해당되는 문서로서 현금 형태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기록해 놓은 문서이다. 여기에는 농산물을 판매하여 얻은 현금 수입과 현금 소작료 등 이미 앞에서 파악하였던 수입 항목 외에 화목·목재·청죽 등의 임산물, 농우, 토지, 뽕잎과 누에고치 등을 판매하여 얻은 현금 수입과 부의금 등 일시적인 현금 수입이 기록되어 있으며, ‘不計價家用秩’이란 별도의 난에 수입 중 현물형태로 자가소비한 품목이 기록되어 있다. 여타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당용록」에만 기록되어 있는 수입 항목 중 현금 형태의 수입에 대해 정리한 것이 <표 2-13>이다.

표에서 보듯이 류씨가에서 가용으로 지출한 현금 수입 중 당용록에만 기록되어 있는 수입에서 대종을 차지하는 것은 화목·목재·청죽 등 임산물 판매 수입이었으며, 그 외 뽕잎·누에고치 등의 판매 수입, 혼상사시의 부조금, 초가 3칸과 가마 임대료, 위친계금과 대여금 회수 등이 있었다. 이 중 1915년의 대지 2승지와 가옥의 매도대금 50냥 및 대여금과 1927년의 백운천 소재 주막 대지와 인근의 신전 및 임야 매도대금 50냥은 금융계정에 속하는 것이지만 곧바로 가용 지출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당용록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1907~29년 사이에는 매년 누룩을 판매하여 현금을 수취하였는데, 이는 밀을 원료로 한 가공품 판매에 해당되지만 이미 원료로서 밀을 수입으로 파악하였고 누룩을 만드는 데 들어간 생산비를 알 수 없어 누룩 제조에 의해 증가된 수입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반면 마포와 농포의 경우 여타의 장부에 수입으로 잡혀 있지 않아 그대로 수입액으로 파악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임산물 판매수입이 현금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926년 이후 증가되는 추세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23년 이후 누에고치의 판매가 새로운

표 2-13 家用으로 지출한 현금 형태의 기타 수입, 1908~41

단위: 냥

연도	판 매 대 금								현 금 수 납			
	임산물	가축	뽕잎	견	마포	벼짚	감	토지	부조금	임대료	상환	기타
1908		3.0 ⁹⁾										
1909											38.95	25.00
1910	99.50	2.0 ⁹⁾								8.00	17.99	
1911	40.40									15.00		6.67
1912	144.00 ⁹⁾									2.00	8.00	
1913	176.80											
1914	47.50									12.50	9.62	
1915	25.00							50.0				
1916	219.88											
1917	346.00	25.0					11.0	1150.0 ⁷⁾				10.80
1918	273.00		21.40							5.00		
1919	50.00						10.0				1.63	
1920	525.00		20.00									
1921	280.00	50.0										
1922	675.00 ⁹⁾	330.0							376.33 ⁹⁾			
1923	35.00			18.00 ⁹⁾					209.50 ⁹⁾			
1924	330.00	130.0		96.15					225.30 ⁹⁾			
1925		280.0							316.10			
1926	1104.50			219.80								
1927	625.50	280.0	10.00	104.70		24.25 ⁹⁾		50.0				
1928	635.00			174.20								
1929	804.50	66.7		167.20								
1930	367.00		40.00						60.00			
1931	255.00	165.0	6.50	19.40	28.00							
1932	200.00			48.00								
1933	206.50			135.15					194.75			
1934	228.50			45.35	8.75	6.0	5.5		162.50			
1935	361.00		6.50	31.75	17.50							
1936	989.00			57.95								
1937	73.00			72.35	25.00	25.0						407.30 ¹⁰⁾
1938	1100.00			105.10								113.80 ¹¹⁾
1939	193.50	675.0	40.00	71.25	43.50	135.0						
1940	2073.20			36.45	42.00 ⁹⁾				2097.50			
1941	1328.15			36.00 ⁹⁾					593.25			

1)가용에 넣지 않은 10냥을 포함시켰음. 2)595냥은 가용에 넣지 않고 장례비로 사용. 3)개 판매 대금, 나머지는 농우 대금. 4)잠종 2매 대금. 5)피마대금. 6)자운영 대금. 7)가용에 산입치 않고 채무 상환. 8) 가용회계에 산입시키지 않은 것임. 9)모범립 보조금 10냥 외 나머지는 가용에 산입하지 않은 것임. 10)담 매매 소개비 257.3냥과 병풍 대금 150냥임. 11) 제수대금 여분 88.8냥과 세찬대 25냥. 11)1934년부터는 원전리로 기록된 것을 양전품으로 환산하였음.

자료: 「당용록」 각년도.

현금 수입원으로 등장하였으며, 1930년 이후 마포와 피마, 1934년 이후 벚짚이 판매되었음이 주목된다.

한편 「당용록」에는 가용 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수입과 지출액 합산에서 제외한 채 별도로 기록해놓은 항목이 있는데, 〈표 2-13〉에서는 이를 모두 수입액에 포함시켰다. 1912년에는 화목대금 10냥, 1917년에는 중부의 빚 240원과 그 이자 10원 54전을 갚는 데 쓴 토지 매도대금 230원과 청죽 대금 14원 54전, 1922년에는 초상 부조금 285.35냥과 화목 대금 590냥을 장례비와 제수대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가용 수입 지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923년에는 소상비 및 제수비로 쓴 부의금 225.3냥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외에 「칠록책」의 ‘칠조’ 항에 인계한 수입은 당용록의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칠조’의 수입으로 이미 파악한 바 있다.

「당용록」에는 또한 류씨가에서 자가소비한 현물에 대해 기록해놓았는데, 그 중에는 여타의 다른 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수입도 기록되어 있다. 이 수입 항목은 〈표 2-14〉에서 보듯이 류씨가에서 ‘내작전’으로 간주하였던 와평의 棉太田 4두지, 1913년에 저장잡았던 가랑리의 면전 2두지, 구성리에 있는 신간전 등지에서의 수입과 뒷산에서 채취하는 화목과 생밤 등이다. 와평 면태전에서의 소작료 수입은 1922년부터 ‘외작토세수봉기’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자작생산 콩과 팥에 대해서는 「양미책」에 기록되게 되었다. 가랑리의 면전 2두지의 수입은 ‘대조’ 항에 기록되다가 1916년부터 벼 1석의 소작료가 백목 40자로 바뀌면서부터 ‘대조’ 항에서 제외되었다. 이 역시 1922년부터는 ‘외작토세수봉기’에 기록되며, 구성리 신간전에서의 수입도 1920년부터 ‘외작토세수봉기’에 기록되게 된다.

표 2-14 「當用錄」중 자가소비한 기타 현물 수입, 1908~33

연도	와평 면태전 4두지						가랑리면전		구성리신간전			뒷산 소출	
	소작				자작면적(두락)		소작료		소작료				
	목화	백목	참깨	콩	면전	태전	백목	참깨	고추	꽃감	콩	화목	밤
1908	미상	50자	미상	미상									
1909	미상		-		○								
1910	미상		-										
1911	-		-		2	2							
1912	-		-		2	2							
1913	-		-		2	2							
1914	반분		-			2							
1915	반분		-			2							
1916			1승			2	40자						
1917					2	2	불납						
1918						40자	1승	4두	미상	미상	500짐	3두	
1919						40자	1승	4두	미상		500짐	3두	
1920						40자	1승				500짐	3두	
1921						40자	1승				500짐	3두	
1922											500짐	수두	
1923											500짐	수두	
1924											500짐	수두	
1925											500짐	수두	
1926											500짐	수두	
1927											500짐	수두	
1928											500짐	수두	
1929											500짐	수두	
1930											500짐	0.5두	
1931											500짐	수두	
1932													
1933											500짐	수두	

자료: 「當用錄」, 각년도.

3. 수입구조 변화의 특징과 그 의미

이상에서 보았듯이 류씨가에서는 이용 목적과 토지소재지 혹은 자작 생산과 소작료 수입 등에 따라 장부와 계정을 달리하여 수입을 관리하였다. 앞에서는 자료를 충실히 집계한다는 의미에서 장부별로 수입 내역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류씨의 수입 구조와 그 변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품목별로 류씨가의 수입을 재정리하면서 수입구조 변화의 특징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류씨가의 수입 중 대종을 차지하는 벼와 쌀은 당전평 내작답에서의 자작생산물과 소작료 수입을 기록한 「양미책」, 외작답에서의 소작료 수입을 기록한 「칠록책」 중의 ‘외작토세수봉기’, 벼와 쌀의 대여 및 이식을 기록한 「칠록책」중 ‘대조’항과 ‘칠조’항 등에 분산 기재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표 2-15>와 같다. 표에 집계된 수입은 생산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수입에 해당되는 것이다. 어쨌든 자작생산 및 소작료로 수납한 벼와 쌀을 쌀로 환산한 연간 수입량은 시기별로 증감이 거듭되어 뚜렷한 경향을 찾아볼 수 없으며, 논 2필지 1,352평을 매각하고 2두락을 묘위답으로 전환한 1941년의 수입량이 다른 연도에 비해 1/3 가까이 감축된 것을 제외하면 전기간에 걸쳐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쌀의 수입이 별로 변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때문인가. 더욱이 류씨가에서는 1927년에 오미리 350번지 답 979평을 750원에 방매하였으며, 1932년에는 오미리 428번지 답 843평, 1933년에는 오미리 298번지 답 666평을 300원에 매각하였고, 1941년에는 오미리 144번지 답 818평을 1,350원에, 오미리 479번지 답 533평과 구산리 172번지 묘위답 276평을 900원에 방매하였다. 이 중 묘위답의 소출은 류씨가의 수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제외하더라도 1927~41년 기간에 3,839평(류씨가에서는 합계 17두락이라고 하였음)의 논을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류씨가 소유 논에서의 수입은 1941년을 제외하고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이유는 ① <표 2-2>의 단수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생산이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신품종 도입으로 단수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었다는 것, ② 매각 면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신간답을 통해 논 면적의 감소를 다소 줄였다는 것, ③ 1935년 이후 소작료를 1두락당 쌀 7두에서 8두로 올렸다는 것 등을 들 수 있

표 2-15 류씨가 쌀 수입 총괄, 1906~41

단위: 두, %

수 확 연 도	자작생산		소작료 수입					합계	
	생산량	비율	내작답	외작답	현금납	소계	비율	수량	비율
1906	362.16	72.62	14.00	111.26	11.30	136.56	27.38	498.72	100.0
1907	451.84	80.67	00.00	92.00	2.25	108.25	19.33	560.09	100.0
1908	375.74	69.42	65.00	100.50		165.50	30.58	541.24	100.0
1909	387.46	70.29	75.50	88.25		163.75	29.71	551.21	100.0
1910	403.14	70.54	82.00	82.50	3.88	168.38	29.46	571.52	100.0
1911	351.54	65.26	94.50	88.25	4.36	187.11	34.74	538.65	100.0
1912	311.68	63.01	94.50	83.50	5.00	183.00	36.99	494.68	100.0
1913	340.20	64.19	94.25	93.58	2.00	189.83	35.81	530.03	100.0
1914	352.78	60.88	111.50	115.23		226.73	39.12	579.51	100.0
1915	224.44	44.70	172.00	102.50	3.12	277.62	55.30	502.06	100.0
1916	217.56	44.25	159.00	114.00	1.15	274.15	55.75	491.71	100.0
1917	394.90	62.27	129.00	98.50	11.76	239.26	37.73	634.16	100.0
1918	476.84	69.99	91.00	112.00	1.43	204.43	30.01	681.27	100.0
1919	412.00	66.09	98.00	113.39		211.39	33.91	623.39	100.0
1920	302.00	60.13	97.00	103.28		200.28	39.87	502.28	100.0
1921	329.00	61.50	118.00	88.00		206.00	38.50	535.00	100.0
1922	317.06	54.24	140.00	113.46	14.00	267.46	45.76	584.52	100.0
1923	366.58	56.77	140.00	139.19		279.19	43.23	645.77	100.0
1924	334.68	56.33	132.00	127.44		259.44	43.67	594.12	100.0
1925	278.16	50.65	147.00	124.01		271.01	49.35	549.17	100.0
1926	345.94	58.50	125.00	120.39		245.39	41.50	591.33	100.0
1927	298.54	53.43	161.00	99.16		260.16	46.57	558.70	100.0
1928	321.92	55.81	161.00	93.85		254.85	44.19	576.77	100.0
1929	351.46	58.45	154.00	95.93		249.83	41.55	601.29	100.0
1930	360.14	58.76	154.00	98.78		252.78	41.24	612.92	100.0
1931	303.98	54.41	153.00	101.71		254.71	45.59	558.69	100.0
1932	419.42	66.53	140.00	71.02		211.02	33.47	630.44	100.0
1933	379.82	64.94	132.00	70.02	3.00	205.02	35.06	584.84	100.0
1934	344.94	61.73	161.00	47.24	5.58	213.82	38.27	558.76	100.0
1935	392.40	63.72	175.00	43.05	5.40	223.45	36.28	615.85	100.0
1936	297.50	57.82	162.00	55.00		217.00	42.18	514.50	100.0
1937	380.94	61.92	174.00	38.00	22.26	234.26	38.08	615.20	100.0
1938	314.70	56.27	174.00	38.00	32.52	244.52	43.73	559.22	100.0
1939	253.36	53.47	183.00	36.50	0.97	220.47	46.53	473.83	100.0
1940	302.16	56.80	168.00	41.00	20.77	229.77	43.20	531.93	100.0
1941	135.00	37.72	160.70	37.00	25.20	222.90	72.28	357.90	100.0

주: 벼로 받은 경우 <표 2-2>의 당해년도 정곡환산을 적용.
 자료: <표 2-3>, <표 2-6>, <표 2-7>에서 작성.

을 것이다.

한편 자작생산량과 소작료 수입량의 변화 추이를 보면, 류씨가에서 말하는 ‘내작답’ 중 소작답의 소작료액은 1927년 이후 증가되었지만 외작답의 소작료액은 외작 소작답의 매각 등에 의해 1927년 이후 감소되기 시작함으로써 수입 총량 중 소작료 총액의 비중은 1922~31년 기간의 비율이 41~49%로서 다른 기간에 비해 높았다. 조수입량으로만 보면 면적으로는 소유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던 자작답에서의 소출이 전기간에 걸쳐 답 수입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던 셈이다.

보리의 경우 <표 2-5>의 자작생산 보리 외에 <표 2-6>과 <표 2-7>에서와 같이 1921~24년에 매년 4두씩의 소작료가 추가될 뿐으로 시기별 수입의 추이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동일하다. 즉, 보리 재배 면적이 16~22두락이었던 1907~14년에 보리 생산량은 160~280두였으며, 보리 재배면적 7두락이었던 16년에 100두, 8두락이었던 1917년에 140두의 보리가 생산되어 최저를 나타냈다가 1918~24년에는 10~13두락에서 120~200두의 보리가 생산되었다. 1915~29년에는 보리의 재배 면적이 8~9두락으로 줄었으나 생산량은 120~180두였으며, 10~13두락의 재배 면적이 유지되었던 1930~41년에는 110~280두의 보리가 생산되었다. 보리의 생산량은 재배 면적에도 좌우되지만 단수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재배 면적의 추세와 달리 뚜렷한 경향을 찾기 힘들다. 굳이 말하자면 1920년대에 보리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감축되었다가 1930년대 이후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이후 보리 재배 면적을 1920년대보다 늘린 것은 후술 하듯이 현금 획득을 위해 미곡의 판매량을 늘림에 따라 부족한 양식을 보충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밀 역시 자작생산 외에 여타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시기별 추이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즉, 1907~09년에 40두 정도가 생산되다가 1910~21년에는 6두락의 재배면적에서 45~75두로 증대되었

으나 1922~25년에는 매년 5두락에서 56~80두가 생산되었으며, 1926~29년에는 다시 3두락으로 재배면적이 감축되어 생산량도 31~40두로 크게 줄었다. 그 후 1929년에 酒稅令이 개정되면서 자가소비용 탁주마저 제조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밀 재배 면적은 1930년 이후 내내 1두락 정도에 그치고, 생산량도 5~16두로 대폭 감축되었으며, 1932년에는 그나마 밀 재배를 폐지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밀의 경우 1926년 이후 크게 감축되었다가 1930년부터 명맥만 근근히 유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자가소비용 탁주와 누룩을 가정에서 제조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개정 주세령 때문이었다.

콩은 자작생산 외에 ‘외작대전답’ 및 ‘신기전답’에서의 소작료 수입이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16>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자작 두류의 생산량은 1910년대에 증대되어 1912~23년까지는 104~168승 수준에서 매년 증감하였으나 1924년 이후 매년 감축되는 추세였으며, 1930년부터는 밭 대신 논두렁에서만 콩을 생산하다가 1940년부터는 아예 자작생산을 폐지하였다. 반면 외작과 신기전을 합한 소작료 수입은 1922년까지는 20~50승 정도였다가 1923~34년 기간에는 46~84승 수준으로 증가되었으며, 1935년부터는 104~133승 수준으로 증대되었다. 두류의 소작료 수입은 일제말엽에 올수록 증가되는 추세였던 것이다. 자작생산과 소작료 수입을 합한 두류의 총수입은 매년 증감을 되풀이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보아 1911년부터 약간 증가되어 이후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류씨가 수입 중 백묵과 목화는 <표 2-17>에서 보듯이 네 곳에서 산출되었다. 삼장평 면전 4두지의 경우 1908~22년까지는 백묵 80자와 함께 4승을 소작료로 받다가 1923년, 1924년 양년에는 백묵 대신 목화로 받았으며, 이후 1925년부터는 현금소작료로 전환되었다. 와평 면전의 소작료는 1916년과 192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목화로 소작료를 받았는데, 1917~21년에는 소작료를 받아 가용으로 소비하였으나 그 양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았다. 와평 면전의 소작료액은 매년 증

표 2-16 류씨가의 콩 수입 총괄, 1906~41

단위: 승

연 도	자 작		소작료 수입					합 계	
	생산량	비율	외작	금납분	신기전	소계	비율	수량	비율
1905					10.0	10.0			
1906					12.0	12.0			
1907	80.0	80.81	18.0		1.0	19.0	19.19	99.0	100.00
1908	71.0	77.17	17.0		4.0	21.0	2.83	92.0	100.00
1909			18.0		2.0	20.0	100.00	20.0	100.00
1910			18.0		11.0	29.0	100.00	29.0	100.00
1911	80.0	74.07	18.0		10.0	28.0	25.93	108.0	100.0
1912	140.0	82.35	18.0		12.0	30.0	17.65	170.0	100.00
1913	108.0	83.72	21.0		2.0	20.0	15.62	128.0	100.00
1914	108.0	83.72	21.0		10.0	31.0	16.28	129.0	100.00
1915	148.0	81.77	18.0		15.0	33.0	18.23	181.0	100.0
1916	114.0	68.67	18.0		34.0	52.0	2.33	166.0	100.00
1917	156.0	89.14	18.0		1.0	19.0	10.86	175.0	100.00
1918	168.0	90.08	18.0		0.5	18.5	9.92	186.5	100.00
1919	140.0	88.33	18.0		0.5	18.5	11.67	158.5	100.00
1920	108.0	78.83	28.0		1.0	29.0	21.17	137.0	100.00
1921	108.0	78.83	28.0		1.0	29.0	21.17	137.0	100.00
1922	108.0	78.83	29.0			29.0	21.17	137.0	100.00
1923	104.0	59.43	71.0			71.0	40.57	175.0	100.00
1924	92.0	54.76	76.0			76.0	45.24	168.0	100.00
1925	60.0	37.50	65.0	35.00		100.0	62.50	160.0	100.00
1926	68.0	59.65	46.0			46.0	40.35	114.0	100.00
1927	72.0	53.33	63.0			63.0	46.67	135.0	100.00
1928	68.0	53.13	60.0			60.0	46.87	128.0	100.00
1929	40.0	40.00	60.0			60.0	60.00	100.0	100.00
1930	76.0	50.33	75.0			75.0	49.67	151.0	100.00
1931	52.0	40.94	75.0			75.0	59.06	127.0	100.00
1932	32.0	29.91	75.0			75.0	70.09	107.0	100.00
1933	24.0	20.69	84.0	8.00		92.0	79.31	116.0	100.00
1934	36.0	29.03	80.0	8.00		88.0	70.97	124.0	100.00
1935	38.0	24.52	104.0	13.00		117.0	75.48	155.0	100.00
1936	25.0	18.94	107.0			107.0	81.06	132.0	100.00
1937	45.0	23.20	144.0	5.00		149.0	76.80	194.0	100.00
1938	30.0	20.13	114.0	5.00		119.0	79.87	149.0	100.00
1939	25.0	17.86	105.0	10.00		115.0	75.00	140.0	100.00
1940			133.5			133.5	100.00	133.5	100.00
1941			116.5			116.5	100.00	116.5	100.00

자료: <표 2-5>, <표 2-6>, <표 2-7>, <표 2-8>에서 작성.

표 2-17 류씨가의 목화와 백목 수입 총괄, 1905~41

단위: 자, 근, 냥

연도	삼장평 면전			와평 면전		가랑리 면전		신간전			합계		
	백목	목화	현금	백목	목화	백목	목화	백목	목화	현금	백목	목화	현금
1905									3			3	
1906									3			3	
1907								10			10		
1908	80							9			88		
1909	80							7			88		
1910	80								1		80	1	
1911	80							10			88		
1912	80							10			90		
1913	80							5			85		
1914	80							7			87		
1915	80							10			89		
1916	80			50		40			3		170	3	4.00 ¹⁾
1917	80					불납			3		80	3	
1918	80					40					120		
1919	80					40		10			130		
1920						40					120		
1921	80					40					120		
1922	80				60	40					120	60	
1923		60			60	40					40	120	
1924		80			30	40					40	110	
1925			125.20		120		30				150	125.20	
1926			47.20		100	50					50	100	47.20
1927			112.95		92	45					45	92	112.95
1928			76.90	50	90	45					95	90	76.90
1929			76.65		120	50					50	120	76.65
1930			40.50		120	50					50	120	40.50
1931			50.00		88	40					40	88	50.00
1932			80.00		90	45					45	90	80.00
1933			80.00		75	40					40	75	80.00
1934			78.00		130							130	78.00
1935					150							150	
1936					80							80	
1937					150							150	
1938					150					34.75		150	34.75
1939					134					33.75		134	33.75
1940					130				10	32.50		140	32.50
1941					125					52.20		125	52.20

1) 1917년에 납입하였음.

2) 삼장평 면전 현금 소작료에는 목화 90근 외 참깨 4승 대 포함.

3) 신간전 현금 소작료는 38년 목화 38근, 39년 30근, 40년 25근, 41년 43근 대신임.

자료: <표 2-6>, <표 2-7>, <표 2-8>, <표 2-14>에서 작성.

감하였으나 1934년부터 약간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13년에 저당잡은 가랑리 소재 면전 2두지의 소작료는 처음에 벼 1석을 받다가 1916년부터 백목 40자와 참깨 1승으로 변경되어 ‘대조’ 항에 기록되다가 1922년부터 ‘외작토세수봉기’에 기록되었다. 가랑리 면전의 소작료로는 1925년에 목화 30근을 받은 외에는 늘 백목으로 받았다. 1916~24년에는 백목 40자와 참깨 1승이었는데, 1926~33년에는 백목 40~50자로 증대되었다. 신간전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 1905~21년의 신간전은 ‘신기전답조사수세기’에 기록있던 신간전으로서 백목과 목화로 받던 소작료를 참깨나 콩으로 바꾸어 수납하였다. 1938년부터 소작료를 받았던 신간전은 이 때 새로 개간된 밭으로서 처음부터 목화 대신 현금 소작료를 받았다. 가랑리의 면전은 류씨가에서 저당잡은 것으로서 1934년에 이를 매각한 것은 주세령 위반에 의한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서였다. 삼장평의 면전은 1935년에 그 소작인에게 매각되었는데, 금융조합의 부채 상환과 가계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1938년에는 신간 면전에서 수입이 삼장평 면전 소작료의 절반 정도에 미치게 되었다. 총괄적으로 백목과 목화 수입은 1934년 이후 면전의 매각에 의해 줄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면전 소작료의 형태가 백목에서 목화로, 목화에서 현금으로 바뀌는 추세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후술하듯이 소작료로 받은 백목의 대부분을 판매하여 가용 현금에 충당하였다는 것, 그런데 가내수공업적으로 생산된 ‘토포’가 수입면제품에 의해 시장에서 구축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934년 이후 면전 소작료 수입의 감축은 면전의 매각에 기인한 것인데, 다른 토지에 우선하여 면전을 매각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류씨의 수입 중 비중이 크지 않은 품목으로는 담배·무우·참깨·고추·감·감자·메밀 등이 있었는데, 각 품목별 총괄 수입의 추이는 <표 2-6>, <표 2-7>, <표 2-8>, <표 2-14>를 종합하여 알 수 있다. 담배 수입은 1922년부터 감축되어 1928~31년에는 소멸되었으며,

1932년부터는 신간 연초전에서 현금 형태의 소작료를 받기 시작하여 1935년에 2,020평, 1939년에 4,186평, 1941년에 4,256평의 연초전에서 현금 소작료를 수납하였다. 따라서 담배 수입은 1922~31년의 감축 및 소멸기를 거쳐 1932년 이후 다시 증대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무는 전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9畝를 수납하였으며, 참깨는 1909~37년 기간에 10~15승을 수납하다가 1938~41년에는 12~21승으로 늘어났다. 고추는 1920년부터 4근을 수납하기 시작하여 1928년에 1근을 수납하기까지 조금씩 감축되어 1929~37년에는 전무하였다가 1938년에 신간전에서 5.5근의 고추를 소작료로 받기 시작한 이래 1941년에 13.3근을 수납하기까지 매년 증대되었다.

이상 살펴본 현물 수입 외에 류씨가에서 판매를 통해 현금 수입으로 삼거나 직접 현금으로 받았던 수입 항목으로 <표 2-13>에 정리된 바와 같은 수입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지만 요약하면 임산물 판매 수입은 1926년 이후 증가 추세였으며, 1918년 이후 뽕잎, 1923년 이후 누에고치, 1930년 이후 마포와 피마, 1934년 이후 벚짚이 새롭게 수입원으로 등장한 반면, 가마와 초사 임대료 수입은 1920년 이후 소멸되었다.

한편 이상과 같은 경상계정의 수입 지출 이외에 금융계정과 자본계정에 해당되는 수입과 지출로서, 보리·쌀·벼·현금 등의 대여와 상환, 금융조합 및 개인으로부터의 현금 차용, 토지와 농우 등 고정자산의 매입과 처분에 관한 기록을 정리한 <표 2-9>, <표 2-10>, <표 2-11>, <표 2-12>를 연도별로 다시 총괄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보리의 대여를 통해 증식된 이자 수입은 1911~17년에 경상계정에 편입시키거나 별도의 지출을 통해 소비됨으로써 1917년에 소멸되었다. 벼와 쌀의 대여 및 증식기록은 ‘대조’ 항과 ‘칠조’ 항으로 나뉘어 기록되다가 1920년과 1921년에 ‘대조’ 항의 잔액을 모두 ‘칠조’ 항에 넘김으로써 두 계정이 통합되었다. ‘칠조’ 항도 1915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대여와 증식은 중단되고 1921년부터는 현금 차용과 그 상

환 및 상환을 위한 토지 매도의 기록으로 변질되었다. 요컨대 1920년대 이전에 류씨가 대여자의 지위에 있었으나 1921년 이후에는 차용자의 지위로 전락하였으며, 토지 등의 자산을 매각하여 차용금을 상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현물 및 현금 수입의 대종을 차지하였던 쌀을 비롯하여 보리·콩·무 등의 수입은 일제 전기간에 걸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참깨·고추 등은 소량이나마 1930년대 후반에 증대되는 추세였다. 반면 백목과 목화는 면전 매각에 의해 1934년부터 수입이 줄고, 담배의 경우 1920년대에 감축 혹은 소멸되었다가 1930년대 들어 신간전의 화폐소작료를 통해 다시 증가되었다. 그 밖에 쌀 수입에 비견될 만큼 큰 비중을 점하였던 임산물 판매 수입은 1926년 이후 증대되었으며, 누에고치·마포와 피마·벗짚 등이 1930년대 들어 새로운 수입원으로 등장하였다. 이로 보아 류씨의 총수입은 일제 전기간에 걸쳐 두드러진 변동이 없었으며, 물량으로 보면 1930년대 들어 약간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씨는 1920년 이전에는 쌀과 보리 등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받는 지위에 있었으나 이 때부터는 금융조합과 개인으로부터 다액의 현금을 차용하는 지위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우선 류씨가 채무자화하게 된 것은 총수입이 감소해서가 아니라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농산물 상품화 및 현금 수입의 변화

1. 농산물 상품화 및 현금 수입의 推移

1. 1. 농산물 상품화 추이

류씨가에서 현금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판매한 농산물로는 미곡과 벼, 보리와 밀 및 밀을 가공하여 만든 누룩, 소작료로 받은 백목·목화·담배·콩 등이 있었으며, 그 외에 화목·재목·청죽 등의 임산물, 농우와 개 등의 가축, 뽕잎과 누에고치, 심지어 벗짚과 감 등을 판매하여 현금화하였다. 류씨가의 현금 수입 전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먼저 농작물의 판매 실태를 정리한 <표 3-1>과 품목별 상품화율을 정리한 <표 3-2>를 통해 품목별 상품화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쌀과 벼의 경우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류씨가에서는 당전평 내작답에서의 자작생산물과 수납 소작료를 모두 양미로 책정하고, 그 외 외작답에서의 소작료는 판매하여 현금화한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었다.

그러나 <표 3-1>에서 보듯이 1908~18년과 1931~37년 기간에는 자작생산하여 양미로 책정해두었던 미곡의 일부를 판매하여 가용 지출에 충당하였다. <표 2-3>의 내작답 수입 및 <표 2-15>의 미곡 총수입량과 자작생산 미곡 판매를 대비하면 대체로 미곡수입량이 많으면서 자작생산량이 많았던 해에 자작생산 미곡이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급 우선의 미곡 소비구조에서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곡 판매량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두드러진 경향성을 찾기 어렵다. 굳이 구분하자면 1913년까지는 1909년, 1910년을 제외하면 미곡 판매량이 100두 미만이었으며, 1914~26년 기간에는 1921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100두 이상, 많을 때는 186두까지 판매하였고, 1927~30년에는 90두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1931~37년 기간에는 한 해 걸러 증감을 되풀이하다가 1938년 이후로는 40두 수준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미곡의 상품화율은 1906~41년 전기간에 걸쳐 6.02~33.48% 정도였는데, 시기별로는 1914~26년에 상대적으로 상품화율이 높았다. 미곡 판매량만을 본다면 류씨가 가계는 1914~26년 기간에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리와 밀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판매용이 아니라 자가소비용으로 책정해 두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만 판매되었다. 보리의 경우 판매량이 많은 해에도 27두 이상을 넘지 않았으며, 1914~36년 기간에는 3년 정도 판매가 지속되다가 1~2년 판매하지 않는 양상이 되풀이되었으나, 1913년 이전과 1937년 이후에는 판매량이 전무하였다. 밀의 경우 누룩 및 자가소비용 탁주를 만들 목적으로 재배하였기 때문에 밀보다는 누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누룩은 1908~17년 기간에는 매년 판매되었으나 이후에는 1923년, 1927년, 1931년에 누룩을 판매하였을 뿐 그 외 판매량이 전무하였다.

콩 또한 자가소비가 주된 목적이었으므로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1919년에도 14.5두에 불과하였다. 시기별로는 1912~24년에는 매년 콩을 판매하였으나 그 전과 후의 시기에는 전혀 판매하지 않았다.

표 3-1 류씨가의 농산물 판매량 추이, 1905~41

수확 연도	쌀(두)			벼(두)		보리(두)		밀 (두)	백목 (자)	목화 (근)	담배 (파)	콩 (승)	누룩 (동)
	자작	소작	합계	호작	자작	소작	자작						
1906		30.00	30.00										
1907		47.50	47.50										
1908	12.50	83.50	96.00						80			1.5	11
1909	20.50	80.00	100.50						80				2
1910	42.50	73.75	116.25						80				10
1911		87.25	87.25						80				9
1912		83.00	83.00					13.0*	80			18	5
1913		74.00	74.00					1.0*	80			18	13
1914	59.50	114.00	173.50	50.00			17.00		80			21	
1915		102.50	102.50	3.00			2.50		80			18	22
1916		114.00	114.00				18.00		80		93	18	38
1917	28.50	98.50	127.00						80		71	18	14
1918	74.00	112.00	186.00	3.00					80		35	18	
1919		112.00	112.00	3.00			20.00				55	58	
1920		102.00	102.00	16.00			24.40		80		110	28	
1921		88.00	88.00	13.00					80		75	28	
1922		103.50	103.50	13.00		4	20.00	10.0	80		45	28	
1923		128.00	128.00	23.25		4			80	60	13		10
1924		117.00	117.00	15.50		4	22.00	51.2		110	5	50	
1925		114.50	114.50	20.38									
1926		114.50	114.50	14.25									
1927		90.00	90.00	14.00									3
1928		87.00	87.00	19.00			20.00						
1929		89.00	89.00	25.50						45			
1930		89.00	89.00	25.50			19.25						
1931	15.00	89.00	104.00	31.00				4.0					38
1932	17.40	59.00	76.40	16.25			10.00						
1933	78.80	56.00	134.80				27.50						
1934		39.00	39.00				25.00			40			
1935	107.50	43.00	150.50							79			
1936	24.00	55.00	79.00				6.25			52			
1937	92.00	38.00	130.00							30			
1938		38.00	38.00		120.0								
1939		36.50	36.50										
1940		41.00	41.00		100.0					54			
1941		37.00	37.00										

1)현물 대신 현금으로 수납한 소작료는 제외하였음.

2)*는 밀가루임.

3)수확연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판매연도 기준의 <표 3-3>과 차이가 있음.

자료: 「당용록」과 「칠록책」중 '외작토세수봉기.' 각년도.

표 3-2 판매 농산물의 상품화율 추이, 1906~41

단위: %

연도	쌀	보리	밀	백목	목화	담배	콩	누 룽	
								제조량	상품화율
1906	6.02	0	0	-	0	0	-		
1907	8.48	0	0	0	-	0	0	10.1	0
1908	17.74	0	0	90.91	-	0	0	22	50.00
1909	18.23	0	0	90.91	-	0	7.5	12.3	16.26
1910	20.34	0	0	100.00	0	0	0	25.2	39.68
1911	16.20	0	0	90.91	-	0	0	20.8	43.27
1912	16.78	0	19.70	88.89	-	0	10.59	21.8	22.94
1913	13.96	0	1.79	94.12	-	0	14.06	18.6	69.89
1914	33.48	8.50	0	91.95	-	0	16.28	29.5	0
1915	20.64	1.56	0	89.89	-	0	9.94	41.8	52.63
1916	23.18	18.00	0	47.06	0	100.00	10.84	33.5	113.43 ^{a)}
1917	20.03	0	0	100.00	0	100.00	10.29	8.0	175.00 ^{a)}
1918	27.51	0	0	66.67	-	85.37	9.65	12.7	0
1919	18.19	10.64	0	0	-	100.00	36.59	8.7	0
1920	21.66	13.56	0	66.67	-	100.00	20.44	24.5	0
1921	17.54	0	0	66.67	-	100.00	20.44	25.5	0
1922	18.71	17.14	17.86	100.00 ^{b)}	0	100.00	20.44	7.4	0
1923	21.54	3.33	0	100.00 ^{b)}	50.00	100.00	0	49.0	20.41
1924	20.86	14.44	67.37	0	100.00	100.00	29.76	15.0	0
1925	22.37	0	0	-	0	0	0	15.4	0
1926	20.28	0	0	0	0	0	0	11.5	0
1927	17.24	0	0	0	0	0	0	14.5	20.69
1928	16.67	12.90	0	0	0	0	0	15.0	0
1929	16.90	0	0	0	37.50	0	0	16.5	0
1930	16.66	9.17	0	0	0	0	0		
1931	21.38	0	26.67	0	0	0	0		
1932	14.92	3.85	-	0	0	0	0		
1933	23.05	9.82	0	0	0	0	0		
1934	6.98	12.50	0	-	30.77	0	0		
1935	24.44	0	-	-	52.67	0	0		
1936	15.35	4.17	-	-	65.00	0	0		
1937	6.18	0	0	-	20.00	0	0		
1938	18.05	0	0	-	0	0	0		
1939	7.70	0	0	-	0	0	0		
1940	16.58	0	0	-	38.57	0	0		
1941	10.34	0	0	-	0	0	0		

1) 1923년에는 1922년의 나머지와 1923년 수입을 함께 판매.

2) 목은 누룽 합산.

3) 벼의 판매량은 <표 2-2>의 정곡환산율을 적용하여 미곡에 합산.

자료: <표 2-5>, <표 2-6>, <표 2-8>, <표 2-15>, <표 2-16>, <표 2-17>과 <표 3-1>을 대비하여 작성하였음.

백목은 1908~23년에는 매년 거의 전량 판매되었으나 1924년 이후로는 판매되지 않았으며, 1934년 이후로는 소작료 백목을 받지 않게 되었다. 1922년부터는 백목 대신 목화를 받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1923년, 1924년에는 50%와 100%를 판매하였으나 이후 전혀 판매하지 않다가 1934~37년에 매년 수입의 20~65%를 판매하였다. 목화는 주로 자가소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담배는 1915년까지는 전량 자가소비하였으나 1915~24년 기간에는 전량 판매하였으며, 1925~27년에는 수납량이 크게 줄면서 다시 자가소비하다가 이후로는 아예 화폐소작료로 전환하였다. 연초경작허가제와 연초전매제의 영향 때문이다.

이상을 총괄하면 농산물 상품화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던 시기는 1914~26년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후로는 오히려 상품화가 후퇴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 현금 수입의 추이

앞에서는 류씨가 현금 수입에 대해 항목별로 판매량의 추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판매가격의 영향을 고려한 항목별 현금수입과 그 상대적 비중의 추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3-3>은 류씨의 현금 수입액을 정리한 것이며, <표 3-4>는 연간 현금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연도별 현금 수입 총액의 추이를 보면, 1909~17년 기간에는 현금 수입액이 336.64냥에서 917.60냥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1918년에 1,407.65냥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미곡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미가 또한 전년대비 52% 급등한 데 기인하는 것이다. 이후 1923년까지는 증감을 거듭하면서도 엇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924년에 다시 2,569.10냥으로 급증하였는데, 이 또한 미가가 전년대비 24% 정도 급등하였으며, 부조금을 가용으로 산입하였기 때문이다. 1925년에는 임산물의 판매가 전무한 데다 미가가 하락

표 3-3 류씨의 현금 수입 총괄, 1908~41

단위: 냥

판매 연도	미곡	보리	백목	담배	콩	누룩	현 금 소작료	칠조	표 2-13 합계액	총 계		
										금 액	석당 미가	미량 (석)
1908	85.50						3.00		3.00	91.50	36.0	2.54
1909	228.39		14.00			26.80	3.50		63.95	336.64	31.2	10.69
1910	225.90		32.00		1.80	6.50			127.49	393.69	53.6	7.34
1911	340.80		18.00		2.25	31.00	7.00	78.00 ¹⁾	62.07	539.12	64.8	8.32
1912	343.36	9.90	7.30		9.00	44.50	16.70	80.00	144.00	654.76	80.0	8.18
1913	295.50	5.70	14.00		10.80	41.60	12.40	109.59	176.80	666.39	82.7	8.06
1914	383.89	1.20	12.00		5.40	40.50	14.55		69.62	527.16	42.0	12.55
1915	463.80	30.40	7.00		6.30		6.70		75.00	589.20	49.1	12.00
1916	364.37		31.00	26.90	36.55	27.65	8.30		219.88	714.65	68.2	10.48
1917	375.00	49.50		31.50	9.00	52.80	7.00		392.80	917.60	98.0	9.36
1918	907.75		55.00	16.00	14.40	49.80	65.30		299.40	1,407.65	149.3	9.43
1919	1433.50	100.00	64.00	55.00	58.00				61.63	1,772.13	150.0	11.81
1920	683.90	243.40		60.00					545.00	1,532.30	102.4	14.96
1921	944.00		53.50	66.00	37.80	25.00		367.32	330.00	1823.62 ²⁾	140.0	13.03
1922	-	119.40	32.00	46.50	14.00			939.69	415.00	1566.59	123.0	12.74
1923	1252.85	10.00	68.25	13.00			100.00		63.00	1507.10 ³⁾	134.6	11.20
1924	1308.75	152.25	146.35	4.00	44.00	37.50	4.00		872.25	2569.10	166.6	15.42
1925	964.40	169.50					125.20		280.00	1539.10	160.0	9.62
1926	972.10						61.20		1324.30	2357.60	132.6	17.78
1927	559.00						112.95	424.40	1094.45	2190.80	114.0	19.22
1928	611.00	37.50			25.50		82.90	379.00	809.20	1945.10 ⁴⁾	120.0	16.21
1929	588.10		32.00		15.00		70.65		1038.40	1744.15	123.0	14.18
1930	281.25	38.50					50.50	1586.85	467.00	2424.10	55.0	44.07
1931	379.25	10.00				20.00	50.00	385.30	473.90	1318.45 ⁵⁾	74.0	17.82
1932	385.25	12.00					135.00	389.40	248.00	1169.65 ⁶⁾	85.3	13.71
1933	403.20	45.00					127.50		536.40	1112.10 ⁷⁾	90.0	12.36
1934	678.80	65.00	37.50				134.00		456.60	1371.90	120.0	11.43
1935	632.14		72.50				92.95	362.30	416.75	1576.64 ⁸⁾	130.0	12.13
1936	1065.85	25.00					140.55		1046.95	2278.35 ⁹⁾	125.7	18.13
1937	703.95						18.00		602.65	1324.60	128.0	10.35
1938	904.25						467.05		1318.90	2690.20	143.0	18.81
1939	630.50						208.90		1158.25	1997.65	278.0	7.19
1940	410.00		68.85				769.15		4249.15	5497.15	200.0	27.49
1941	919.90		108.90				1070.60		1957.40	4056.80	200.0	20.28

1) 칠조 48냥 외에 식모 30냥 포함. 2) 원자료에는 1855.62냥으로 되어 있음. 3) 원자료에는 1507.13냥으로 되어 있음. 4) 원자료에는 1841.60냥임. 5) 원자료에는 1318.35냥이었음. 6) 원자료에는 1714.15냥이었음. 7) 원자료에는 1112.05냥으로 되어 있음. 8) 원자료에는 1576.60냥이었음. 9) 원자료에는 316.45냥이었음. 10) <표 2-13> 합계액은 가용에 쓴 것만의 합계액. 11) 1석당 미가는 「당용록」 각년도의 실제 판매가의 평균 가격임. 12) 판매연도 기준이므로 <표 3-1>과 차이가 있음.

자료: 「당용록」 각년도와 <표 2-13>.

표 3-4 류씨가의 현금 수입 항목별 비중 추이, 1908~41

단위: %

연 도	판매 수입										현금 수입		총 계
	미곡	보리	백목	담배	콩	누룩	임산물	가축	건	기타	소작료	기타	
1908	93.4							3.3			3.3		100.0
1909	67.8		4.2			8.0					1.0	19.0	100.0
1910	57.4		8.1		0.5	1.7	25.3	0.5			0	6.6	100.0
1911	63.2		3.3		0.4	5.8	7.5				1.3	4.0	100.0
1912	52.4	1.5	1.1		1.4	6.8	22.0				2.6	1.5	100.0
1913	44.3	0.9	2.1		1.6	6.2	26.5				1.9		100.0
1914	72.8	0.2	2.3		1.0	7.7	9.0				2.8	4.2	100.0
1915	78.7	5.2	1.2		1.1		4.2			8.5	1.1		100.0
1916	51.0		4.3	3.8	5.1	3.9	30.8				1.2		100.0
1917	40.9	5.4		3.4	1.0	5.8	37.7	2.7		1.2	0.8	1.2	100.0
1918	64.5		3.9	1.1	1.0	3.5	19.4				4.6	0.4	100.0
1919	80.9	5.6	3.6	3.1	3.3		2.8			0.6	0	0.1	100.0
1920	44.6	15.9		3.9			34.3				0		100.0
1921	51.8		2.9	3.6	2.1	1.4	15.4	2.7			0		100.0
1922	-	7.6	2.0	3.0	0.9		43.1	21.1			0		100.0
1923	83.1	0.7	4.5	0.9			2.3		1.2		6.6	0.7	100.0
1924	50.9	5.9	5.7	0.2	1.7	1.5	12.8	5.1	3.7		0.2	12.3	100.0
1925	62.7	11.0						18.2			8.1		100.0
1926	41.2						46.8		9.3		2.6		100.0
1927	25.5						28.6	12.8	4.8	3.4	5.2		100.0
1928	31.4	1.9				1.3	32.6		9.0		4.3		100.0
1929	33.7		1.8			0.9	46.1	3.8	9.6		4.1		100.0
1930	11.6	1.6					15.1				2.1	2.5	100.0
1931	28.8	0.8				1.5	19.3	12.5	1.5	2.1	3.8		100.0
1932	32.9	1.0					17.1		4.1		11.5		100.0
1933	36.3	4.0					18.6		12.2		11.5	17.5	100.0
1934	49.5	4.7	2.7				17.3		3.3	1.5	9.8	11.8	100.0
1935	40.1		4.6				22.9		2.0	1.1	5.9		100.0
1936	46.8	1.1					43.4		2.5		6.2		100.0
1937	53.1						5.5		5.5	3.8	1.4	30.7	100.0
1938	33.6						40.9		3.9		17.4	4.2	100.0
1939	31.6						9.7	33.8	3.6	8.9	10.5		100.0
1940	7.5		1.3				37.7		0.7	0.8	14.0	38.2	100.0
1941	22.7		2.7				32.7			0.9	26.4	14.6	100.0

주: 가용 수입과 지출에 포함시키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였음.
 자료: <표 2-13>과 <표 3-3>에서 작성.

하여 1923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1926년에는 임산물 수입이 급증한 덕에 1924년 수준을 회복하여 1930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1930년에는 미가가 전년대비 55%나 폭락하고 미곡판매량 또한 1926년보다 감소하였음에도 현금 수입은 2,424.10냥으로 전년보다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금융조합으로부터의 차용금이 주종을 이루는 '칠조' 항의 현금을 끌어왔기 때문이다. 즉, 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이후 1940년과 1941년에는 여타년도 현금 수입의 2~2.5배 수준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임산물 판매 수입과 부조금 수입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류씨가 현금 수입 총액을 당시의 미가를 적용하여 미곡량으로 환산하면 1914년 이전에는 10석 미만에 해당되었으나 1914~25년에는 9~15석 수준, 1926~29년은 15~19석 수준이었다가 1930년에는 미증유의 미가폭락으로 44석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이 후 미가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1935년에는 1926년의 미가 수준을 회복하였는데, 그럼에도 미곡량으로 환산한 현금 수입 총액은 1932~35년 기간에 11~13석 수준에 머물렀다. 1939년에는 미가가 전년대비 94%나 폭등하여 현금 수입 총액은 미곡 7석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나 1940년과 1941년은 미가가 전년보다는 하락하였지만 그 이전에 비하면 월등히 높았는데도 현금 수입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미곡 20~27석 수준이 되었다. 미곡 위주의 단순소상품경제라 할 수 있었던 류씨의 경제상태에서 실질 수입액은 미가 폭락시기인 1930년과 미가폭등기인 1940년 및 1941년에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류씨의 현금 수입은 현금 지출 수요에 대한 사후적 충족이란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미곡으로 환산한 실질 현금 수입이 많았던 해는 곧 류씨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해에 지나지 않는다. 즉, 1930년과 1940년 및 1941년에 류씨는 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받았던 것이다.

류씨의 현금 수입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표 3-4>에서 보

듯이 미곡 판매 수입과 임산물 판매 수입이었다. 이 중 미곡 판매 수입액의 비중은 1909~26년 기간에는 41~83%를 차지하였으나 1927~33년 기간에는 11.6~36.3%의 비중으로 줄어들었으며, 1934~37년 기간에 40.1~53.1% 수준으로 약간 늘었다가 1938~41년 기간에 다시 7.5~33.6%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전체적인 추이로 보면 미곡 판매 수입이 류씨가의 연간 현금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27년 이후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임산물 판매 수입은 1910~41년 기간에 192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류씨가 현금 수입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였는데, 전체적으로는 미곡 판매 수입액의 추이와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1926년 이후 임산물 판매 수입의 비중이 그 이전 기간에 비해 약간 증대되었던 것이다. 이 외에 현금소작료는 1925년 이전에 일부 소작지에서 현물 대신 혹은 연체 소작료 대신 현금으로 수납하는 일이 간헐적으로 있었으나 1925년 이후로는 현금 소작료의 비중이 꾸준히 증대되어 1941년에는 류씨가 현금 수입 총액의 26.4%를 차지하게 되었다.

2. 농산물 상품화 및 현금 수입의 변화와 그 의미

이상과 같은 류씨가의 농산물 상품화 및 현금 수입의 변화 추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연간 收入 物量에 대한 판매량의 비중, 즉 상품화율을 보면, 일제 전기간에 걸쳐 류씨가는 자급자족을 우선으로 하고 남은 농작물을 판매하면서 백목과 담배 등에 한해 판매 목적으로 수납하는 자급자족적 단순소상품생산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상품화율이 높았던 시기를 품목별로 보면 미곡의 경우 1914~26년, 콩의 경우 1912~24년, 누룩의 경우 1908~17년, 백목은 1908~23년, 담배의 경우 1915~24년이였다. 이로 보아 류씨가의 농

산물 상품화는 1914~26년 기간에 가장 활발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오히려 상품화가 후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와 반면 1918년 이후 뽕잎 판매가 시작된 이래 1923년 이후에는 누에고치, 1931년 이후 마포가 새로운 판매품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곧 전통적인 농작물의 상품화가 1926년 이후 후퇴하면서 현금 지출에 대한 수요를 충당할 대체품목이 필요하였다는 것, 따라서 류씨가 의 가계경제는 이제 상품화폐경제로부터 헤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 4 장

류씨가의 소비 및 지출구조와 그 변화

1. 소비 및 지출의 관리방식

앞에서 보았듯이, 류씨가에서는 자작생산을 비롯한 제반의 수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糧米冊」, 「當用錄」, 「柒錄冊」 등의 장부를 작성하였다. 이들 장부에는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들 장부를 비롯하여 류씨가에서 현물과 현금을 지출한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류씨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비 및 지출을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소비한 양곡의 지출에 대해서는 「양미책」에 기록하였다. 양미가 모자랄 경우에는 미곡을 구입하여 보충하였으며, 때로는 「칠록책」의 「柒租」 항목에서 현물을 끌어쓰고 이를 다시 갚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② 일상적인 가용 현금 지출에 대해서는 「당용록」에 기록하였는데, 혼·상사 비용과 자녀 학비, 가옥 중수비 등은 가용 지출과 구분하여 별도로 집계하였다.

③ 금융조합 혹은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상환에 대해서는 「기록책」의 ‘칠조’ 항에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였다.

④ 고용노동력에 대한 노임의 지급은 「농가일기」 혹은 「전가일기」라는 장부에 별도로 기록하였다.

⑤ 류형업 개인의 용돈 지출에 대해서는 1922년까지 「私用錄」에 별도로 기록하였다.

요컨대 류씨가에서는 수입부문과 함께 현물 및 현금의 지출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치밀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였던 것이다.

2. 양곡 소비 실태

류씨가에서는 연간 총수입 현물 중 판매하여 현금화한 금액은 현금 지출 수요에 충당하고 나머지 현물은 가용으로 소비하였다. 따라서 <표 3-1>에 나타난 판매량 이외의 현물은 모두 자가소비하였던 셈이다. 여기서는 주요 농산물의 자가소비 실태를 품목별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자가소비 미곡의 경우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당전평 소재 내작답에서의 자작생산 및 소작료 미곡으로써 식량에 충당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러나 <표 4-1>에서 보듯이 류씨가에서는 내작답에서의 미곡 수입만으로는 식량에 모자라 쌀을 구입하거나 재고미·배급미 등을 식량용 미곡에 추가하는 일이 많았다. 특히 1920~33년 기간에 쌀을 구입하여 양식에 보태는 일이 많았다. 반면 식량용 미곡으로 책정한 미곡 중에서 일부를 방매하여 가용 현금 지출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계정을 분리하여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는 방침이 엄격히 지켜질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류씨가에서는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기 전에 生租를 식량용 미곡으로 사용하는 예가 많았는데, 그 사용 시기는 舊穀이 동나고 新穀이 출하되기 직전의 며칠 간이었다.

표 4-1 자가소비 미곡의 공급 및 糧米 추이, 1902~41

단위: 두

연 도	양미용 공급량(두)							양미외 지출			양미	생조 양미
	자작미	소작료	구입	貸來	引來	타조 미	합계	가용	償還	제수, 주미		
1902	207.00	90.25		3.00		75.75	376.00		25.75		350.25	
1903	370.75	68.00		5.00	11.20	27.75	482.70				482.70	
1904	296.25	94.45				50.00	440.70				440.70	
1905	189.75	206.25					396.00				396.00	
1906	349.00	50.00				15.50	414.50				414.50	
1907	429.25	-					429.25				429.25	
1908	357.50	54.50					412.00				412.00	
1909	349.00	47.50					396.50				396.50	
1910	352.75	77.70		2.25	8.75		441.45	32.50	2.25		406.70	40.00
1911	332.50	94.50					427.00				427.00	
1912	282.00	94.50			12.50		389.00	23.00			366.00	40.00
1913	325.50	94.25					419.75	37.00			382.75	40.00
1914	291.25	111.50					455.75				455.75	40.00
1915	202.00	172.00			20.00		394.00			10.00	384.00	40.00
1916	213.75	159.00		15.00			387.75			8.00	379.75	
1917	376.00	129.00					505.00	19.50		5.00	480.50	
1918	453.00	91.00					544.00	74.00		21.00	449.00	
1919	402.75	98.00					500.75			20.00	480.75	
1920	302.00	97.00	50.00				449.00			27.00	422.00	
1921	324.50	118.00	115.50			7.50	565.50			24.00	541.50	
1922	308.00	140.00	76.00				524.00			27.00	497.00	
1923	288.50	140.00	89.00				517.50			12.00	505.50	
1924	289.75	132.00					421.75			31.50	390.25	80.00
1925	237.25	147.00	52.50				436.75	8.00		30.50	398.25	100.00
1926	258.50	125.00	62.00			7.00	452.50			23.50	429.00	90.00
1927	289.50	161.00					450.50			32.50	418.00	
1928	307.50	161.00					468.50			46.00	422.50	20.00
1929	346.50	154.00	30.00				530.50	20.00		16.25	494.25	
1930	334.00	154.00	25.00			21.75	534.75			33.00	501.75	
1931	296.50	153.00					449.50	15.00		22.00	412.50	
1932	410.00	140.00					550.00			24.00	526.00	
1933	260.00	133.00	117.00				510.00	98.50		6.00	405.50	
1934	279.00	161.00					440.00			28.00	412.00	
1935	387.50	175.00					562.50	107.125		32.00	423.375	
1936	297.50	162.00					459.50	24.125		23.00	412.375	
1937	376.00	174.00					550.00	92.00		13.00	445.00	
1938	257.00	174.00	19.75				450.75			12.00	438.75	
1939	248.00	183.00	10.00				441.00			17.50	423.50	
1940	245.50	168.0					413.50			19.00	394.50	
1941	135.00	170.00	12.00			15.00	332.00			30.00	302.00	

자료: 「양미책」, 각년도.

어떻든 류씨가에서 매일매일 양식으로 소비하였던 미곡의 연간 소비량을 보면 일제 전기간에 걸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굳이 시기별 소비량의 추이를 구분하자면, 1917년 이후 특히 1917~23년 기간의 연간 식량용 미곡 소비량이 여타의 연도보다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식량용 미곡 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해는 1921년으로서 541.5두(27석 가량), 가장 적었던 해는 1941년으로서 302두(15.1석)였으며, 1902~41년 기간에 류씨의 연평균 식량용 미곡 소비량은 21석 가량이었다. 같은 기간 류씨의 연평균 미곡 수입량 28석에 비하면 연간 미곡 수입의 75% 정도를 식량으로 소비하였다는 계산이다.

식량용 미곡의 소비 내역을 보면 <표 4-2>에서 보듯이 연간 미곡 소

표 4-2 류씨의 식량용 미곡 소비 내역, 1902~40

단위: 승, %

	1902년		1920년		1940년	
	소비량	비율	소비량	비율	소비량	비율
일용양식	1,101.0	76.2	1,248.0	76.1	1,138.0	72.2
손님식량	19.5	1.3	16.0	1.0	10.0	0.6
제수	29.0	2.0	77.0	4.7	175.0	11.1
주미	25.0	1.7	21.0	1.3	-	-
엿·떡	17.0	1.2	28.0	1.7	15.0	1.0
고용인 식량	198.0	13.7	132.5	8.0	209.0	13.3
농사용품값	8.0	0.6	-	-	-	-
방앗값	10.0	0.7	11.5	0.7	-	-
가내행사	3.0	0.2	79.0	4.8	3.0	1.9
가사용품값	7.5	0.6	18.0	1.1	-	-
店人支給	5.0	0.3	-	-	-	-
부의	-	-	3.0	0.2	-	-
讀經米	4.0	0.3	4.0	0.2	-	-
결축	17.5	1.2	3.0	0.2	-	-
합계	1,445.5	100.0	1,641.0	100.0	1,577.0	100.0

자료: 이두순, 박석두, 1991, p.74.

비량의 72~76%가 매일매일의 일용 양식으로 사용되었으며, 고용노동력에 대한 양식용은 1.65~2.6석으로서 8~14% 정도였다. 류씨가 찾아오는 손님의 식량(客糧)용으로는 매년 10~20승의 미곡이 사용되었으며, 명절과 제사용 술·엿·떡 등으로 많을 때는 2.4석, 적을 때는 2두 정도가 사용되었다. 제수용 미곡은 혼·상사 등 대사가 있을 경우 급증하였다. 이밖에 가계용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미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도정시 방앗값으로 지출되기도 하였다.

류씨의 보리 소비 내역을 보면 <표 4-3>과 같다. 다음해의 종자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식량으로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자가소비용 보리의 소비량은 주로 생산량에 의해 좌우되었다. 1913년에는 미곡 20두를 겉보리와 교환하여 양식으로 쓰기도 하였다. 식량용 보리의 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해는 1933년으로서 237두(11.85석)를 식량으로 소비하였으며, 가장 적었던 해는 1927년으로서 104두를 소비하였다. 1907~42년 기간에 식량용 보리의 연평균 소비량은 153.8두(7.7석)였다. 식량용 보리의 소비량 추이를 보면 일제 전기간에 걸쳐 두드러진 경향성은 찾기 어렵다. 다만 1932년, 1933년과 1941년, 1942년의 소비량이 다른 해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두 해는 미가가 폭락하던 시기였고, 뒤의 두 해는 미곡공출제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높았다는 차이가 있는 반면 양식용 미곡의 공급이 여의치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밀은 <표 4-4>에서 보듯이 종자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누룩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밀은 모두 자작생산하였기 때문에 소비량은 생산량에 따라 달라졌다. 누룩 제조용 밀의 소비 추이를 보면 1910년 이전에는 34~35두, 1910~16년에는 50~61두, 1917~19년에는 21~37.5두, 1920년, 1921년에는 61두와 67.5두였다가 1922년에 26두로 줄었고, 1923년에 60.75두로 잠깐 증가하였다가 1924~29년에는 28~44두로 줄었으며, 1929년에 개별 농가의 양조가 금지됨으로써 1931년을 끝으로 누룩을 제조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소량의 밀을 자

표 4-3 보리의 소비 내역, 1907~42

단위: 두

연 도	공급량				소비 내역						植牟	판매	여분
	수입	구입	植牟	합계	식량	종자	곡자	당모	지급	합계			
1907	245.5			245.5	170.0	28.0	-	-	5.0	203.0			42.5
1908	165.0			165.0	115.0	35.0	15.0	-	-	165.0			
1909	208.5			208.5	158.0	35.0	-	3.0	11.0	207.0			1.5
1910	184.0			184.0	142.0	27.0	10.0	2.0		181.0	3.0		
1911	280.0			280.0	220.5	26.5	1.0	2.0		250.0		30.0	
1912	174.0			174.0	160.5	11.5	-	2.0		174.0			
1913	160.0			160.0	140.0	20.0	-	-		160.0			
1914	200.0			200.0	172.0	11.0	-	-		183.0		17.0*	
1915	160.0			160.0	127.0	20.0	-	3.0		150.0		10.0*	
1916	100.0		36.0	136.0	116.0	20.0	-	-		136.0			
1917	140.0		20.0	160.0	140.0	20.0	-	-		160.0			
1918	200.0			200.0	140.0	25.0	-	5.0	2.3	172.3			27.7
1919	188.0			188.0	160.0	25.0	-	3.0		188.0			
1920	180.0			180.0	153.0	27.0	-	-		180.0			
1921	200.0			200.0	182.0	15.0	-	3.0		200.0			
1922	140.0			140.0	105.0	20.0	-	3.0		128.0		12.0	
1923	120.0			120.0	106.5	12.0	-	-	1.5	120.0			
1924	180.0			180.0	139.0	24.0	-	2.0		165.0		15.0	
1925	160.0			160.0	131.0	22.0	-	-		153.0		7.0	
1926	120.0	20.0		140.0	130.0	9.0	-	-	1.0	140.0			
1927	120.0			120.0	104.0	9.0	-	3.0	4.0	120.0			
1928	155.0			155.0	117.0	14.0	3.0	-	1.0	135.0		20.0	
1929	180.0	6.6		186.6	171.0	14.6	-	-	1.0	186.6			
1930	210.0			210.0	160.0	19.0	5.0	-	6.0	190.0		20.0	
1931	170.0	34.0		204.0	178.0	21.0	5.0	-		204.0			
1932	260.0			260.0	227.0	20.0	-	3.0		250.0		10.0	
1933	280.0			280.0	237.0	15.0	-	-	5.0	257.0		23.0	
1934	200.0			200.0	165.0	15.0	-	-		180.0		20.0	
1935	190.0			190.0	168.0	20.0	-	2.0		190.0			
1936	150.0			150.0	130.0	12.0	-	3.0		145.0		5.0	
1937	180.0			180.0	162.0	12.0	-	3.0		177.0		3.0	
1938	130.0	20.0		150.0	130.0	20.0	-	-		150.0			
1939	125.0	29.4		154.4	139.4	15.0	-	-		154.4			
1940	180.0			180.0	140.0	12.0	-	3.0		155.0			25.0
1941	180.0	39.8		219.8	219.8	-	-	-		219.8			
1942	100.0	90.0		190.0	180.0	-	-	-	10.0	190.0			

* 삼과 교환.

자료: 「양미책」, 각년도.

표 4-4 밀의 소비 내역, 1907~42

단위: 두

연 도	생산량	소 비						판 매
		식 량	종 자	곡 자	당 모	방앗값	합 계	
1907	40.0	-	6.0	34.0	-	-	40.0	-
1908	40.0	-	5.0	35.0	-	-	40.0	-
1909	42.5	-	5.0	36.0	-	1.50	42.5	-
1910	66.0	-	6.0	60.0	-	-	66.0	-
1911	65.0	-	7.0	55.5	-	2.50	65.0	-
1912	66.0	-	6.0	60.0	-	-	66.0	-
1913	56.0	-	6.0	50.0	-	-	56.0	-
1914	59.0	-	6.0	53.0	-	-	59.0	-
1915	70.0	-	6.0	61.0	-	3.00	70.0	-
1916	60.0	-	6.0	51.75	-	2.25	60.0	-
1917	45.0	-	5.0	21.0	-	0.75	26.75	19.00
1918	64.0	-	5.0	37.5	-	1.50	44.0	20.00
1919	55.0	-	5.0	23.0	-	1.00	29.0	26.00
1920	68.0	-	5.0	61.0	-	2.00	68.0	-
1921	75.0	-	5.0	67.5	-	2.50	75.0	-
1922	56.0	-	6.0	26.0	-	1.00	33.0	23.00
1923	67.0	-	5.0	60.75	-	1.25	67.0	-
1924	76.0	-	5.0	44.0	-	-	49.0	27.00
1925	80.0	-	3.5	38.5	1.5	1.50	45.0	29.0
1926	31.0	-	3.0	28.0	-	-	31.0	-
1927	40.0	-	3.0	35.5	-	1.50	40.0	-
1928	40.0	-	3.0	35.0	-	2.00	40.0	-
1929	35.0	-	1.0	32.5	-	1.50	35.0	-
1930	11.0	-	-	11.0	-	-	11.0	-
1931	15.0	-	2.0	8.0	-	-	10.0	5.00
1932	-	-	-	-	-	-	-	-
1933	15.0	15.0	-	-	-	-	15.0	-
1934	11.0	11.0	-	-	-	-	11.0	-
1935			-	-	-	-		-
1936			-	-	-	-		-
1937	16.0		-	-	-	-	16.0	-
1938	10.0		-	-	-	-	10.0	-
1939	7~8.0		-	-	-	-	7~8.0	-
1940	5.0		-	-	-	-	5.0	-
1941	30.0		-	-	-	-	30.0	-

자료: 「양미책」, 각년도.

표 4-5 콩의 소비 내역, 1907~42

단위: 승

연 도	공 급 량			소 비 내역						판매량
	자작	소작	합계	장콩	혼식	太菜·太菓·두부	종자	기타	합계	
1907	80.0	19.0	99.0							1.5
1908	71.0	21.0	92.0							
1909		20.0	20.0							
1910		29.0	29.0							
1911	80.0	28.0	108.0							
1912	140.0	30.0	170.0	56.0	48.0	16.0	20.0		140.0	18.0
1913	108.0	20.0	128.0	60.0	25.0		23.0			18.0
1914	108.0	31.0	129.0	56.0	-		20.0			21.0
1915	158.0	33.0	181.0	60.0	48.0	30.0	10.0			18.0
1916	114.0	52.0	166.0	64.0	-	15.0	35.0			18.0
1917	156.0	19.0	175.0	64.0	30.0	28.0	22.0	12.0	156.0	18.0
1918	168.0	18.5	186.5	60.0	56.0	32.0	20.0			18.0
1919	140.0	18.5	158.5	60.0		48.0	20.0			58.0
1920	108.0	29.0	137.0	60.0		8.0				28.0
1921	108.0	29.0	137.0	60.0		30.0	18.0			28.0
1922	108.0	29.0	137.0	60.0	12.0	20.0	16.0			28.0
1923	104.0	71.0	175.0	68.0		36.0				50.0
1924	92.0	76.0	168.0	60.0		20.0	12.0			
1925	60.0	100.0	160.0	-						
1926	68.0	46.0	114.0	52.0		12.0				
1927	72.0	63.0	135.0	60.0						
1928	68.0	60.0	128.0	64.0						40.0
1929	40.0	60.0	100.0	60.0	40.0					
1930	76.0	75.0	151.0	60.0		56.0				
1931	52.0	75.0	127.0	60.0		9.0				
1932	32.0	75.0	107.0	64.0		16.0				
1933	24.0	92.0	116.0	60.0		16.0				20.0
1934	36.0	88.0	124.0	60.0						
1935	38.0	117.0	155.0	64.0		20.0				
1936	25.0	107.0	132.0	60.0						
1937	45.0	149.0	194.0	-						
1938	30.0	119.0	149.0	60.0		36.0				
1939	25.0	115.0	140.0							
1940		133.5	133.5							
1941		116.5	116.5							

자료: 「양미책」, 각년도.

작생산하였는데, 그 소비 내역에 대해서는 아예 기록하지 않아 확실치 않으나 밀가루를 만들어 식량 대용으로 소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콩은 <표 4-5>에서 보듯이 대부분 간장·된장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며, 콩나물·콩고물·두부 등의 제조와 혼식용으로도 소비되었다. 1911~41년 기간에 콩의 소비량은 별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3. 가용 현금 지출구조와 그 변화

3.1. 가용 현금 지출액의 추이

류씨가에서는 양곡 등 자가소비 현물 이외에 <표 4-7>에 보는 바와 같은 각종 비목으로 현금 형태의 가계비를 지출하였는데, 비목별 현금 지출 내역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는 먼저 류씨의 연간 현금지출 총액의 추이를 보기로 하겠다.

<표 4-6>은 류씨의 연간 현금 수입과 지출액의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 중 류씨의 연간 가용 현금지출 총액의 추이를 보면, 1909~13년에는 매년 현금지출액이 증가추세를 나타내다가 1914년에는 미가 폭락과 함께 감소하였다. 1915년 이후 1919년까지는 매년 대폭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다가 1920년에 다시 감소하였는데, 특히 1918년에는 현금 지출액이 전년대비 48.8%나 급증하였으며, 1919년에도 전년대비 27.9%나 증가하였다. 1920년에는 약간 감소하였다가 1921년에는 전년대비 27.9% 증가하였다. 1922년에는 미가하락과 함께 전년에 비해 지출액이 감소하였으며 1923년에도 감소하였다. 1924년에는 전년보다 54.8%가 급증하여 1925년에 약간 감소되었다가 192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며, 특히 1928년에는 전년대비 33.5%나 급증하였다. 1929년에는 전년대비 35.8%나 감소되었다가 1930년에는 28.0%가 증가되었다. 1931년에 전년대비 39.45%가 급

감한 이래 1935년까지 양간의 증감을 되풀이하였으나 1931~35년 기간에는 306.34~355.61원의 수준에 머물렀다. 1936년에 다시 46.0%가 증가되었다가 1937년에 25.6%가 감소되었으며, 1938년에 전년대비 28.7%가 증가되었다가 1939년에는 약간 감소되었으나 1940년에는 전년대비 152.6%가 증가되어 1941년에도 같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기간을 더 길게 보면 류씨가 현금 지출액 추이는 1909년, 1910년에는 70여원 수준, 1911~17년에는 106~186원 수준, 1918~23년에는 281~354원 수준, 1924~30년에는 373~632원 수준, 1931~35년은 306~355원 수준, 1936~39년은 386~519원 수준, 1940년, 1941년은 1,200여원 수준이었다. 1930년까지는 현금 지출액이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나 1930년대 전반에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며, 후반에 증가추세로 반전되었다가 1940년대에 대폭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곡 위주의 현물경제 상태에서 현금 지출액 자체의 크기보다는 그것을 미곡으로 환산해보는 것이 당시 현금지출액이 류씨의 가계수입에서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류씨의 연간 현금 지출액에 당시의 미가를 적용하여 미곡량으로 환산한 현금 지출액의 추이를 보면 1925년까지는 매년 쌀 10석 내외였으나 1926년 이후 1929년까지 20석 내외였다가 미가 대폭락기인 1930년의 47석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여 1931~38년에는 15석 내외였으며, 1939년에는 미가가 폭등하여 현금지출액은 미곡 8석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나 1940년 이후에는 전시하의 인플레이와 미가통제로 인해 30석 수준으로 급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보면 미곡 판매에 크게 의존하였던 류씨의 현금 지출액은 1926년 이후, 특히 1930년의 대공황과 1940년 이후의 전시통제에 의해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 연도별 현금 수입과 지출액 비교

연간 현금 수입액과 지출액을 대비하면 <표 4-6>에서 보듯이,

표 4-6 류씨가의 연간 현금 수입과 지출 총액 추이, 1909~41

단위: 원

연도	수입액	소 비			전년이월	과 부 족 액		비 고
		금액	석당 미가	미량 (석)		당년	합계	
1909	67.328	71.076	6.24	11.39	2.754	-3.748	-0.994	
1910	78.738	78.464	10.72	7.32	-3.748	0.274	-17.370	
1911	107.824	106.410	12.96	8.21	-3.020	1.414	-1.606	
1912	130.952	127.680	16.00	7.98	-1.606	3.272	1.666	
1913	133.278 ¹⁾	130.534	16.54	7.89	1.666	2.744	4.410	
1914	105.432	107.556	8.40	12.80	4.410	-2.124	2.270 ¹³⁾	
1915	117.840 ²⁾	114.086	9.82	11.62	2.270	3.754	6.024	
1916	142.930	145.904 ¹⁰⁾	13.64	10.70	6.024	-2.974	2.850 ¹⁹⁾	
1917	183.520	186.084 ¹¹⁾	19.60	9.35	2.850	-2.564	0.290 ²⁰⁾	
1918	281.530	276.834 ¹²⁾	29.86	9.27	0.290	4.696	4.986	
1919	354.426	353.934	30.00	11.80	4.986	0.492	5.478	
1920	306.460	301.498	20.48	14.72	5.478	4.962	14.458 ²¹⁾	
1921	297.660 ³⁾	385.582	28.00	13.77	14.458	-87.922	-73.464	칠조에서引来
1922	125.380	313.318 ¹³⁾	24.60	12.74		-187.938	-187.938	칠조에서 충당
1923	301.426	297.066 ⁴⁾	26.92	11.04		4.360	4.240 ²²⁾	
1924	464.48	459.714 ¹⁵⁾	33.32	13.80	4.240	4.766	8.526 ²³⁾	학비, 혼사비 포함
1925	307.820	373.180	32.00	11.15	8.526	-65.360	-56.834	학비 16.35원 포함
1926	471.52	464.770	26.52	17.53	-56.834	6.750	-50.084	학비 25.84원 포함
1927	438.160	473.740	22.80	20.78	-50.050 ¹⁷⁾	-35.580	-85.630	학비 17.60원 포함
1928	368.320 ⁴⁾	632.480	24.00	26.35	-85.63	-264.160	-351.430 ²⁴⁾	
1929	348.830	406.130	24.60	16.51		-57.300	-57.300	
1930	484.820 ⁵⁾	519.786	11.00	47.25	-57.300	-34.966	-92.266	
1931	263.670 ⁶⁾	314.766	14.80	21.27	-92.266	-51.096	-143.362	
1932	234.830 ⁷⁾	315.786	17.06	18.51	-143.362	-80.956	-224.318	
1933	222.410	306.340	18.00	17.02	-224.318	-83.930	-308.248	
1934	274.380 ⁸⁾	318.290	24.00	13.26		-43.910	-43.910	
1935	315.320 ⁹⁾	355.610	26.00	13.68	-43.910	-40.290	-84.200	
1936	463.290	519.040	25.14	20.65	-84.200	-55.750	-139.950 ²⁵⁾	학비 9.45원 포함
1937	264.920	386.360	25.60	15.09	-72.070	-121.440	-193.510	학비 16.07원 포함
1938	538.040	497.290	28.60	17.39		40.750		학비 18.88원 포함
1939	399.530	478.950	55.60	8.61	40.750	-79.420	-38.670	
1940	1099.430	1209.600	40.00	30.24		-110.170		
1941	811.360	1272.490 ⁶⁾	40.00	31.81	-110.170	-461.130	-571.300	토지매각 충당

1) 추가수입 4.90 불포함. 2) 추가수입 9.10 불포함. 3) 혼사부의금 75.296원 불포함. 4) 재목대금 295.80원은 칠조에 기입하여 제외하고 혼사비 191.34원은 포함. 5) 부의, 혼비차용, 침선대, 인래금 329.37원 포함. 6) 칠록 인래 77.06원 포함. 7) 4두락 방매 잔금 77.88원 포함. 8) 탈상부의 32.50원 포함. 9) 매년 4두락 방매대 250원 중 잔금 72.46원 칠록에서 인래. 10) 가옥 중수비 92.39는 6두락 대금으로 충당하고 여기에는 불포함. 11) 봉환의 빚 240원은 1.3두지와 산관 방매대로 상환하고 여기에 불포함. 12) 1917년 구입 양미 100승가 20원 포함. 13) 초상비 159.73원은 부의 41.9원과 화목대금으로 충당. 제수비 15.16원은 추가부의로 충당. 양미 5석 15두 구입대 182.25원과 학비 8.53원은 칠조 잔금으로 충당하여 계 365.67원은 불포함. 14) 소상비 47.76, 제수비 2.48, 양미 3석 16두대 106.40, 묘각건축비 73.038, 혼사비 93.194, 학비 13.01, 계 335.822원은 정산잔액과 추가 부의금, 소상부의 60.22원 중 잔액 45.06원으로 충당하고 부족금 5.18원은 내년 회계 15) 대상비 38.34원과 禱祭費 등 11원은 부의잔금으로 충당. 16) 산소 석물대 371.78, 3명 학비 46.09 포함. 17) -50.084인데 잘못 산일. 18) 계산은 2.286. 19) 계산은 3.050. 20) 계산은 0.286. 21) 계산은 10.440. 22) 계산은 4.360. 23) 계산은 9.006. 24) 계산은 -349.79. 25) 금융조합 年賦金에서 67.88원을 충당하여 실제 부족금은 72.07원.

자료: 「당용록」, 각년도.

1909~11년에 미미한 적자를 보이다가 1912년 이후부터 1920년까지는 약간씩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1921년과 1922년은 연속해서 다액의 적자를 나타냈다. 그러다 1923년과 1924년에 약간의 흑자로 돌아선 이래 1925년부터 일제 말엽까지 만성적인 적자를 나타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보면 1921년에는 전년에 비해 현금수입액은 줄고 지출액은 늘어나 결국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현금 지출 중 다액을 지출하였던 비목을 보면 糶米 250되 구입비 69원, 토지면 주재소 건축 기부금 50원, 지세금 33원 55전, 1.2기분 戶稅割 21원 58전, 화순 왕래 7일간의 노자 9원 49전 등으로서 1921년 총지출액 385원 58전 2리 중 이들 비목의 합산액(183원 62전)이 47.62%에 달하였다. 이 비목 중 조세공과에 해당되는 비목의 합산액 105원 13전과 지주회비 2원 60전, 임야추가분할금 1원50전을 합한 조세공과금의 비중은 총지출액의 28.33%에 달하였음을 보아 조세공과의 지출이 현금 수지 적자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22년에는 상사비 159원 73전, 양미 구입비 182원 25전, 제수비와 학비 등을 가용 지출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수입으로 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나타내게 된 것은 현금 수입이 전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이었으며, 현금 수입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류씨가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던 미곡의 판매를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식용 미곡이 모자라서 미곡을 5석 15두나 구입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때 미곡 생산 및 수납량이 전년에 비해 줄지 않았음에도 양식용 미곡이 모자랐던 것은 상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두 해의 적자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음에 반해 1925년 이후의 계속적인 적자는 만성적인 것으로서 이 때부터 류씨의 가계경제는 쇠락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물 수입량이 일제 전기간에 걸쳐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때부터 적자가 계속된 것은 자급적 소상품생산 구조에서 늘어나는 현금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현금수지의 적자

폭이 커지면 류씨가에서는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였던 柒租항의 자금을 끌어썼으며, 그것도 모자라면 마침내 일부 토지를 방매하여 늘어나는 적자 및 부채를 탕감하였다. 그러나 1925년 이후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적자를 보전하더라도 이듬해에 다시 적자가 발생함으로써 적자가 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예컨대 1932년과 1935년, 1941년에는 토지를 매각하여 그것을 보전하였다.

이상의 추이로 보면 류씨가에서는 현금 지출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농산물 혹은 임산물 등을 판매하여 이에 대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소득에 맞추어 소비 혹은 지출한 것이 아니라 지출에 맞추어 화폐수입을 조정하였으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터에 지출 요인이 계속 늘어남으로써 결국 쇠락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3. 비목별 현금 지출 구조의 추이와 그 특징

〈표 4-7〉은 「당용록」에 기록된 류씨가의 연간 현금 지출 내역을 현재 사용하는 가계비 비목 분류에 의거하여 비목별 지출액을 정리한 것이며, 〈표 4-8〉은 비목별 지출액의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비목별 현금 지출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비: 자급 농산물을 제외한 구입 음식물의 비용으로서, 1920년까지는 명절·제사·생일 등의 음식물을 포함한 음식물비의 비중이 18~25%로 가장 컸으나 1925~35년에는 조세공과의 비중이 음식물비를 능가하였다. 자급 농산물 비용을 포함한다면 전기간에 걸쳐 음식물비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구입 음식물 중에서는 청어·복어·새우·홍합·조기·낙지·가오리·고등어·갈치·전어·은어·문어·멸치·백합·고막 등 수산물비의 비중이 매년 음식물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닭·쇠고기·돼지고기 등의 육류로서 10~50%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 외 미나리·파·생강·물오이·풋나물·무우·배추 등 채소류, 수박·참외 등 과

표 4-7 류씨가의 연간 비목별 현금 지출액 추이, 1910~40

단위: 냥

	금 액							
	1910	1914	1918	1920	1925	1930	1935 ¹³⁾	1940 ¹³⁾
농업·겸업비	39.10	82.98	123.48	166.81	195.50	232.08	368.95	418.80
차입금상환	59.42		67.00	20.00				
조세공과	결(지)세	51.17	121.24	100.00	222.50	171.90	159.45	181.00
	조합원할							5.50
	호세		14.20	91.75	190.90	258.92	215.60	254.20
	주세		5.00	7.50	17.50			
	지주회비		21.95					
	임야세			2.50	56.00	54.45	42.95	56.45
	가옥세							44.40
	조합비		2.50		1.50			
	기타	1.70	5.00 ³⁾	13.00 ⁴⁾		1.35 ⁹⁾	6.00	81.60
	소계	61.12	51.17	169.89	201.75	488.40	486.62	623.15
음식물비	99.00	135.05	238.34	269.35	284.55	386.02	245.10	826.15 ¹⁵⁾
광열비	9.48	21.69	33.48	70.55	26.15	41.95	29.20	52.80
교육·오락	3.52	33.66	34.45	78.05	191.70	40.10	24.35	185.80
주거비	47.56	48.07	60.55	106.95	50.45	38.35	79.30	66.40
피복·신발비	56.78	48.79	186.10	171.45	120.55	75.50	123.95	134.40
보건의료비	4.24	16.48	76.03	31.65	24.65	156.65	91.10	187.35
교통·통신비	16.00	4.90	36.00	49.83	9.35	189.05 ¹⁰⁾	35.15	12.90
교제·증여	27.89	37.63	74.60	61.30	198.05	88.96	185.65	493.55
관혼상제	26.53	55.72	109.40	143.70 ⁵⁾	114.20	803.40 ¹¹⁾	111.95	2,956.45 ¹⁶⁾
연초	1.20		67.50	131.50	67.00	37.00	44.15	64.70
기타			7.30	5.05	77.10 ⁷⁾	36.00	12.60	23.20
합계	392.42 ¹⁾	538.14 ²⁾	1,284.17	1,507.89 ⁶⁾	1,847.65 ⁸⁾	2,611.68 ¹²⁾	1,775.95 ¹⁴⁾	6,045.50 ¹⁷⁾

1) 원자료에는 392.32로 되어 있음. 2) 원자료에는 537.78임. 3) 일본군인구조금. 4) 측량비. 5) 과세비용 일부 포함. 6) 원자료에는 1,507.49임. 7) 미상액 51.95 포함. 8) 원자료에는 1,865.90임. 9) 부역 결전. 10) 머느리 근행비 포함. 11) 초상비 298.80, 혼사비 434.85 포함. 12) 원자료에는 2,598.93임. 13) 1935년, 1940년은 원·전·리 단위의 금액을 1원당 5냥으로 환산하였음. 14) 원자료에는 1,778.05임. 15) 식량용 米 108되 구입비 195.50냥 포함. 16) 혼사비 1,816.95냥, 초상비 878.40냥 포함. 17) 원자료에는 6,048.00냥임.

자료: 「當用錄」, 각년도.

채류, 소금, 탁주와 소주 등의 식품을 구입하였으며, 외지 출타시의 점심 혹은 저녁 밥값 등이 있었다. 쌀·보리·콩·팥 등 양곡을 구입

표 4-8 류씨가의 연간 현금 지출 비목별 비중 추이, 1910~40

단위: %

		비				율			
		1910	1914	1918	1920	1925	1930	1935	1940
농업·겸업비		9.96	15.42	9.62	11.06	10.58	8.89	20.77	6.93
차입금상환				5.22	1.33				
조세공과	결(지)세	15.14	9.51	9.44	6.63	12.04	6.58	8.98	2.71
	조합원할								
	호세			1.11	6.08	10.33	9.91	12.14	4.20
	주세					0.95			
	지주회비			1.71					
	임야세					3.03			
	가옥세								
	축산조합비					0.08			
기타									
소계		15.58	9.51	13.23	13.38	26.43	18.63 ¹⁾	23.87	10.31 ²⁾
음식물비		25.23	25.10	18.56	17.86	15.40	14.78	13.80	13.66
광열비		2.42	4.03	2.61	4.68	1.42	1.61	1.64	0.87
교육·오락		3.52	6.25	2.68	5.18	5.95	1.54	1.37	3.07
주거비		12.12	8.93	4.72	7.09	2.73	1.47	4.47	1.10
피복·신발비		14.47	9.07	14.49	11.37	6.52	2.89	6.98	2.22
보건의료비		1.08	3.06	5.92	2.10	1.33	6.00	5.13	3.10
교통·통신비		4.08	0.91	2.80	3.30	0.51	7.24	1.98	0.21
교제·증여		7.11	6.99	5.81	4.07	10.72	3.41	10.45	8.16
관혼상제		6.76	10.35	8.52	9.53	6.18	30.76	6.30	48.90
연초		0.31		5.26	8.72	3.63	1.42	2.51	1.07
기타			0.37	0.57	0.33	4.17	1.38	0.71	0.38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 혼·상사비를 제외하면 25.90%임.

2) 혼·상사비를 제외하면 18.60%임.

자료: <표 4-7>에서 작성.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특히 쌀을 구입한 때에는 그 비용이 음식물비의 20~30%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음식물비에는 추석·단오·동지·설날 등의 명절과 생일상 차리는 데 들어간 음식물비는 포함시켰으나 관혼상제시와 특히 빈번했던 제사상을 차리는 데 들어간 음식물비는 제외한 것으로서 이를 음식물비에 포함시킨다면 음식물비의 비중은 더 커졌을 것이다.

(2) 조세공과: 조세공과에는 지세·호세·주세·가옥세 등 공식적인 조세와 농회비 혹은 지주회비·산림계비·축산조합비 등의 공과금 외에 부정기적인 잡부금으로서 大正記念費·신작로 보수비·도로기성비·학교 운동회비·제국군인 구조금·면사무소 건축 기부금·주재소 건축 기부금·보통학교 건립 기부금·소방조합 기부금 등이 있었다. 이러한 조세공과 및 잡부금은 대부분 지세의 크기에 따라 그 액수가 차등 부과되거나 혹은 이른바 지주회의 구성원들에게만 부과되었는데, 류씨가 논밭 합계 100두락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영세지주에 불과함에도 지주회의 구성원으로 강제 편입되어 이상의 제잡부금을 부담해야만 하였던 것이다. 조세공과의 비중은 1925년에 음식물비의 비중을 능가한 이래 1940년대까지 婚喪事費를 제외한 연간 지출액의 20% 내외를 차지하였다. 조세공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은 1925년까지는 지세였으나 이후로는 戶稅額이 地稅額을 능가할 만큼 증가되었다. 따라서 1925년 이후 조세공과의 비중이 음식물비의 비중보다 크게 된 것은 호세 증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류씨의 현금 지출액 중 지세액의 비중을 보면 1910년의 15% 수준에서 1920년의 6.6% 수준으로 계속 줄어들다가 1925년에 12%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이후 10% 미만으로 떨어져 40년에는 2.7%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 호세액의 비중은 1918년의 1.11%에서 1920년에는 6.08%, 1925년에 10.33%, 1930년에 9.91%, 1935년에 12.14%로 계속 증가되었다가 1940년에 4.20%로 낮아졌다.

한편 지세액에 대해 당시의 미가를 적용하여 米穀量으로 환산하면 가장 많았던 1930년에 10.49석으로서 당시 류씨의 논에서의 연간 평균 수입인 쌀 24.6석(벼 35석을 도정하면 쌀 약 16.9석이 되며, 여기에 소작료 미곡 7.7석을 합한 것)의 42.6%에 달하는 액수였으며, 미가 폭등으로 인해 미곡으로 환산한 지세액이 가장 작았던 1939년에도 1.8석으로서 1939년 논에서의 총수입 쌀 23.4석의 7.7%였다. 1914년부터 1941년까지 미곡으로 환산한 지세액을 평균하면 연간 지

세액은 4.4석 정도로서 류씨의 논에서의 연간 총수입 평균 25석의 17.6%를 차지하였다.

이상과 같은 조세공과의 과중에 대해 류형업은 “각 항목의 세금과 백성들의 부담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나처럼 재물을 늘리는 별다른 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어찌할 것인가(「紀語」, 1920.3.12).” “1기분 지세금 납입 기한이 지나 나 또한 미납금 10여원을 독촉받고 있으나 별달리 변통할 방법이 없으니 어찌하겠는가(「紀語」, 1920.12.5).” “각종 세금이 이처럼 증가되니 백성들이 어찌 안도하며 살 수 있겠는가. 돈이 귀해지고 물건이 천해진다면 백성의 부담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紀語」, 1921.7.15).” “세금이 차차 증가하여 고통스러운 날이 올 것이니 그 날을 예상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紀語」, 1923.2.30).” “세금을 거두는 관리가 밍기만 하다. 날로 더하고 달로 더하여 갈수록 심하니 누가 완전히 낼 수 있겠는가(「紀語」, 1925.6.2)”라고 하여 조세공과와 잡부금 때문에 못살겠다고 한탄하였다.

(3) 관혼상제비: 매년의 祭需費用이 주종이며, 전술하였듯이 명절과 생일상 차리는 비용은 음식물비에 포함시키고 관혼상제비에는 넣지 않았다. 현금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관혼상제비의 비중은 婚喪事가 없을 경우에는 매년 6.18~10.35% 정도였으나 초상과 혼사가 겹쳤던 1930년과 1940년에는 30.76%와 48.90%를 차지하였다. 혼상사비에 당시의 미가를 적용하여 미곡량으로 환산하면 1930년의 혼상사비 733.65냥은 미곡 13.33석, 1940년의 혼상사비 2695.35은 13.5석에 해당된다. 요컨대 매년의 제수비용도 가계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혼상사가 있을 때에는 가계비의 절반 내외를 차지할 만큼 부담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피복 및 신발비: 혼사용 의복대 등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복 및 신발비의 비중이 시종일관 주거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등보다 컸으며, 1910년, 1918년, 1920년에는 연 지출액의 10%

를 상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25년 이후로는 현금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이하로 감소되었다.

(5) 농업·겸업 지출: 생산 및 소득을 위한 지출임에도 그 비중은 1914년에 15%, 1935년에 20%의 비중을 차지하였을 뿐 그 밖의 해에는 10%를 밑돌았다. 그러나 이 비목에는 협호 거주자로부터 가옥임대료 대신 제공받은 매년 호당 8일의 戶役 노동에 대한 노임은 물론 미곡 등의 현물로 지급한 노임 등은 제외된 수치이므로 실제 이 비목에 해당되는 지출액은 이보다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6) 이 외에 비목별 현금 지출액에서 주목되는 것으로는, 보건의료비나 교통·통신비, 주거비 등 일상생활에 긴요한 비용보다 교제 및 증여비, 연초비 등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교제 및 증여비에는 오고가는 방문객들에 대한 노자, 자녀에게 지급한 용돈, 절인에게 지급한 돈, 관공서 출입시 酒食代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1925년과 1935년에는 연간 총지출액의 10%를 상회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초비의 비중은 1925년 이후로는 그 비중이 5% 이하로 점점 줄어들었으나 1920년에는 8.72%에 달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비목별 현금 지출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관혼상제비, 제사·명절 등을 위한 음식물비, 교제 및 증여비 등 관습적 비용의 비중이 과다하다. ② 조세공과, 특히 면사무소와 주재소·보통학교 건립 기부금, 군인구조금, 도로기성비 등의 잡부금은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위해 필요로 했던 비용으로서 이를 지주들에게 전가함으로써 류씨가는 특히 1925년 이후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게 되었다. ③ 농업 및 겸업 지출 등 생산적인 지출의 비중이 작았다. ④ 피복 및 신발비와 연초비 등은 예전에는 현금으로 구매하지 않던 비목으로서 이는 곧 상품화폐경제의 진전과 함께 이를 구입하기 위한 현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을 의미한다.

4. 류씨가의 쇠퇴와 그 원인

4. 1. 류씨가의 부채와 토지 매각 상황

류씨가의 현금 수입과 지출액을 대비한 <표 4-6>을 통해 류씨가의 현금 수지는 1925년 이후 만성적인 적자 상태였다는 것, 1921년과 1922년에도 현금 수지는 적자였는데 ‘칠조’에서 현금을 끌어다 이를 해소하였다는 것, 그리하여 「당용록」의 기록이 끝나는 1941년말에는 누적된 적자가 571.3원에 달하게 되어 결국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이를 보전하였음을 보았다. 그러나 <표 4-6>에는 류씨가의 부채 상황이 나타나 있지 않다. 한편 <표 2-11>과 <표 2-12>를 통해서는 류씨가의 부채 상황과 이를 상환하기 위한 토지 매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을 통해 류씨가의 가계 경제가 쇠퇴일로에 있었음을 단편적으로 보았는데, 여기서는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 보고, 그 원인에 대해 정리하기로 하겠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류씨가에서는 1920년까지는 현금을 차용하지 않았으나 1921년부터는 금융조합과 개인 및 종중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였는데, 이 차용금을 포함하여 ‘칠조’항 수입금의 사용처를 정리하면 <표 4-9>와 같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토지 매매에 관련된 대서료·등기료·인지대 등의 소액 외에 주로 가옥 수리비, 매각초사 및 전세금 환퇴비, 가축과 양미 구입비, 토지 개간비와 매입 대금, 혼사비 등 일시에 다액의 현금을 지출해야만 하는 경우에 ‘칠조’계정에서 이를 지출하였으며, 가용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도 이 계정의 수입금을 끌어다 썼다. 그러나 ‘칠조’항의 수입금 중 1921년부터 차입금의 비중이 커지면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지출의 주종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1921~41년 기간의 ‘칠조’항 수입금 총액 1,0394,532원의 38.94%가 차입금이었는데, 반면 같은 기간 지출금 총액 8,997,918원의 54.91%가 원리금 상환에 충당되었다. 결국 현금을

표 4-9 류씨가 현금 차용 실태와 사용처, 1921~41

단위: 원, %

연도	철조 수입			철조 지출							
	차용금	기타	합계	부채 상환	혼사, 우귀	가용	가축 구입	양미 구입	가옥, 토지 ¹⁾	기타 ²⁾	합계
1921	710.71	306.604	1017.314	661.09	235.976	73.464	16.6			12.15	999.280
1922	1100.00	222.924	1322.924	749.91		187.938	61.0	182.25		120.13	1301.228
1923	100.00	358.410	458.41	72.84	93.134			106.40	73.038	13.01	358.422 ³⁾
1924	258.00	108.780	366.78	366.78							366.780
1925	100.00	97.650	197.65	197.65							97.650
1926		248.240	248.24	148.24							148.240
1927	176.00	850.000	1026.00	941.12		84.880					1026.000
1928	60.00	295.800	355.80	280.00		75.800					355.800
1929	42.80	13.970	56.77	37.20							37.200
1930	380.00	19.570	399.57	82.20	150.000	167.37					399.570
1931	130.00	-	130.00	52.94		77.060					130.000
1932		330.000	330.00	252.12		77.880					330.000
1933	200.00	521.770	721.77	411.50					13.50	300.77	725.770
1934		24.000	24.00	60.65							60.650
1935		213.350	213.35	63.89		72.460	67.0				203.350
1936	140.00	63.900	203.90	250.25		67.880			36.50		354.630
1937											
1938	100.00	-80.030	19.97	21.28					47.00		68.280
1939	150.00	-48.310	101.69	3.00							3.000
1940	400.00	578.690	978.69	664.10		314.59			215.00		978.690
1941		2450.00	2450.00	61.60		571.300				205.49	1053.390
합계	4047.51	6347.022	10394.532	4940.61	479.110	1770.622	144.6	288.65	385.038	651.55	8997.918
비율	38.94	61.06	100.00	54.91	5.32	19.68	1.61	3.21	4.28	7.24	100.00

1) 가옥 수리 및 환퇴 대금, 토지 개간 및 구입 대금. 2) 기타의 비목으로서, 1921년, 1922년, 1941년은 등기료와 대서료 및 인지대, 1922년에 학비 8.53원, 1933년에 면직원 공금 포탈건 해결 비용 300.77원임. 3) 원문에는 358.41원으로 되어 있음.

자료: 「철록책」의 「철조」 각년도.

차용하여 부채를 갚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다음 류씨가 토지 매각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 <표 4-10>과 같다. 이 표에서 1916년까지의 토지 매각은 원래는 류제양의 소유 토지였으

표 4-10 류씨가 토지 매각 사례와 그 이유, 1915~42

번호	연도	소재지	지번	지목	두락	평수	소유자	대금	매각사유	출처
1	1915	방광행정리		논	6				14년구입토지	
2		월곡산관		논	2		류귀환		류인환 부채 상환	
3				논	2		류방환			
4	1916	양안평		논	3		류방환		류봉환이 私賣	
5				논	0.1		류귀환			
6		침교평		밭	1		류방환			
7	1917	오미동	110	대지	0.2	220	류형업		류봉환 부채 상환	
8			102	밭	2	574	류형업		상동	
9		구산리	459	논		88	류중교		상동	
10			458	논		480	류중교		상동	
11			456	논		68	류중교		상동	
12			457	논		10	류중교		상동	
13			451	논		119	류중교		상동	
14		오미리와동	116	밭		200			상동	
15		구산리	375	논	0.2	287	류중교		상동	
16	1919	문척구성리		논	3	627	류제양		형업의 계부 매도	
17	1920	수리평		논	3		류인환			
18	1921	문척구성리		논	2		류제양			
19		용두수침평	379	직답	3	943			조합 이자 상환	철조
20	1922	문척구성리		가대				77원	중중소유로 이전	철조
21	1926	장작동	472	직답		290			부채 상환	
22	1927	오미리	350	논	4	979				
23		금내리	372	종답		600	중중			
24		운천리	653	대지		91	류제양		주막터	
25			654	밭		41	류제양			
26				임야			류제양			
27	1929	송정리	595-1	논		110			연고림1필지	
28	1932	오미리	428	논	4	843	류중교		253평 중 기부	
29		오미리	27	대지		399		200원	면장의 첩이 매입	철조
30		구산리	372	논		430		상합	저당토지매각	철조
31	1933	오미리	298	논	3	666	류중교	300원	상동	철조
32	1934	가랑리	160	면전	2	516		28원	조합 부채 상환	철조
33	1935	구산리	121	면전	4	1006	류중교	250원	주세 벌금 납부	철조
34		파도리	65	밭					가계비 부족	철조
35	1939			논	2				류인환이 暗賣	
36	1941	오미리	144	논	4	818		1350원	부채 상환	
37			479	논	2	533		900원	부채 상환	
38		구산리	172	논	1	276		상합	부채 상환	
39		오미리	91	가대	1	171		200원	부채 상환	
40	1942	옥지천평		밭	4					
41		구정평		논	4					
42		사탄공변평		논	2					

자료: 「칠록책」중의 「철조」, 「紀語」, 「地稅金分定記」, 각년도.

나 ‘조선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류형업의 숙부 소유 토지로 증여된 것들이다. 이 토지들도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매각되었다. 1917년의 매각토지는 류형업의 숙부 류봉환이 사사로이 짊어진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류형업과 그의 아들 명의의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서 혈연공동체적 재산 관념의 일단을 볼 수 있다. 1919년에 매각된 토지도 류형업의 계부가 사사로이 매각한 것이다. 1921년 이후 매각 토지는 모두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매각한 것들이었다. 이리하여 류씨가 소유 토지는 1930년대에 집중적인 토지개간에도 불구하고 <표 2-1>에서와 같이 1930년대 이후 축소 일로를 걷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4.2. 류씨의 쇠퇴 원인

이상에서 보았듯이 류씨의 현물과 현금을 망라한 총수입은 일제 전시기에 걸쳐 별로 증감이 없었으며, 현금 수입은 오히려 일제 말엽에 올수록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씨의 가계 수지가 1925년 이후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였던 것은 무엇보다 가용 현금 수지의 적자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금 수지 적자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① 자급자족적 소상품 생산: 현물과 현금을 망라한 류씨의 총수입은 일제 전기간에 걸쳐 줄지 않았고, 자가소비한 현물량도 감소되지 않았으며, 가용 현금 지출에 충당한 현금 수입 또한 줄지 않았으나 현금 수지는 1925년 이후 만성적인 적자였다. 이는 곧 현금 수입에 비해 현금 지출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수입 측면에서의 적자 원인은 현금 수입이 지출만큼 증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류씨의 현금 수입 추세를 보면 <표 3-3>과 <표 3-4>에서 보듯이 1927년 이후 농산물 판매 수입 중 가장 비중이 컸던 미곡의 비중이 줄고, 임산물 판매 수입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였으며, 농산물 상품화 또한 1914~26년 기간에 약간 증가되었다가 1927년 이후 후

되되던 추세였으나 전반적으로는 단순소상품 생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1930년대 이후 벳짚이나 뽕잎, 누에고치, 농포와 마포 등이 현금 취득을 위한 판매물로 등장하였으나 그 액수는 미미하기 이를 데 없었으며, 조세공과 등 날로 늘어나는 현금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금 취득을 위한 농산물 판매를 증대시킬 수밖에 없었는데도 1927년 이후 농산물 상품화는 오히려 후퇴되었다. 자금 우선의 농업생산구조를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늘어나는 현금 수요에 대처할 수 없었던 것이다.

② 상품화폐경제의 확대: 지출 측면에서 현금 지출이 현금 수입을 초과하게 되었던 최대의 원인으로는 상품화폐경제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상품화폐경제의 확대는 금납 조세공과의 격증, 연초와 탁주 등 자급 생산물의 폐지와 그 구입에 의한 이중의 손실, 새로운 농가구입품의 등장에 의한 현금지출의 증대, 협호 노동력과 같은 노동지대의 소멸과 임노동의 증대 및 노임 상승 등에 의해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27년 이후 농산물 생산 및 판매 면에서의 상품화폐경제가 후퇴됨으로써 농산물 판매에 의한 현금 수입은 감축되었던 반면 농가의 현금 지출을 요구하는 상품화폐경제는 더욱 진전됨으로써 류씨가의 현금 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③ 조세공과의 과다: 비목별 현금 지출 내역을 보면 조세공과의 비중은 1925년에 음식물비의 비중을 능가한 이래 1940년대까지 혼상사비를 제외한 연간 지출총액의 20% 내외를 차지하였다. “세금이 차차 증가하여 고통스러운 날이 올 것이니 그 날을 예상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류형업은 일찍이 조세공과의 증가와 그에 따른 고통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처’할 방도가 없어 결국은 만성적인 수지 적자와 쇠락을 면치 못하였던 것이다.

④ 전통적 생활관습: 비목별 현금 지출액 비중이 큰 것 중 가장 비생산적이면서 일시에 다액의 현금 지출을 요하였던 비목이 전통적 생

활관습에 기인한 관혼상제비였다. 매년의 제수 비용만으로도 연간 현금 지출총액의 6.1~10.4%였으며, 혼상사가 겹쳤던 1930년과 1940년에는 관혼상제비가 현금지출 총액의 30.8%와 48.9%에 달하였다. 1925년 이후 매년의 일상적인 현금 수입과 지출만으로도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된 상태에서 연간 총지출액의 30~40%에 달하는 혼상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차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것이 결국은 적자 누적의 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동 소재 류씨가에서 189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약 50년에 걸쳐 작성, 보존해온 고문서를 이용한 실증연구로서 1993년부터 4개년간 계속되는 연구의 제2년차 연구이다. 류씨가의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의 뒤를 이은 제2년차 연구에서는 류씨의 매년의 수입과 지출 내역 및 그 변화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논점을 구명코자 하였다.

① 일제 말엽에 올수록 대지주층에 토지가 집중되고 소지주층 이하의 농민층은 몰락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몰락하게 되었는가.

② 조선 후기 이래 농촌에 확산되기 시작한 상품화폐경제는 일제 시기에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농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③ 일제 식민지 농정은 농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본질은 무엇인가.

④ 소지주가의 가계 운영 및 소비생활의 특징과 재생산구조

또한 류씨가의 농지소유 규모와 사회적 신분, 소장 자료 등에 의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사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① 류씨가의 농지소유 규모는 일제 전기간에 걸쳐 전답 합계 100두

락 미만으로서 전국 농가 호당 평균 농지소유 규모 이상을 소유하였으나 지주로서는 극히 영세한 소지주였다. 따라서 현재 1차사료의 부족으로 부진하기 이를 데 없는 일반 농민층의 농가경제 실태에 근접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기존의 지주제 연구에 항용 이용되었던 소작료수납부 외에 노동력 고용 및 노임 실태, 생산 수납한 농산물의 판매 및 이용 실태, 현금 수입과 지출 내역 등에 관한 시계열 자료가 온전히 구비되어 있어 소지주가의 가계경제 실태를 거의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③ 농업생산에서 판매, 소비, 지출에 이르기까지 관련 자료가 일제 전기간에 걸쳐 구비되어 있어 일제의 농업정책과 경제여건의 변화가 농업·농촌·농민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통해 일제 농정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이용한 류씨가의 자료는 현물 수입에 관한 자료로서 소작료수납부인 「柒錄冊」 중의 '외작토세수봉기'와 자작생산 벼 및 보리의 생산·도정·소비 상태를 기록한 「糧米冊」, 가용 현금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한 「當用錄」, 보리의 이식과 지출 기록인 「칠록책」 중의 '植牟' 항, 벼의 이식 기록인 「칠록책」 중의 '代租' 항, 벼의 이식과 현금 차용 및 부채 상황을 기록한 「칠록책」 중의 '柒租' 항, 그리고 「칠록책」 중의 '新起田畝調查收稅記' 등이다.

이 연구는 대상 시기를 자료의 작성시기에 따라 1909~41년에 한정하였으며, 사례연구인 관계로 전국적인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이나 농업 및 사회경제 정책의 변화와 관련지어 분석하지 못하고 류씨가의 자료를 집계 분석하는 데 그쳤다. 추후 본격적인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떻든 류씨가의 收支 構造에 관한 자료를 집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류씨가에서는 현물 및 현금 수입과 지출을 짜임새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 체계적으로 문서를 작성, 관리하였다. 자가소비 미곡은 문전옥답인 당전평 소재 논 33~35두락에서의 자작생산물과 소작료 미곡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수입과 소비에 대해서는 「양미책」에 기록하였으며, 보리와 밀의 수납과 지출에 대해서도 이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였다. 이렇게 정해둔 식량이 부족한 경우 「칠록책」의 ‘칠조’ 항에 별도로 관리하던 양곡을 끌어쓰기도 하였는데, 이 때에는 이를 ‘끌어왔다(引來)’가 다시 되돌리는 형식을 취하여 계정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게비에 충당한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당용록」에 기록하였으며, 보리의 이식과 그 지출에 대해서는 「칠록책」의 ‘식모’ 항, 벼의 이식과 그 지출에 대해서는 ‘대조’ 항과 ‘칠조’ 항에 기록하였으며, 차용금의 차용과 상환에 대해서는 ‘칠조’ 항에 기록하였다. 나아가 挾戶 거주자에게서 받은 戶役 혹은 家垆稅에 대해서는 「칠록책」의 ‘호역기,’ 영농·산역·가역 등에 사용한 일고 노동력과 노역 상황과 노임에 대해서는 「전가일기」 혹은 「농가일기」에 기록하였다. 요컨대 류씨가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영농일지류의 농업생산 기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 생산비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② 류씨가에서 자작생산하였던 전답은 논인 경우 당전평 소재 논 33~35두락의 일부에 한정하였는데, 그 면적은 1902~07년에는 31두락에 달하였으나 이후 축소 증감을 거듭하여 1908~26년에는 24~15두락, 1927~40년에는 12~13두락이었다가 1940년에는 5두락으로 감축되었다. 류씨의 자작답에서의 단보당 생산량은 일제 전기간에 걸쳐 전국 평균 단수의 1.17배~2.25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었다.

③ 당전평 소재 논에서의 두락당 소작료는 1934년까지는 미 7두, 1935년 이후로는 미 8두였는데, 이를 자작답 생산량과 비교하면 1906년까지는 51~94%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자작답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1913년까지는 40%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1914~26년은

1/3 수준, 1927~35년은 30% 미만이었다가 1936년 이후로는 27~42% 정도였다. 또한 수도작의 생산비와 수익성을 기록한 유일한 자료에 의하면 류씨가에서 소작으로 영농한 소작답 3두락에서의 생산비는 소출의 16.8%, 소작인 취득량은 소출의 45.6%였다. 이상과 같이 소작료율과 생산비 등을 감안하면 류씨가에서는 소작보다는 자작생산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말엽에 올수록 자작 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류씨가의 언급에 의하면 머슴과 일고 등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그보다는 소작인의 신분을 분석한 제1차년도 연구에 의하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친족들의 소작지 요구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④ 류씨가의 농산물 수입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쌀은 논 1,352평을 매각하고 2두락을 묘위답으로 전환하여 면적이 감축된 1941년을 제외하고는 일제 전기간에 걸쳐 473.83(23.7석)~645.77두(32.3석) 사이에서 매년 증감을 거듭하였으나 시기별로 증감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채 큰 변화가 없었다. 보리의 재배 면적은 1907~14년에 16~22두락으로서 시기별로 가장 많았으며, 1915~29년에 8~9두락, 1930~41년에 10~13두락이었으나 생산 및 수입량은 재배면적과 상관 없이 일제 전기간에 걸쳐 큰 변동이 없었다. 밀의 생산량은 1907~09년의 40두 정도에서 1910~21년에는 45~75두로 증대되었으나 1922~25년에는 56~80두로 약간 감축되었으며, 1926년 이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더욱 감축되었다가 1929년에 주세령이 개정되면서 자가소비용 탁주를 제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재배면적은 1두락, 생산량은 5~16두로 크게 줄었다. 콩의 경우 자작생산량은 1910년대에 증대되어 1912~23년까지는 104~168승 수준에서 매년 증감하였으나 1924년 이후 매년 감축되는 추세였으며, 1930년부터는 밭 대신 논두렁에 콩을 재배하다가 1940년부터는 자작생산을 폐지하였다. 반면 소작료 수입은 1922년까지는 20~50승 정도였으나 1923~34년 기간에는 46~84승 수준으로 증가되었으며, 1935년부터는 104~133승으로

증대됨으로써 자소작을 합한 콩의 수입 총량은 일제 말엽에 올수록 증대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백목은 1908~15년에는 80~90자, 1916~22년은 120~170자 수준, 1923~33년까지는 40~50자였다가 이후 폐지되었다. 목화는 1922년 이전에는 간혹 1~3근 정도를 받는 정도였으나 1922년부터 백목 대신 목화를 소작료로 수납하게 되면서 60근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1923~41년 기간에는 75~150근으로 늘어났다. 백목과 목화 수입은 총괄적으로 1934년 이후 면전 매각에 의해 줄어들었다. 대신 1925년부터 신간면전이 늘어나면서 그 소작료로 현금을 받기 시작하여 1941년까지 33~125냥 수준이 유지되었다. 담배 수입은 전량 소작료였는데, 1922년부터 감축되어 1928~31년에 소멸되었으며, 1932년부터 신간 연초전의 소작료로 현금을 수납하기 시작하였다. 총괄적으로 담배 수입은 1922~31년의 감축 및 소멸기를 거쳐 1932년 이후 현금 소작료의 형태로 다시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깨는 1909~37년에 10~15승을 수납하였으며, 1938~41년에는 12~21승으로 늘어났다. 류씨가현의 현물 형태의 농산물 수입은 일제 전기에 걸쳐 매년 증감을 거듭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1926년 이후 밀의 수입이 감축되었을 뿐 일제 말엽에 올수록 미세하나마 증가 추세였다고 할 수 있다.

⑤ 가계비에 충당한 현금 수입으로서는 전술한 농산물의 일부를 판매하여 얻은 현금 외에 임산물·뽕잎·누에고치·마포와 피마·벗짚 등의 판매 수입, 임대료·부의금 등 현금 형태의 수입이 있었다. 임산물 판매 수입은 1926년 이후 증가 추세였으며, 1918년 이후 뽕잎, 1923년 이후 누에고치, 1930년 이후 마포와 피마, 1934년 이후 벗짚이 새로운 현금 수입원으로 등장한 반면 초사 임대료 수입 등은 1920년 이후 소멸되었다. 전체적으로 농산물 판매 수입 이외의 현금 수입은 주종을 이루었던 임산물 판매 수입이 1926년 이후 증대됨에 따라 증가되는 추세였다고 할 수 있다.

⑥ 농산물 상품화 추세를 보면 농산물 판매액 중 압도적 비중을 차

지하는 미곡의 상품화율은 1906~41년 기간에 걸쳐 6.02~33.48%로서 시기별로는 1914~26년에 상대적으로 상품화율이 높았다. 미곡 판매량만을 본다면 1914~26년 기간에 류씨가 현금 취득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보리와 밀은 자가소비용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판매량과 상품화율이 크지 않았다. 보리의 경우 1913년 이전과 1937년 이후로는 판매량이 전무하였으며, 그 사이 기간에도 많아야 한 해에 27두를 넘지 않고 상품화율도 18%를 넘지 않았으며, 3년 정도 판매하다가 1~2년 판매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밀의 경우 자가소비용 탁주 제조를 목적으로 재배하였으나 누룩을 판매하였다. 즉, 1908~17년 기간에는 연간 제조량의 70%, 혹은 묵은 누룩을 판매한 해에는 제조량의 175%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18년 이후 판매량이 전무하게 된 이래 1923년, 1927년에 판매 실적이 있으나 그 이외의 시기에는 판매량이 전무하였으며, 1929년부터는 자가용 탁주의 제조 금지에 따라 누룩을 아예 제조하지 않게 되었다. 콩 또한 자가소비용으로서 판매량과 상품화율이 가장 컸던 1919년에도 14.5두 및 36.59%였으며, 1925년 이후로는 판매량이 전무하였다. 백목은 1908~23년에는 매년 거의 전량 판매되었으나 1924년 이후로는 판매되지 않았으며, 1934년 이후로는 소작료 백목이 목화로 대체되었다. 1922년 이후 백목 대신 목화를 수납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1923년, 1924년에는 50%와 100%를 판매하였으나 이후 전혀 판매하지 않다가 1934~37년에는 20~65%를 판매하였다. 목화는 주로 자가소비하였던 셈이다. 담배는 1915년까지 전량 자가소비하였으나 1915~24년에는 전량 판매하였으며, 1925~27년에는 수납량이 크게 줄면서 자가소비하다가 그 후로는 신간 연초전의 소작료가 현금 소작료로 바뀌었는데, 이는 연초경작허가제와 전매제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을 총괄하면 농산물 상품화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던 시기는 1914~26년 시기였으며, 이후로는 농산물 상품화가 오히려 후퇴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⑦ 류씨가에서 가계비에 충당하였던 현금 수입액의 추이를 보면 1909~17년 기간에는 현금 수입액이 336.64냥에서 917.60냥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1918년에 1,407.65냥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미곡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미가 또한 전년대비 52% 급등한 데 기인하는 것이다. 이후 1923년까지는 증감을 거듭하면서도 엇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924년에 다시 2,569.10냥으로 급증하였는데, 이 또한 미가가 전년대비 24% 정도 급증하였으며 부조금을 가용으로 산입하였기 때문이다. 1925년에는 임산물의 판매가 전무한 데다 미가가 하락하여 1923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1926년에는 임산물 수입이 급증한 덕에 1924년 수준을 회복하여 1930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1930년에는 미가가 전년대비 55%나 폭락하고 미곡 판매량 또한 1926년보다 감소하였음에도 현금 수입은 2,424.10냥으로 전년보다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금융조합으로부터의 차용금이 주종을 이루는 ‘칠조’ 항의 현금을 끌어왔기 때문이다. 즉, 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이후 1940년과 1941년에는 여타년도 현금 수입의 2~2.5배 수준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임산물 판매 수입과 부조금 수입에 의한 것이었다.

⑧ 류씨의 현금 수입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미곡 판매 수입과 임산물 판매 수입이었다. 이 중 미곡 판매 수입액의 비중은 1909~26년 기간에는 41~83%를 차지하였으나 1927~33년 기간에는 11.6~36.3%의 비중으로 줄어들었으며, 1934~37년 기간에 40.1~53.1% 수준으로 약간 늘었다가 1938~41년 기간에 다시 7.5~33.6%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전체적인 추이로 보면, 미곡 판매 수입이 류씨의 연간 현금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27년 이후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임산물 판매 수입은 1910~41년 기간에 192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류씨가 현금 수입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였는데, 전체적으로는 미곡 판매 수입액의 추이와는 반대로 1926년 이후 임산물 판매 수입의 비중이 그 이전 기간에 비해 약간 증대되었

다. 이 외에 1925년 이후 현금 소작료의 비중이 꾸준히 증대되어 1941년에는 류씨가 현금 수입 총액의 26.4%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곡 위주의 상품화폐경제가 1927년 이후 후퇴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⑨ 이상과 같은 농산물 상품화 및 현금 수입의 추이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농산물 상품화율을 보면 일제 전기간에 걸쳐 류씨가는 자급자족을 우선으로 하고 남는 농작물을 판매하면서 백목과 담배 등에 한해 판매 목적으로 수납하는 자급자족적 단순소상품생산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상품화율이 높았던 시기를 품목별로 보면 미국의 경우 1914~26년, 콩의 경우 1912~24년, 누룩의 경우 1908~17년, 백목은 1908~23년, 담배의 경우 1915~24년이였다. 이로 보아 류씨의 농산물 상품화는 1914~26년 기간에 가장 활발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오히려 상품화가 후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와 반면 1918년 이후 빙일 판매가 시작된 이래 1923년 이후에는 누에고치, 1931년 이후 마포가 새로운 판매품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아 전통적인 농작물의 상품화가 1926년 이후 후퇴하면서 현금 지출에 대한 수요를 충당할 대체품목이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류씨의 가계경제는 이제 상품화폐경제로부터 헤어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⑩ 양곡의 자가소비 추이를 보면 일제 전기간에 걸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미국의 경우 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1921년에 27석 가량, 가장 적었던 1941년에 15석 가량이었으며, 1902~41년 기간에 연평균 미국 소비량은 21석 가량으로서 같은 기간 연평균 미국 수입량의 75% 정도였다. 보리의 소비량은 연평균 7.7석 정도였는데, 일제 전기간에 걸쳐 비슷하였으나 1932년, 1933년과 1941년, 1942년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밀의 소비량은 누룩 제조량과 그에 따른 생산량에 의해 좌우되었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1924~29년에 감축되어 1929년 이후 극소량으로 감축되었다. 콩의 소비량 또한 일제 전기간에 걸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자급 위주의 단순소

상품생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⑪ 류씨가에서 가게비로 지출하였던 현금액의 추이를 보면 1909년, 1910년에는 70여원 수준, 1911~17년에는 106~186원 수준, 1918~23년에 281~354원 수준, 1924~30년에는 373~632원 수준, 1931~35년은 306~355원 수준, 1936~39년은 386~519원 수준, 1940년, 1941년은 1,200여원 수준이었다. 1930년까지는 현금 지출액이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나 1930년대 전반에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며, 후반에 증가추세로 반전되었다가 1940년대에 대폭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금 지출액에 당시의 미가를 적용하여 미곡량으로 환산한 현금 지출액의 추이를 보면 1925년까지는 매년 쌀 10석 내외였으나 1926~29년에 20석 내외였다가 미가 대폭락기인 1930년의 47석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여 1931~38년에는 15석 내외였으며, 1939년에는 미가가 폭등하여 현금 지출액은 미곡 8석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나 1940년 이후에는 전시하의 인플레이와 미가통제로 인해 30석 수준으로 급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보면 미곡 판매에 크게 의존하였던 류씨가의 가게경제는 1926년 이후, 특히 1930년의 대공황과 1940년 이후의 전시통제에 의해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⑫ 류씨가에서 가게비에 충당하였던 연간 현금 수입과 지출액을 비교하면 1909~11년에는 연말에 약간의 적자를 나타내는 정도였다가 1912~20년에는 매년 약간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다 1921년, 1922년말에 각각 73원과 188원의 큰 적자를 나타냈으나 1923년, 1924년에는 이를 해소하고 약간의 흑자를 나타냈다. 그러나 1925년 이후에는 매년 적자를 나타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1928년말 적자 351여원, 1932년말 적자 224여원, 1933년말 적자 308여원, 1941년말 적자 571여원이나 되었다. 류씨가에서는 가게비 적자를 메꾸기 위해 1921년과 1922년에는 '칠조' 향의 현금을 끌어다 썼으나, 이후로는 그것도 불가능해짐으로써 현금을 차용하게 되고, 다시 그것을 상환하

기 위해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그로써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⑬ 류씨가의 비목 유별 가계비 지출 추이를 보면 1920년까지는 자급 농산물을 제외하고 명절·제사·생일 등의 음식물을 포함한 음식물비의 비중이 18~25%로 가장 컸으나 1925~35년에는 조세공과의 비중이 음식물비를 능가하였다. 조세공과에는 지세·호세·주세·가옥세 등 공식적인 조세와 농회비 혹은 지주회비·산림계비·축산조합비 등의 공과금 외에 부정기적인 잡부금으로서 大正記念費·신작로 보수비·도로기성비·학교 운동회비·제국군인 구조금·면사무소 건축 기부금·주재소 건축 기부금·보통학교 건립 기부금·소방조합 기부금 등이 있었다. 조세공과의 비중은 1925년에 음식물비의 비중을 능가한 이래 1940년대까지 婚喪事費를 제외한 연간 지출액의 20% 내외를 차지하였다. 조세공과의 과중에 대해 류형업은 “각 항목의 세금과 백성들의 부담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나처럼 재물을 늘리는 별다른 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어찌할 것인가,” “각종 세금이 이처럼 증가되니 백성들이 어찌 안도하며 살 수 있겠는가,” “세금이 차차 증가하여 고통스러운 날이 올 것이니 그 날을 예상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금을 거두는 관리가 밋기만 하다. 날로 더하고 달로 더하여 갈수록 심하니 누가 완전히 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조세공과와 잡부금 때문에 못살겠다고 한탄하였다. 또한 매년의 祭需費用이 주종을 이루는 관혼상제비의 비중은 婚喪事가 없을 경우에는 매년 6.18~10.35% 정도였으나 초상과 혼사가 겹쳤던 1930년과 1940년에는 30.76%와 48.90%를 차지하였다. 매년의 제수비용도 가계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혼상사가 있을 때에는 가계비의 절반 내외를 차지할 만큼 부담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생산 및 소득을 위한 지출임에도 농업 및 겸업비의 비중이 1914년에 15%, 1935년에 20%의 비중을 차지하였을 뿐 그 밖의 해에는 10%를 밑돌았다. 피복 및 신발비의 비중이 1910년, 1918년, 1920년에는

연 지출액의 10%를 상회하기도 하였으며, 1925년 이후로는 7% 이하로 감소되었다. 또한 보건의료비나 교통·통신비, 주거비 등 일상생활에 긴요한 비용보다 교제 및 증여비, 연초비 등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상과 같은 비목별 현금 지출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관혼상제비, 제사·명절 등을 위한 음식물비, 교제 및 증여비 등 관습적 비용의 비중이 과다하다. 둘째, 조세공과, 특히 면사무소와 주재소·보통학교 건립 기부금, 군인구조금, 도로기성비 등의 잡부금은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위해 필요로 했던 비용으로서, 이를 지주들에게 전가함으로써 류씨가는 특히 1925년 이후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게 되었다. 셋째, 농업 및 겸업 지출 등 생산적인 지출의 비중이 적었다. 넷째, 피복 및 신발비와 연초비 등은 예전에는 현금으로 구매하지 않던 비목으로서, 이는 곧 상품화폐경제의 진전과 함께 이를 구입하기 위한 현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을 의미한다.

⑭ 류씨가에서는 가계비에 충당한 현금 수입과 지출 외에 별도의 계정으로 '칠조'의 장부를 기록하였는데, 여기에는 1921년 이후 금융조합 및 개인으로부터의 현금 차용과 이를 상환하기 위한 토지매각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류씨의 부채 상황을 보면, 1921~40년 기간에 거의 매년 현금을 차용하여 총 4,047.51원을 차용하여 4,940.61원을 상환하였다. 같은 기간 '칠조' 계정의 수입 총액은 10,394.532원으로서 차용 현금의 비중은 38.94%였으며, 부채 상환액의 비중은 지출 총액 8,997.918원의 54.91%였다.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각하였는데, '칠조' 계정의 수입으로 잡힌 토지매각대금은 4,405원으로서 '칠조' 계정 수입총액의 42.38%였다. 이리하여 류씨의 소유 토지 면적은 1930년대 이후의 집중적인 개간에도 불구하고 토지매각에 의해 1921~42년 기간에 논 38두락, 밭 10여두락, 대지 660여평, 임야 1필지 등이 감축되었다.

⑮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류씨가에서는 더할 나위없이 치밀하게 수

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날날이 장부에 기록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5년 이후 내내 만성적인 적자가계를 면치 못하고 부채가 누적되면서 이를 상환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결국 쇠락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자급자족적 단순소상품생산, 둘째, 상품화폐경제의 확대, 셋째, 조세공과의 과다, 넷째, 전통적 생활관습 등을 들 수 있다.

참 고 문 헌

〈柳氏家 所藏 資料〉

家計簿 資料: 私用錄(1899~21), 當用錄1(1907~12), 當用錄2(1913~17), 家用日錄冊(1918~23), 當用錄4(1924~33), 當用錄5(1934~36), 家用日記(1937~42).

糧穀 生産 및 消費 資料: 糧米冊(1902~42).

小作料 收納 帳簿: 秋收冊(1898~1908)과 外作土稅收捧記(1906~41).

糧穀 利殖 帳簿: 柒錄冊 중의 植牟(1908~17), 代(貸)租(1909~22), 柒租(1906~41).

地稅金 分定 收納 帳簿: 五美洞柳瑩業本里所有結(1911), 求禮郡土旨面五美洞柳瑩業結數連名簿(1912), 柳瑩業地稅金及二期分結割冊(1913), 求禮郡土旨面五美洞柳瑩業地稅金收納正簿(1914), 柳瑩業地稅金冊(1914~17), 土地名寄帳地稅金分定冊(1918~41).

生活日記: 是言(1851~1922), 紀語(1898~1936).

〈其他 資料〉

小早川九郎, 「朝鮮農業發達史(發達篇)」, 朝鮮農會, 1944.

大野保, 「朝鮮農村の實態的研究,」 「論叢(滿洲大同學院)」, 1941.

朝鮮農會, 「朝鮮農會報」.

_____, 「農家經濟調查」 5책, 1930~32.

朝鮮總督府農林局農村振興課, 「農家經濟概況調查(小作農家) 1933-38年」, 1940

〈研究 文獻〉

- 김용섭, “한말 일제하의 지주제 -사례 1: 강화 김씨의 사례를 통해서 본 지주 경영-,” 「동아문화」 11, 1972.
- _____, “한말 일제하의 지주제 -사례 2: 재령 東拓農場에서의 지주 경영의 변동-,” 「한국사연구」 8, 1972.
- _____, “한말 일제하의 지주제 -사례 3: 나주 이씨의 지주로의 성장과 그 농장 경영-,” 「진단학보」 42, 1976
- _____, “한말 일제하의 지주제 -사례 4: 고부 김씨의 지주 경영과 자본 전환-,” 「한국사연구」 19, 1977.
- _____, “한말 일제하의 지주제 -사례 5: 일제하 조선신탁의 농장경영과 지주제 변동-,” 「동방학지」 70, 1991.
- 홍성찬, “한말 일제하의 지주제 연구 -강화 홍씨의 추수기와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33, 1981.
- _____, “한말 일제하의 지주제 연구 -곡성 조씨의 지주로의 성장과 그 변동-,” 「동방학지」 49, 1985.
- _____, “한말 일제하의 지주제 연구 -50정보 지주 보성 이씨의 지주경영 사례-,” 「동방학지」 53, 1986.
- _____, “한국 근대 농촌 사회의 변동과 지주층 -20세기 전반기 전남 화순군 동북면 일대의 사례 분석-,” 연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1988.
- 박천우, “한말 일제하의 지주제 연구 -암태도 문씨의 지주로의 성장과 그 변동-,” 연세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3.
- 박석두, “농지개혁과 식민지지주제의 해체 -경주 이씨의 토지 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 농업경제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8.
- 배영순, “한말 일제 초의 농장경영의 실태,” 「인문연구」 3, 영남대, 1983.
- _____, “1920~30년대 경북 영천군의 소작제 연구 -최씨의 소작지

- 경영을 중심으로-,” 「교남사학」 2집, 영남대, 1986
- 최원규, “19·20세기 해남 윤씨가의 농업경영과 그 변동,” 연세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4.
- 정문종, “1930년대 조선에서의 농업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3.
- 안병직 외, 「근대조선의 경제구조」, 비봉출판사, 1989.
- 이두순, 박석두, 「한말·일제하 양반 소지주가의 농업경영 연구 -구례 류씨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연구보고 R320

한말 - 일제하 양반 소지주가의 수지변화에 관한 연구

구례 류씨가의 사례

찍은날 1995. 8. 펴낸날 1995. 8.

발행인 정 영 일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 (1979. 5. 25)

찍은곳 (주) 문 원 사 739-3911~5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